

토론회

중북담론의 실체를 밝힌다!

일시| 2013년 8월 27일(화) 오후 2시~6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발제 I]

국가권력과 정초적 폭력: 증오의 정치와 추방된 시민 ----- 3

한성훈 (연세대 연구교수)

[발제 II]

공안기구 권력강화와 중복담론, 그리고 안전담론 ----- 33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법연)

[발제 III]

애국주의와 중복공세, '기득권연합의 영구적 우위'의 어떤 전조 ----- 63

정정훈 (수유너머N)

[발제 IV] 중복 프레임의 원인과 진보 진영의 극복 방안 ----- 63

이도흙(한양대 국문과 교수, 민교협)

[토론]

공안기구의 중복담론 활용에 대하여 ----- 86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차별운동과 중복 : 반차별감수성이 중복게이와 만나면! ----- 90

훈창(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중복담론과 국가보안법 ----- 93

이광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중복 매카시즘'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실천과 연대 - 통일/평화운동의
실천과제 ----- 100

이대훈

국가권력과 정초적 폭력

: 증오의 정치와 추방된 시민¹⁾

한성훈 (연세대 연구교수)

1. 머리글: 비판적 사유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은 누구인가. 한 국가의 경우 정치공동체 성원은 다양한 민족성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원을 이루는 시민은 개별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점차 단일한 민족에서 벗어나는 추세에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는 어떤 하나의 주의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21세기 국가와 정치·시민사회, 시장은 다양한 구성과 관계로 이루어지고 지구촌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하나의 정치적 공간에만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세계’에만 속하지 않는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가 밝혔듯이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는 다른 사회를 포함하고 있다.²⁾ 세계체제가 공고화된 19세기 이후 오늘날 모든 문화와 사회는 섞여있다. 지구상에서 단일한 원주민으로 구성된 나라는 없다. 각 나라는 이민자와 자신들 내부의 다른 것, 각각의 사회를 갖고 있는 혼합물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신분은 다른 영향과 작용을 일으키고 이중삼중의 배역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라도 그 국가에만 속하지 않고 이제 다양한 정체성과 세계에 속하는 신분이 되고 있다. 민족정체성과 세계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은 국민국가 체제에서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정체성과 관련한 지배체제의 권력은 군대와 경찰, 법이라는 주요 제도와 물리력을 가진 국가 고유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 확대된다. 지배계급의 권력은 언론, 교회, 학교와 같은 제도와 집단적인 행사와 실천을 주도하는 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사회로 확장됨으로써 국가 또는 정치사회의 한계를 초월한다.³⁾ 지배적인 집단이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국가장치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모두와 연관되며, 정치문화의 일차적인 생산보다는 이것을 특정한 방향으로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 데 있다.

1) 이 글은 2013년 6월 10일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의원 진성준 외 주최한 『국가권력 기관의 중복적결론 무엇이 문제인가?: 국정원, 군, 경찰, 5.18역사왜곡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발표한 국가권력의 국민에 대한 적대화: 증오의 정치와 추방된 시민』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전체 글은 수정했으며 보완한 내용은 폭력과 권력, 폭력과 법의 관계, 고문조작 사례, 맺음글이다.

2) Edward W. Said, *Reflections on Exile and Other Essay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p. 396~397.

3) 르네이트 홀립 지음/정철수 외 옮김, 『그람시의 여백: 맑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 이후, 2000, 159쪽.

정치문화의 일종으로서 ‘중복’현상은 우리 현대사의 반공이데올로기 원형에서 변질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일찍이 그람시(Antonio Gramsci)가 문화의 핵심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를 간과했듯이, 온라인 공간이나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이 용례를 종합해보면, 정치영역에서 벌어지는 반공주의 현상이 사회문화적으로 변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우익(Net right-wing)이라는 용어가 디지털 공간에서 횡횡하는 극우세력을 일컫는 것이라면, 이는 정치의 장에서 벌이는 반공 이념투쟁에 대한 적대적 인식의 문화적 변용이자 온라인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 과정에는 말할 것도 없이 비판적 사유가 핵심이다. 자유롭게 발언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종의 정치과정이다. 이것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평범한 인간이 공동체의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역동적인 정치체제를 이끌어낸 것은 이해가 다른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현대사에서 지배체제에 도전하는 민주운동의 흐름은 이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적 사유야말로 시민의 권리이자 공동체 성원으로서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은 국가와 공동체 성원간의 상호관계를 역사·정치적 관점에서 다룬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체제가 수립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 법외 지위를 갖게 된 시민,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게 된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는 집단과 이데올로기, 증오의 정치, 폭력과 권력, 폭력과 법, 반공주의와 폭력에 대한 이론적 분석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사례로는 전쟁기 피학살과 고문조작 간첩, 정치재판, 의문사, 국가보안법, 사찰 등을 통해 ‘중복’논란의 역사와 정치사회 구조를 해명하려고 했다.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두는 까닭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에 힘입어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가능성을 분별하기 위함이다. 역사적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이 구조 속에서 국가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그 이유는 오직 이것이 인간 자유의 한계와 의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⁴⁾

2. 폭력비판과 증오의 정치

1) 폭력 비판

국가권력의 피해자를 연구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없이 폭력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폭력은 사실상 권력과 동의어다. 막스 베버(Max Weber) 이후 국가를 물리력을 독점한 정치체제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때,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은 정의와 폭력의 경

4) C. W. Mills,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59), p. 174.

계를 넘나든다. 폭력과 권력은 최종 심급에서 ‘강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동일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폭력의 개념을 권력(power), 강제(force), 힘(strength), 권위(authority)라는 낱말과 구별하려고 했다.⁵⁾ 그러나 아렌트가 인정하고 있듯이 이 단어들 속에는 일정하게 폭력을 뜻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들 개념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는 “법 자체의 영역 내에서, ‘정의’와 ‘폭력’사이에 명확한 구분선을 긋는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곤란”에 처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⁶⁾ 그는 “국가권력에 절대적인(또는 이상적 독점이라는) 성격을 부여하는 ‘정초적 폭력(violence de foundation)’은 실존하기 위해서 단지 이상화되거나 신성화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행사되고 특정한 장소 및 시간에 사회의 특정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 본질을 간파했다.

권력의 절대적 성격, 이상적 독점과 신성화는 폭력에 있다.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상태는 법률적 폭력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부과하는 것은 그 속에 항상 존재하는 폭력의 요소(법의 힘)를 의미한다. 법에 부여된 힘이란 국가가 단지 “강제력의 독점”뿐만 아니라 법을 “정의()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면서 구성”되는 것을 뜻한다.⁷⁾ 옳고 그름, 바름과 잘못을 판단하는 힘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달리 해석하면 폭력을 행사할 법적 대상과 범위, 방법을 선택할 능력을 소유한 것은 국가라는 의미다. 필연적으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폭력에 관한 질문은 권력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폭력의 경계는 권력의 경계이고 폭력에 관한 질문은 결국 권력의 한복판에 존재한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법을 “항상 허가된(권위를 부여받은) 힘”, 곧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힘이거나 자신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된 힘”이라고 정의했다.⁸⁾ 비록 이런 정당화가 다른 편에서는 정당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도 그렇다. 그는 “힘이 없이는 법도 없다”는 칸트의 명제를 환기시키면서 법의 적용 가능성이나 강제성은 “법으로서의 정의 개념 자체에, 법이 되는 것으로서의 정의, 법으로서의 법 개념 자체에 본질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힘”이라고 규정한다.

데리다는 법의 강제적 성격에 대해 “힘에 의해 ‘강제되고’ 적용될 가능성을 함축하지 않는 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힘이 없이는 어떠한 법의 적용 가능성이나 ‘강제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⁹⁾ 이 힘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든, 물리적이거나 상징적이든, 외재적이거나 내재적이든, 난폭하든 세련된 담론이든, 강요나 규제든 상관없이 법

5) Hannah Arendt, *On Violence* (Harcourt Brace Javanovich, 1970), pp. 43~45. 이는 이미 독일어 Gewalt가 의미하는 뜻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게발트’는 ‘폭력’으로 번역하지만 독일에서 이 단어는 쓰임새에 따라 적법한 권력, 정당화된 권위, 공적인 힘을 의미한다.

6) 에티엔 발리바르 지음/최원·서관모 옮김, 『대중들의 공포: 맑스 전과 후의 정치와 철학』, 도서출판b, 2007, 494쪽.

7) 에티엔 발리바르 지음/최원·서관모 옮김, 위 책, 495쪽.

8) 자크 데리다 지음/진태원 옮김,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12, 15쪽.

9) 자크데리다 지음/진태원 옮김, 위 책, 16쪽. 이 문장의 앞 구절은 다음과 같다. “분명 적용되지 않는 법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적용 가능성 없이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의 적용 가능성을 강제한다. 계속해서 그는 법과 정의의 관계를 통해 법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데리다는 “법의 설립과 정초, 정당화의 순간은 수행적 힘, 곧 항상 해석적인 힘과 믿음에 대한 호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¹⁰⁾ 법을 정초하고 창설하고 정당화하는 작용, 법을 만드는 작용은 어떤 힘의 발동인데, 이는 그 자체로는 정당하지도 부당하지도 않은 폭력으로서 수행적이며 해석적인 폭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폭력 비판을 위하여”에서 법과 관련한 두 가지 폭력을 구분했다. 이는 법을 설립하고 정립하는 정초적 폭력(법 정립적 폭력)과 법의 영속성과 적용 가능성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보존적 폭력(법 보존적 폭력)이다. 데리다는 벤야민의 논지를 넘어서 법정립적 폭력에 법보존적 폭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는 정초적 폭력은 자신의 반복을 요구하며 정초적 폭력이 보존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을 정초한다는 점에서, 정초적 폭력의 구조에 보존적 폭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모든 정립은 “정초의 순간 속에 보존의 약속을 기입”하고 “기원적인 것의 중심에 반복의 가능성을 기입한다.”¹¹⁾ 정립은 이미 자기 보존적인 반복에 대한 요구이자 자신이 정초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 재정초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보존적 폭력은 정초적 폭력의 ‘반복’과 그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2) ‘집단’과 ‘이데올로기 덩개’, 증오의 정치

보편적으로 어떤 집단의 성원으로서 규정되는 특성을 설명할 때 문화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개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성, 언어, 인종, 계급, 민족성 등으로 구별된다.¹²⁾ 윌러스틴이 설명하는 이와 같은 문화 개념은 사회 행위자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결정 원리를 지닌다는 그람시(Antonio Gramsci)의 논의와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보통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하나의 공동체 성원으로서 불려진다. 행위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관련된 연계성 속에서 구성되는 서로 상이한 주체들로 존재한다.¹³⁾ 여기서 중요한 논지는 이러한 주관적 원리들 또는 이데올로기 요소들 간의 객관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¹⁴⁾

정치지향과 가치관, 사상의 이해가 서로 다른 시민들간의 객관적 관계를 규정한 것

10) 자크데리다 지음/진태원 옮김, 위 책, 31쪽. 데리다는 법과 정의의 복합적인 관계를 보충하면서, 이 경우 법이 힘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 지배권력의 외재적인 도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힘 또는 권력이나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과 좀 더 내재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법적 정의가 유용성에 따라 순응하거나 일치해야 하는 힘과 사회적 권력,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 권력에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11) 자크데리다 지음/진태원 옮김, 위 책, 88~90쪽.

12) 임마누엘 윌러스타인 지음/김시완 옮김, 『변화하는 세계체제: 탈아메리카와 문화이동』, 백의, 1995, 212쪽.

13) 샬탈 무페 편/장상철·이기웅 역, 『그람시와 마르크스주의 이론』, 녹두, 1992, 203쪽.

14) 이데올로기와 주체의 논쟁에서 주체(subject)는 의식의 원천, 객관적인 역사 과정 속에 주관적 원리가 개입해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호명(interpellation)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실천의 산물이다. 알튀세르의 이 논의에서 이데올로기는 주체를 생산하는 실천이다. Althusser, Loui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 (London: New Left Books, 1971), pp. 160~165.

이 민주주의다. 정치의 주체로서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표출할 수 있는 보편적 근거는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며, 개별국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같은 법체계를 통한 규범이다. 문화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방식들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서 집단 차원에서 보자면 각 집단 고유의 특질, 행태, 가치, 신념을 함축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유의 집단이 가진 문화가 반드시 보편적이거나 독특할 필요는 없다.

근대국가에서 문화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다. 서유럽 국민국가의 형성을 추적한 찰스 틸리(Charles Tilly)는 국민을 구성하는 과정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문화적 동질화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했다. 동일화는 국가 내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시키면서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¹⁵⁾ 이 과정을 거쳐 타자로서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국민정체성이 자리 잡게 된다. 칼 도이치(Karl W. Deutsch) 역시 국민국가가 성립하는데 구성원들의 문화동화(cultural assimilation)를 매우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설정했다.¹⁶⁾

문화를 설명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용어가 호명될 때 나타나는 ‘집단’의 모호성 때문이다. 이 기표(記號)는 어떤 집단이나 세력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을 어떤 집단이라고 일컫는가? ‘집단’은 가장 모호한 개념이다. 역사적 범주로서 또한 사회과학적 어휘 속에서도 ‘집단’이란 용어는 분류학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혼동되게 쓰이는 일반적인 지식이다.¹⁷⁾ 문화가 집단 간의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을 때, ‘종북’이란 집단은 어떤 문화를 지닌 것인가, 단순히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 세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 현대사에서 ‘북한의 동조세력’으로 알려진 ‘사상범’이나 ‘정치범’은 누구를 칭하는가.

사상범은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존재했다. 사상범죄는 좌경사상에 기인한 범죄로서 치안유지법과 치안경찰법 등 위반과 출판, 반동운동 및 반동단체원, 노동운동 및 노동쟁의, 농민운동 및 소작쟁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수평운동에 기인한 범죄 따위다. 검사출신으로 치안국장을 지내기도 한 한옥신(韓沃申)은 사상범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심적 사상체계를 실현함에 있어 국가의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유책(有責)한 행위”라고 정의했다. 또한 정치범죄는 “특정국가의 기본적 정치질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라고 한다.

그러면 정치범죄와 사상범죄의 관계는 어떠한가. 한옥신에 따르면 사상범죄에 있어 사상체계의 실현이 국가의 기본질서 내지 정치질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

15) Charles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75), p. 19.

16) Karl W. Deutsch, “Nation-Building and National Development,” Deutsch, Karl W. and Foltz, William J., (ed), *Nation-Building* (New York: Atherton Press, 1966), pp. 1~16. 칼 도이치는 국민국가 성립에 있어서 문화통합 뿐만 아니라 정치통합(political integration),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 사회동원(social mobiliz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17) 임마누엘 왈러스타인 지음/김시완 옮김, 『변화하는 세계체제: 탈아메리카와 문화이동』, 백의, 1995, 214쪽.

이것은 단순한 사상운동을 넘어서 정치운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경우 사상범죄가 그 국가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한 정치범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다.¹⁸⁾ 사상범죄와 정치범죄는 본질상 구별할 수 없으며 결국 같은 범주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사상범은 결국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한옥신은 이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단정했지만 이들 법이 적용된 사례를 역사에서 살펴보면, 실제 대다수는 정권의 반대자들이었다.

보편적으로 시민들은 어떤 주의주장에 대해 ‘가변적인 경계’에서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어느 하나의 기준을 자신의 유일한 신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별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개개인의 시각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그 당시의 조건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정치사상적 입장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행태를 띠고 있다. 사상적 측면에서 매우 모호한 세력을 특정한 집단으로 지칭할 때 그 범주의 경계선은 이를 설정하는 사람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법과 같은 명확한 규범이 아닌 다음에야 개인의 말과 글과 행동을 제3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적과 같은 것이다.

윌러스틴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인 근대체제에서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용법을 집단과 사회체제내의 이해관계로 설명한다. 일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반대해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덩개”가 바로 문화라는 것이다.¹⁹⁾ ‘종북’은 반공주의의 변용으로 나타난 ‘이데올로기 덩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대사에서 ‘정치범’이나 ‘사상범’이라는 역사·정치적 용어의 사회문화적 교본인 셈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재야세력은 정치사상범의 범주로 인식되었다. 이는 ‘내부의 적’이라는 보다 선명한 ‘우리’와 ‘타자’를 명확히 구별하는 전쟁정치 용법과도 일맥상통한다.

공동체 내에서 타자를 분리시키는 구별 전략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이나 시민권과 연계되어 있다. ‘종북’에 관련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성원이 아닌 자들이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박탈당해도 괜찮다는 함의를 갖는다. 이는 특정 집단의 범주화가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는 과정으로서 타자와 자기를 구분하는 현상인 셈이다. 비국민은 정치공동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무리로서 ‘우리’와는 다른 ‘상대’로 규정된다. 국가는 이들을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정치공동체 내의 ‘적’으로 간주한다. ‘종북’은 이전의 ‘간첩’, ‘빨갱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속어다. 이 용어의 등장배경과는 별개로 우리사회의 갈등과 편가르기 수준을 정치영역으로부터 사회문화, 다른 하위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구실을 한다.

확장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증오다. 이것은 그 기원이나 심리적 과정이 무엇이든 간에 외부의 연계된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서 조정된다. 이는 정치와 관습을 통해 동원되고 증오의 잠재성은 법의 지배에 의해 포함되거나 훈육될 수 있다.²⁰⁾ 우

18) 한옥신, 『사상범죄론』, 최신출판사, 1975, 7~9쪽.

19) 임마누엘 윌러스틴 지음/김시완 옮김, 앞 책, 216쪽.

20) Robert L. Tsai, “Introduction: The Politics of Hate”, *JOURNAL OF HATE STUDIES*, Vol. 10 No. 1, 2012, p. 9.

리는 증오가 사회적으로 작동하고 조직되며 어떤 상황에서 정치적 행동주의로 발전하는지 그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집단을 증오하는 (개인) 욕망이 정치적 경로를 통해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유포되면 정치 담론으로 전환된다. 증오의 선동은 특별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해 “적”에 대한 적대적 증오로 변형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외부든 내부든 “적”에 대해서는 무서움을 느끼므로 증오의 대상으로서 “적”은 퇴화하고 더럽혀지며 파괴적인 감정을 반영한다. 이러한 하나의 위협은 통제보다 더 완화될 수 없는 정치적 행동과 폭력에 의해 지원되는 성공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증오의 정치 (politics of hate)가 깊은 복수의 욕망이나 민주적 이성에 반하는 반작용에서 탄생했건 간에 이것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구조화된 증오의 정치가 정치적 담론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2차 대전 중반 무솔리니 독재는 공산주의자, “그들”을 적으로서 악마화하고 비인간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증오의 정치를 동원했다. 공산주의자에 대한 미움은 동부전선에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한 정당화의 한 부분으로서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와 선전의 주요 역할이었다.²¹⁾ 우리와 다른 그들에 대한 적의로서 증오는 가장 손쉽게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갈등을 바탕으로 한 조정과 타협의 정치과정인데 상대방을 증오하는 문화가 사회영역으로 팽창하면 국가권력에 종속되는 시민사회의 식민화가 이뤄진다. 적에 대한 증오가 상승할수록 한편의 부분적 통합은 팽창하고 그 밀도는 높아진다. 공론장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시민들의 합리적인 토론과 이성적 성찰은 사라지고 이 정치과정은 증오의 정치로 변질된다. 증오의 정치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는 비단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들”이나 “적”으로 적대 받은 시민들에게 마찬가지다.

3. 전쟁과 분단의 유산

1) 전쟁정치와 국내평정

전쟁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탁월한 분석에 따르면 전쟁 중이거나 준전시 상태의 국가에서 정치는 “가장 극단적인 ‘적과 우리’의 논리”에 따라 이뤄진다.²²⁾ 전쟁수행 원리에 따라 국가운영이나 정치가 이뤄질 때 정치, 사회갈등이 폭력으로 변하고 “‘적과 우리’

21) Marla Stone, “Italian Fascism’s Soviet Enemy and the Propaganda of Hate, 1941-1943”, *JOURNAL OF HATE STUDIES*, Vol. 10 No. 1, 2012, p. 75.

22) 김동춘,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제89호, 2011, 337~338쪽. 전쟁정치는 이데올로기 차원(반공주의, 반인종주의 등), 법적 차원(계엄법, 국가보안법 등의 제정과 집행), 공권력 행사 방식(경찰, 군대의 동원) 등으로 나타난다.

의 원칙과 담론”은 지배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국가권력 행사나 일상적인 정치활동에서 전쟁의 원리, 정치갈등을 내전이나 비정규 전쟁과 구별할 수 없게 되면 적으로 지목된 집단을 부정하는 전쟁의 보편화와 일상화가 진행되어 국가 내부의 야당, 저항운동, 비판적 시민까지 적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정치적 실천을 ‘전쟁정치’라고 명명한다.

전쟁정치에서 지배체제에 비판적인 집단이나 시민은 국가 내부의 적 또는 적으로 의심되어 최소한의 법적 보호에서 배제된다. 폭력적 진압의 대상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 형식 아래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전쟁정치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바로 민주주의 파괴에 있다. 근대국가에서 정치과정의 핵심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원칙의 적용이라고 본다면 주권을 위임한 시민의 권리는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나 담론,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전쟁정치는 이러한 제 권리를 규정한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비판적 시민들을 정치과정에서 추방한다.

전쟁에서 상대방은 최종해결, 끝까지 죽여야 하는 대상이자 삶의 의지를 박탈해야 할 존재다.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과정이 한계가 없듯이 전쟁의 논리적 한계 역시 없다. 한국전쟁의 경험은 정치에서 국가권력의 폭력적 행사를 마치 전쟁에서 적에 대한 처리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둔갑시켜 왔다. 이러한 행태적 논리의 근원에는 정치의 뒷받침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수성도 매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우리사회가 엄격한 반공·친미 보수사회로 굳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는데, “국민의 사고와 경향에도 냉전의식이 강력하게 주입되어 진보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²³⁾

전쟁과 국민의 관계에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한 것은 국민보도연맹원일 것이다. 1949년 4월 20일 관변단체로 출범한 이 조직은 최대 30만 명 내외의 구성원들을 반공교육을 통해 사상전향을 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집단살해했다.²⁴⁾ 정부수립 전후부터 경찰 사찰계와 CIC는 조직을 확대하면서 대공·방첩 업무를 전담했는 전쟁이 발발하자 강한 정치성을 갖고 있었던 이 두 기관의 권한은 확대되었고, CIC는 대민관계에서 사법·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상범 업무를 지휘했다. 결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던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은 정부의 배신이었다.

이 사건에는 CIC와 경찰, 헌병, 검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총동원되었는데, 요시찰인 연행과 학살에 군·경 등 모든 기관이 일사분란하게 관여한 것은 최고 상층부로부터 (from top level)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의 원인은 권력 고위층의 국민에 대한 태도나 정신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상관의 지시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²⁵⁾ 이승만 대통령이 살해 명령을 직접 내렸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권력기관은 사상을 빌미로 보도연맹원들을 1950년 6월 말경부터 9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살해했다.

23) 김학준, 4·19이후 5·16까지의 진보주의운동, 강만길 외, 『4월혁명론』, 한길사, 1983, 206쪽.

24)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은 다음 참고.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7』, 2010, 303~634쪽.

25)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1999, 635쪽.

전쟁초기의 학살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에서도 민간인은 대규모 적대의 대상이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거창사건에서 국가가 의도한 국민/비국민 전략을 살펴보자. 1950년 10월 창설한 11사단의 견벽청야 토벌작전은 빨치산과 민간인의 구별을 염두에 두지 않는 개념이었다. 이는 9연대의 작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대략의 요지를 보면, ‘작전지역내의 주민은 전원 총살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⁶⁾ 이 명령에 따라 1951년 2월 5일부터 3대대는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작전에 들어가 신원면 일대 6개리 마을주민 719명을 학살했다.

거창학살은 영토 내 주권의 독점적 구축과정에서 일어난 도전세력에 대한 공격이었다. 국가가 민간인에 대해 벌이는 학살은 국가권력의 형성과정과 주체, 행사방법과 연관되어 있다. 근대국가 형성과정은 폭력의 독점과 정당성을 다투는 세력들의 체계적인 배제과정임과 동시에 자국 영토내의 주민들에 대한 통합과 충성의 독점적 확보를 추구한다. 이렇게 국가는 정당성을 구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주권의 독점을 구축한다.²⁷⁾

전선의 이동은 남북한 체제에 소속될 “내집단과 외집단, 자기와 타자, 내편과 네 편, 국민과 적을 가르는 국경”을 의미했다. 점령지 영토 내 구성원은 “적, 또는 적과 연결된 외집단으로 의제되어 과도한 폭력행사의 대상으로” 변하고, 국가는 자신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구성원을 향해 행사하는 억압의 실체가 된다. 전쟁은 점령과 피점령, 지배와 피지배를 겪은 상대방에 대한 배제와 함께 진행된 국민형성 과정이자 “반대세력을 ‘민족 내 국경’ 너머로 몰아”낸다.²⁸⁾ 국내평정(internal pac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이미 국민으로서 존재”하는 대중을 국가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국민이 아닌 존재로 전략시킨다. 거창사건처럼 “내부의 특정집단이 외부와 연계된 주권에 대한 도전세력”, 적대적인 국민으로 인식될 경우 이들은 폭력 행사의 대상으로 전환된다.²⁹⁾ 내부의 반대세력을 제압하면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이중과정에서 다른 이념을 가진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학살은 정당화되었다.

전쟁과 같은 비상시를 틈타 광범위한 국민을 적으로 살해한 행위는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 좌익이나 체제 반대세력이 증오와 처벌대상으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좌익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이념적 문제를 넘어서 일상적인 악감정으로 바뀌었고, 정치·사회적 반대자에 대해 ‘좌익’이라는 한마디로 상대방을 매장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증오는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행태가 일반 국민들에게

26) 9연대의 작전명령 제5호에 대한 위·변조와 학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고.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Ⅲ)』 (재판자료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5~10; 67; 175쪽 ; 한성훈, 거창사건의 정치사회학적 분석: 기억의 정치와 학살의 승인,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제69호, 2006, 215~239쪽.

27) F. H. Hinsley, *Sovereign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nd edition, 1986), p. 22 ; 박명림, 「전쟁과 인민: 통합과 분화와 학살」,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제16호, 2000, 141쪽 재인용.

28) 박명림, 위 글, 142~143쪽 ; 한성훈, 『전쟁과인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61쪽.

29) 박명림,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의 사례 연구-탈냉전 이후의 새 자료, 정신, 해석」, 한인섭 편, 『거창사건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제4회 거창사건 학술보고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10~111쪽.

널리 퍼져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 일상적인 증오의 정치가 그들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회 분위기와 인식은 좌익이나 정적을 처리하는 이승만 정권의 고위층과 군·경의 즉각적인 조치를 합리화하는데까지 나아갔다. 해방공간과 분단정부 수립과정에서 조성된 좌익에 대한 정치적 증오와 사회적 고립은 전쟁 때 실제 학살로 이어졌으며,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³⁰⁾

2) 군사쿠데타와 ‘용공분자’

1960년 4·19 혁명에 뒤이은 1961년 5·16쿠데타는 또 한 번 혁신세력들과 체제 반대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그 이유는 과거에 있었다.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정치권력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족들을 군사재판에 세웠다. 그 이유는 전쟁 때 발생한 학살의 진상규명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권력 행사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억압조치와 보복을 행사한 것은 학살사건이 밝혀지면, 쿠데타의 명분과 이념이 훼손되고 학살에 관한 자신들의 과거행적이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³¹⁾

현대사에서 정통성이 허약한 정권일수록 야당이나 민주운동을 주장하는 저항세력을 북한과 연계된 것처럼 꾸며서 탄압해 왔다.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는데 박정희 소장은 그 직후 ‘용공세력’을 색출하라고 명령했다.³²⁾ 쿠데타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없었던 5월 17일 오전 8시 30분경, 그는 방첩부대장 이철희를 육군본부로 불러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즉시 군 수사기관을 동원, 경찰의 협조를 통하여 경찰이 입수하고 있는 리스트”에 근거해 용공세력 분자들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³³⁾ 군사정권이 전국 각지 군과 경찰, 헌병대에 비상을 걸어 명령한 “용공세력 색출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즉시 용공세력 분자를 색출하라.
- 2) 방법은 군수사기관을 동원하되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경찰이 입수하고 있는 리스트」에 의해서 색출하라.
- 3) 체포한 용공분자는 경찰에 수용하도록 하라.

30)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7』, 2010, 509쪽.

31) 박명립, 거창양민학살과 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학살 문제의 조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거창사건의 진상규명 및 법적해결』, 2001, 108쪽.

32) 5·16쿠데타 직후 벌어진 이 내용은 다음에서 수정·인용했고 그 참고자료는 그대로 표시했다. 한성훈, 「기념물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집단정체성: 거창사건의 위령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제 78호, 2008, 47~49쪽 ;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07』, 2010, 484~485쪽.

33)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군사혁명사』 제1집(상), 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246쪽.

군경에 붙잡힌 사람들은 정당인 606명, 사회단체 관련자 256명, 학생 70명, 교사 546명 등 2,014명에 달했다.³⁴⁾ 쿠데타 주도세력이 지칭하는 ‘용공세력’은 이른바 보도연맹원, 피학살 유족 등 피해대중과 혁신정당 관련자, 좌파 이데올로기에 물든 지식인, 정치지도자, 노조 지도자 등 사회 불만세력과 좌익활동을 한 사람들이었다.³⁵⁾ 이 조치는 5·16 직후 미국이 박정희의 좌익사상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자 쿠데타 주도세력들이 “보도연맹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공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다.³⁶⁾ 1961년 5월 18일 미국대사관은 “쿠데타 세력이 당시 한국 정보기관들이 갖고 있던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적으로 체포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전문을 본국에 타진했다.³⁷⁾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요시찰인에 대한 감시는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5·16쿠데타의 핵심 역할을 했던 유원식은 이석제와 함께 군사혁명위원회 헌법기초위원이었다. 유원식은 쿠데타로 한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박정희가 “그의 사상이 의심받고 있음을 알고 그의 측근들과 함께 자신들이 좌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소위 용공분자()”를 일제히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일을 지휘한 김종필이 박정희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김종필은 검속으로 잡아넣은 사람들이 “약 2만 8천명 가량되는데 수송에 필요한 열차까지 준비”했고, “그들을 거제도로 데려가서 한데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한꺼번에 사살해 버리”려고 하는 언급을 했다. 용공분자를 거제도로 후송하는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고 학살 기도 역시 좌절되었다. 그러나 검속된 사람들은 혁명재판에 회부되어 또 다른 파멸을 겪었다.³⁸⁾

박정희의 명령을 받은 이철희 방첩부대장은 요시찰인에 대한 검거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방첩부대는 「위험인물 예비검속계획」³⁹⁾을 작성해 계엄사령관 장도영에게 보고했고, 5월 18일 부터 경찰의 협조를 얻어 혁신정당 및 사회단체 간부 등을 대대적으로 검속했다. 명목상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었지만 이를 주도하고 실제로 추진한 것은 방첩부대였고, 이철희 부대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임했다. 대민업무 그 중에서 ‘사상범’에 대한 처리는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방첩대(CIC)가 맡았다.

구금된 사람들은 한국전쟁 때와 유사하게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졌다. 1961년 5월 27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9차 회의에서 ‘구속된 자 처리의 건’을 심의했다. 군검경

34) 조국, 「한국근현대사에서 사상통제법」,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2호, 1988, 334~335쪽. 1961년 5월 22일 조흥만 치안국장은 용공분자 등 2,014명을 검거, 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 1961. 5. 23.

35) 이종오, 「4월 혁명의 심화발전과 학생운동의 전개」, 이종오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220쪽.

36) 이석제,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 서적포, 1995, 121~124쪽.

37) NARA, RG59, Central Decimal Files 795B.00, 주한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 1961. 5. 18.

38) 유원식, 『(5·16비록) 혁명은 어디로 갔나』, 인물연구소, 1987, 296~299쪽. 그는 자서전에서 군사정권의 이런 조치, 동족에 대한 무차별 학살 만행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민들로부터 5·16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염려하여 반대했다고 밝혔다.

39) 방첩부대 방첩과, 「위험인물 예비검속계획」, 4294. 5. 17. 전문은 다음 참고,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8』, 2010, 339쪽.

합동으로 잡아온 사람들의 용공여부를 조사해 주동자는 A, 행동한 자는 B, 활동이 희박한 자는 C급으로 분류한 후 C급은 석방하도록 조치했다. 군사정부가 기록한 업무자료에는 이러한 조치가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 A급은 혁명검찰부에 송치, B급은 군법회의 검찰부, C급은 민간 검찰에 송치, D급은 중앙심사결과 석방, E급은 지방심사결과 석방으로 분류했다.⁴⁰⁾ 이렇게 군사정부는 1960년 유족회 활동과 교원노조 등에 관여한 사람들을 특수반국가범죄라고 하는 죄명으로 군사재판에 세워 정치재판을 단행했다.⁴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5·16쿠데타 직후 정치재판으로 문제가 된 민족일보 조용수, 피학살자유족회,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경북사회당 사건을 조사한 후 진실을 규명했다.⁴²⁾ 이중 일부는 최근 법원이 재심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⁴³⁾ 이들 사건은 정권수립의 정통성이 없고 또한 권력행사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군사정권이 ‘반공과 구질서 척결’이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앞세워 시민의 기본권을 빼앗고 ‘내부의 적’으로 몰아 척결하려 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증언과 방첩부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군경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검속대상자를 관리하고 정권이 위태로울 때는 언제나 잡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통상한 국가에서 군대는 가장 막강한 물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폭력조직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복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권에 저항하거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은 항상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압박을 느꼈다.⁴⁴⁾ 이는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저항의지를 원천적으로 탄압하고 봉쇄하는 효과를 낳았다.

3) 정치교육과 불온한 세력

군의 정치교육은 이미 미군정 때부터 논란이 되었다. 국군이 이와 관련해 교육하고 있는 교안은 일종의 정치사상교육, 정신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교육, 어떤 정치성을 교정하려는 강한 의도를 가진 행위는 반공주의가 그 기준이었고, 교정의 일반적인 형태가 교육이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정신을 규율하는 것이

40)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사』 제1집(상), 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830~831쪽.

41) 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고.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4집, 1962, 189~368쪽.

42)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내용은 다음 참고. 진실화해위원회,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8, 1069~1144쪽. 5·16쿠데타직후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참고.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8』, 2010, 193~379쪽.

43) 조봉암 사건 재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진보당 창당과 관련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로 사형이 집행되기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으므로 이제 뒤늦게나마 재심판결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고, 무기불법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조봉암사건〉 [공2011상.508]. 피학살자유족회 사건 희생자 김영욱과 이원식 등도 유족들이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44) 홍석률, ‘박정희 정권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차 별책』, 2004, 92~93쪽.

었다. 1948년 11월 29일 국방부는 군인의 정신적 사상훈련을 위한 전담부서로 정치국()을 조직하려고 했으나 미군사고문단은 “정치장교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제도로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⁴⁵⁾

이에 따라 국방부는 그해 12월 7일 정치국을 정훈국으로 개칭해 발족했다. 정부수립직후 국군의 기본정신은 광복군의 독립투쟁심을 계승한 투철한 애국사상과 반공정신으로 무장한 “사상전사”를 기르는데 있었다. 국방부는 정훈을 정치훈련에서 유래한 용어로 보고 군의 정신적 훈련을 실시하는 정치훈련의 한 분야라고 밝히고 있다. 미군의 반대에 따라 정훈교육 내용은 군 정치교육이 아닌 공민교육(Troop Education), 공보(Public Information), 정훈교육(Troop Information)으로 구성되었다.

군의 정치사상교육은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치사상교양, ‘계급, 반미교양’과 다를 바 없다. 미국은 이미 한국정부 수립직후에 이러한 정치교육의 전체주의 성격을 지적했다. 국군의 전신인 경비대 창설 초기로 돌아가 보면 미국은 일관되게 병사들의 비이념적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것은 조선국방경비대가 어떤 이념도 주체도 없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했다.⁴⁶⁾ 군은 특정한 정권이나 정치집단의 아니라 국민과 시민의 군대이며 탈정치화된 조직이다. ‘중복’논란은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이지 군대에서 정치교육, 정훈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의 극우반공체제는 전쟁 때 발생한 학살을 매개로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고, 시민에 대한 ‘일반적인 살해’는 끊임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확산시킴으로써 그 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국가가 그 공동체 성원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살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를 목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전달된다. 이는 국가로부터 “좌경세력”이나 ‘불온분자’라는 딱지가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 한번이라도 “이런 사람으로 지목되면 집안에서건 마을에서건 따돌림을 받고 격리되어야”했다.⁴⁷⁾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학생운동 등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사회운동 참여자들은 예외 없이 ‘불온한 세력’으로 매도되었다.

‘불온한 세력’은 학살을 경험한 광범위한 피해대중과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싸웠던 시민들 사이에서 탄생했다. 이들은 때때로 ‘정치(사상)범’이란 예단 속에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묘사되었다. 공안기관에서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은 단지 ‘사상범’이라는 이 색깔 때문에 다른 재소자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 고문과 조작은 극우반공체제에서 간첩을 효과적으로 만들었고 이들이 몸담은 지역공동체와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교훈’을 전파했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불법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과 학살, 고문과 조작마저도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끔 조장했다.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해 이것이 과거에

4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국방군사연구소, 1995, 33~34쪽 ; 한성훈, 앞 책, 161쪽.

46) 육군본부, 『창군전사』, 1980, 441쪽.

47) 서중석, 앞 책, 703쪽. 서중석은 집단학살에 대해 보여준 한국 지식인의 자아분열을 직시하고 있다. 그는 여론주도층이나 기득권층 그들이 학살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극우반공이데올로기의 목소리로 살아간 것을 비판했다. 한국사회의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 종교인 등 다수가 이중인격자였다(서중석, 위 책, 728쪽).

일어났기 때문에 아우슈비츠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⁴⁸⁾ 20세기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식민지배, 내전은 계몽주의 이후 인류의 이성이 몰락하는 시대였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전체의 역사”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범죄의 역사’였다. 전쟁을 포함해 파괴적인 인류의 역사는 “괴물 같은 존재는 많지만, 인간보다 더 괴물같은 존재는 아무 것도 없다”⁴⁹⁾는 비극 그 자체였다.

대량학살과 중대한 인권침해의 전사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안의 이질적인 존재’에 대해서 폭력이 횡횡할 것이다. 시대의 격변마다 체제에 저항한 세력을 숙아내려 했던 과거의 현실이 오늘날 되살아날 것이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이와 유사한 비상사태가 발발하기라도 하면, 60여 년 전 민간인 학살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적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임의로 구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종적으로 죽이는 행위까지 예사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직 복원도,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역사다.

4. 독재와 권위주의의 유산

1) 반공규율사회와 정치재판

사회과학에서 분단 현실에 대한 정치사회적 분석은 민주화 이후부터 가능해졌다. 이 전까지 ‘반공사회’에서 분단의 내적 영향과 결과를 연구하는 것은 학문의 영역에서 금기였다. 반공산주의 냉전의식이 다른 사회가치를 초월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면 통일과 같은 의제는 의식 차원이 아니라 감정 차원의 문제로 전락한다. 이 과정은 일체의 사실판단을 가치판단에 종속시키는 ‘반공분단의식의 과잉사회화(oversocialization)’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태로 발전한다. 사회를 규제하는 이와 같은 실재 가치는 생활 속에서 확인되고 끊임없이 재생되어 대중들의 내면에 자기검열(self censoring) 기제로 작동하는 데 이를 ‘반공규율사회’라고 한다.⁵⁰⁾

‘반공규율사회’는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경험에서 안착한 극우공동체의 상황을 일컫는다.⁵¹⁾ 이 사회는 분단 반공의식이 내재화해 나타난 하나의 사회실재(social reality)로서 이를 형성하는 조건은 해방공간의 정치·계급투쟁이 내전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항운동의 초토화와 대중의 탈동원화, 국가와 시민사회의 비대칭성, 내재화된 레드콤플렉스 등이다. 반공이라는 하나의 논리가 여타 모든 논리를 압도하고 이 논리로 시민을 통제(discipline)하고 규율(regimentation)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는 하나

48) 임철규, 『죽음』, 한길사, 2012, 130쪽.

49) Bruckner, Pascal, *The Tyranny of Guilt: An Essay on Western Masochism*, Steven Rendall 옮김 (Princeton: Princeton UP, 2010), 115쪽 ; 임철규, 위 책, 153쪽 재인용.

50)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1998, 94~95쪽.

51) 조희연, 위 책, 92~93쪽.

의 사상·운동이념이기 이전에 적대국가의 사상적 기반이었다는 점에서 거부당한다.⁵²⁾ 이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양식의 범위가 좁은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분단구조가 의사()합의된 사회에서 지배권력은 저항집단이나 주변적 인물들을 공산세력과 연계된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다수의 시민들이 보수화되는 것은 분단의식의 고착과 반공규율사회의 재생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실제 정치적 반대자로 제거되는 사람들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시민들이 직접 목격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975년 4월 9일 유신독재정권이 자행한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사형집행에서 보듯이 정적에 대한 가차 없는 처리는 최근 법원의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있기까지 희생자들을 적대적 국민의 전형으로 만들었다.⁵³⁾ 이 사법살인에 대해 박형규 목사는 박정희 정권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⁵⁴⁾

“분단의 저주를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사술(詐術)에 익숙했던 유신정권은 남한 땅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소위 ‘인민혁명당’을 만들어 이 지하 공산당 조직이 북의 김일성 정권의 사주와 지원을 받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만들었다고 선전 주장함으로써 국민을 적화통일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로잡아 유신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일거에 확보하자는 심산이었다.”

2005년 10월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을 재조사해 진실을 밝혔다. 두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64년 민정이양과 1974년 유신체제 출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 가운데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가장 진보적인 세력들을 묶어 북한이나 조총련 등의 배후조정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공안사건이다.⁵⁵⁾ 박정희 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중앙정보부와 검찰, 사법부까지 동원해 탄압한 중대한 인권침해였다.

검사와 판사까지 폭력행사에 동원한 이런 경우는 “법의 미명 하에 불법을 판결하는” “최악의 범죄”로서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⁵⁶⁾ 재판에서 법관은 고문·조작으로

52) 조희연, 위 책, 104쪽.

53)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학민사, 2001.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 반대데모로 위기에 처하자 혁신계 인사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이라는 죄목으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기소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며 사표를 던지고 기소를 거부했다. 사건은 연루자 47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고, 도예중에 대한 3년형을 최고로 일단락됐다. 1974년 ‘인혁당 재건위’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지만 실체가 없는 조직이었다. 유신 반대운동이 한창이던 1974년 전국적인 학생데모가 준비되는 와중에 긴급조치에 의해 사전에 학생들이 검거된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한다.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와 ‘일본 공산당계’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 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모두 풀려나고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들 중 8명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1975년 4월 형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54) 박형규, “역사 속에 묻혀진 영혼들을 위하여”(추천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 위 책, 5쪽.

55)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과와 내용은 다음을 참고.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주요 의혹사건편 권(II)』, 국가정보원, 2007.

56) 이재승, 『국가범죄』, 엘피, 2010, 314~315쪽.

범죄혐의가 과장·날조되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책임은 고문·조작을 실행한 경찰이나 검찰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박정희 시대는 “분단시대를 통한 정치권력의 유지와 안정”이 “계엄령이나 긴급조치 등에 의해”서만 가능했다.⁵⁷⁾ 이 정권에서 장기적이고 빈번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적 불법’⁵⁸⁾에 의해 유린당했다.

인혁당 재판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에서 자행한 진보당 조봉암 사건 정치재판에서도 정권의 의도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법관은 범죄행위로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진실을 규명했고⁵⁹⁾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말할 것도 없이 조봉암은 정권이 의도한대로 경찰, 검찰, 특무대 등의 권력기관이 조작한 ‘간첩 혐의’를 법원이 그대로 집행한 정치재판으로 사형당했다.

법의 문제와 관련해 각종 법령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된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사법제도를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해 구성원을 징벌하는 제도로서, 법정은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구성원을 만든다고 지적했다.⁶⁰⁾ 사법부까지 장악한 독재정권은 남북관계에서 한국사회 내의 저항이나 갈등을 곧 북한과 연계짓고 ‘국가안보’, ‘사회혼란 제거’, ‘국민총화’, ‘국민화합’, ‘질서’ 등의 명목으로 탄압의 정당성을 찾았다.⁶¹⁾

‘유신정권을 폭력집단’으로 규정한 박형규 목사의 진단은 인혁당과 민청학련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에서 고문으로 조작된 많은 간첩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 고문조작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 가장 적대적인 존재, ‘간첩’을 만드는 일반적인 행태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다.⁶²⁾ 삶의 비참함을 느끼는 순간은 당사자에게 절망적인 선택을 요구한다. 극도의 허기와 갈증, 추위, 병적인 학대와 고문 등 인간에 대한 굴욕감이 죽음의 나라(), 하데스와도 같았던 아우슈비츠에서 자살률이 높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⁶³⁾

2) 고문조작 간첩과 의문사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각종 의문사와 간첩조작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57)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1985, 62쪽.

58) 이 개념은 다음을 참고. 이재승, 앞 책, 461~473쪽.

59)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내용은 다음 참고. 진실화해위원회,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7, 21~80쪽.

60) Gramsci, Antonio,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ed. and trans. Q. Hoare and G. Nowell Smith (London. Lawrence & Wishart, 1971), p. 258. 그람시는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제도로서 사법제도와 교육제도를 제시한다. 공교육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형성하는 반면 국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제도를 고안하고 지배계급의 도덕적 정당성과 지도력,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를 활용한다.

61) 조희연, 앞 책, 106~107쪽.

62) 박춘환(마이데이 맘풀이), 진실의힘,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이데이 맘풀이 자료집 1』, 2012, 64쪽. 고통은 감옥을 나와서도 이어져 그는 이후에도 체초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63) 임철규, 앞 책, 128쪽.

어떻게 죽게 했는지 죽게 내버려두었는지, 그 유족들은 어떻게 망가졌는지 보여준다. ‘진도 간첩단사건’ 김정인은 1985년 10월 31일 “한 10년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거”라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형이 집행된 주검으로 아내에게 돌아왔다. 김정인과 같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풀려난 그의 아내 한화자는 “창자가 끊어지고 애간장이 녹아날 정도로 억울’했지만, 다섯 아이들에게 남편의 죽음을 도저히 설명할 방법도 능력도 없이 세월”을 보냈다. 그녀는 “남편이 너무 억울하게 들어가서 너무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이것이 없겠지, 그런 뜻으로 기도를 시작했”다.⁶⁴⁾

고문 피해자들은 왜 자신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극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 고문의 목적은 간첩을 만드는 것인데 간첩은 반드시 북한과 어떤 모종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것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분단시대, 분단체제가 아니었다면 억울하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들은 개인의 운명이 분단국가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의식은 결국 분단구조에까지 확장되었다.

1980년대 신군부정권은 조작간첩,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군 의문사건 등에서 시민을 법 밖의 존재로 내몰았다.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은 83건이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결과 19개 사건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한 반면, 30개 사건은 위원회의 부족한 조사기한과 권한, 관련기관의 비협조 따위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불능 결정되었다.⁶⁵⁾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사망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불능으로 처리한 ‘허원근 일병’ 사건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⁶⁶⁾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7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허원근 일병’은 3발의 총상을 몸에 입고 숨졌다. 군 수사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를 벌여 ‘허원근 일병’이 타살되었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 대해 국방부는 특별조사단(단장 정수성 중장)을 꾸려 다시 자체 조사를 실시해, ‘허원근 일병이 중대장 전령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했으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날조’된 것이라고 요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2기 의문사위원회

64) 진실의힘,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이데이 mampli 자료집2』, 2012, 8 ; 36쪽. 진도 간첩단 사건은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 하에 중앙정보부가 농협 직원이던 김정인 씨의 외삼촌이 전남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고 발표한 뒤 그의 어머니, 동생 등 일가친척 7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한화자는 53일간 고문을 당한 뒤 풀려났지만 남편 김정인은 1985년 10월 31일 사형이 집행됐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사과 및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 유족들은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0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65)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I』, 2003, 134; 140쪽. 사망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군사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이 뿌리내리던 시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연도별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현황을 보면 1970년대 14명, 1980년대 55명으로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는 16명에 이르고 있다. 의문사한 자의 사망 당시 수사기관에 의한 사망원인별 현황을 보면 추락사가 10명, 옥중 사망이 9명, 총기사가 11명, 그리고 의사()가 10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66) 『한겨레』, 2013. 5. 28 ; 8. 23.

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사건 축소 은폐의혹을 재조사하기까지했다.⁶⁷⁾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두고 벌어진 국가기관 사이의 주장과 대립은 우리사회의 이행기 정의와 기관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⁶⁸⁾ 비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으로 군내 사망사고 처리과정이 이전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군에 대한 민의 통제, 문민원칙과 군의 시민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초반 보안사의 반체제 학생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제징집 녹화사업(사상전향공작)⁶⁹⁾에서도 의문사건은 발생했다. 시위 중에 검거한 학생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군에 입대시켜 일정하게 관리하면서 세뇌(brain washing)을 실시한 이 공작은 국방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복교육’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김두황, 정성희, 이윤성 등이 군복무 중에 사망했다.⁷⁰⁾ 강제징집 녹화사업은 반체제 학생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초법적인 공작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강제징집은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강제징집 녹화사업은 보안사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범정부 차원의 공작이었다.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김두황·최은순 등 강제징집 관련 의문사건을 조사하면서 전두환정권의 청와대와 국방부, 문교부, 병무청, 경찰,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기무사령부)와 같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대학당국조차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⁷¹⁾ 1980년 청와대와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국방부 등의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5인 위원회’는 학원 통제를 주도했다. 이들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반체제 민주화운동, ‘문제학생’들을 처리했다. 학생이 기소 상태인 경우에는 공소취하를 시킨 뒤 군에 입대시켰고, 치안본부 대공분실과 안기부 등에서는 연행 이후 곧바로 강제징집 조치를 취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대학 당국은 단순한 협조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시국사건 관련 학생들이 강제징집될 수 있도록 학사 징계조치를 내리고, 집회 및 시위에 연루된 학생들의 성향을 꼼꼼히 분류해 징계했다. 문교부는 학생처 기능을 강화해 ‘문제학생’의 지도 및 평가, 집회 및 시위 차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원대책사업추진계획서’를 각 대학에 하달했다. 교수 면담이나 학부모 상담으로 선도되지 않는 ‘지도 불능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또는 직권휴학’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입영대상자는 휴학 즉시 입영조치, 비입영대상자는 학교 관계인이 협조지도’하도록 구체적인 방

67)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고.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II』, 2003, 335~353쪽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차 II』, 2004, 478~503쪽.

68) 이행기 정의와 과거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 한성훈,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실현-진실화해위원회 활동과 권고사항의 이행기 정의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제93호, 116~141쪽.

69)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2007, 5~202쪽.

70) 이들 개별사건은 다음 자료를 참고.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II』, 2003, 355~476쪽.

71)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차 I』, 2004, 134쪽.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대학당국에 대해 전면적인 자료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1981년부터 1983년까지 4백47명에 대한 강제징집 조치가 이루어진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20여 개 대학으로부터 약 6만여 쪽에 달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법까지 제시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학당국들은 적극 호응했다. 각 대학은 우선 학칙에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총장이 직접휴학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권휴학 조처’사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1년에 두어 차례 전국대학총학장 회의를 개최해 문제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문교부에 보고해 정부의 방침을 받은 다음 학생처를 중심으로 일일 상황보고와 문제학생 동태를 파악했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은 안기부와 보안사, 경찰, 문교부 직원 등 이른바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위한 운영경비까지 부담했다. 당시 대학은 국가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고 국가폭력의 집행기관으로 전략해 있었다.

국가권력은 노동운동에 개입해 의문사건을 일으켰다. 노태우 정권기인 1990년 9월 경 정부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 가입 노동조합을 상대로 범정부적인 차원의 탈퇴 유도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검찰, 노동부, 안기부, 치안본부는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전노협 소속 노조간부를 설득해 탈퇴를 회유했다.⁷²⁾ 노태우 정권은 ‘민주노조 추진 핵심인물에 대한 내사를 벌여 제3자 개입금지 등의 법을 적용, 적기에 사법처리함으로써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 하에 노동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전노협 업종별노동조합협의회 등 법외 노조 추진세력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보고 ‘심리전’차원에서 교육 홍보대책을 마련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조합비를 압류하고 강제 집행하는 등의 조치도 나왔다. 이러한 노동대책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유효한 근거로 남아 최근 배달호, 김주익 등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자살로 저항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91년 의문사한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안기부의 전노협 대기업노조연대회의 탈퇴회유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부산시청이 한진중공업에 요구한 업무조사가 사실은 안기부와 노동부의 업무공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박창수를 구속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악용되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박창수가 사고 현장인 병원 옥상으로 갈 때 동행자가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확보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의 비협조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의문사한 자의 죽음은 사회의 일반적인 죽음과 다르게 이해되는데, 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지속적인 ‘고통’이 유가족들의 삶에 부가되기 때문이다.⁷³⁾ 더욱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시대적인 배경과 맞물려 사회·정치적 의미들이 더해지면서 공론장의 주요 의제가 되어왔다. 군인과 경찰들은 증오나 두려움과 같은 도덕적 감정을 제어하고 고문과 같은 폭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상부의 명령과 권위에 대한 복종에 따라 행동한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그들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하다.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이들에 대한

72)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차 I』, 2004, 136쪽.

73)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I』, 2003, 296쪽.

책임을 끝까지 지는데 그 의의가 있다.

3) 시민에 대한 사찰

국민의 사상적 동태를 파악하는 권력기관의 사찰은 식민지 유산이다.⁷⁴⁾ 그 기원인 요시찰 제도는 식민지 일제경찰이 독립운동을 한 정치범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해방 이후 경찰에 그대로 승계되었다.⁷⁵⁾ 사찰은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사찰()’과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요시찰(要視察)’로 구분할 수 있다. 요시찰제도는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로서 일제 강점기부터 행해졌는데, 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912년 말 ‘형사 요시찰’을 규정한 내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요시찰인 명부는 대상자에 관한 인적사항과 활동사항을 상세히 기록했다.⁷⁶⁾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시찰 제도는 앞서 살펴본 국민보도연맹 사건에서 밝혀졌다.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경찰국에 치안국장 명의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이라는 비상통첩을 무선전보로 하달했다. 주요내용은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하는 것이었다. 치안국은 추신을 통해 인원과 수용관계를 고려해 ‘각 지서에서는 요시찰인 중 특히 의식계급으로써 사찰 대상이 된 자에 한하여 우선 구속하고 성명·연령·주소를 명기하여 보고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⁷⁷⁾ 경찰은 전시 중인 1951년 10월 9일(내치정서무 제24307호) ‘요시찰인명부설치에 관한 건’에 따라 요시찰인을 갑·을·병으로 구분해 비상시찰과 정기시찰로 구분·실시했다.⁷⁸⁾ 전후 ‘요시찰인시찰업무조정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국의 사찰대상자들이 감시를 받았는데 1970년 11월말 10,525명이 요시찰인으로 집계되어 있었다.

경찰이 작성한 요시찰인 카드는 관찰보호자 카드, 감시망 체계도, 요시찰인 자택 약도, 요시찰인 가옥 구조도, 재판 기록, 보안처분 대상자 신고서, 주민등록등본,公安사범조회 리스트, 신원조회 신청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⁷⁹⁾ 어떤 기록은 1975년부터

74) 민간인 사찰(요시찰) 관한 내용은 다음에서 인용·수정했고 근거자료는 그대로 표시했다. 한성훈, ‘사찰’국가의 인권침해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제100호, 429~432쪽.

75) 경찰청,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백서』, 범신사, 2007, 63쪽.

76) 일제 하 요시찰의 정의 대상, 분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고. 장신, 「일제하의 요시찰과 왜정시대인물사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제11호, 2003, 145~153쪽.

77)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7』, 2010, 391~392쪽. 제주도 성산포경찰서가 1950년 6월 25일 14시 50분 접수.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내무부 치안국에서 제주도 경찰국에 무선 전보로 보낸 문건. 이 통첩이 확인되는 것은 치안국에서 제주도경찰국에 보낸 것을 제주도경찰국에서 성산포경찰서로 재 하달한 공문을 통해서다.

78) 1950년대 요시찰인 대상과 인원 등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서중석, 앞 책, 784~785쪽). 요시찰인에 대한 등급 분류와 그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한옥신, 앞 책, 245~248쪽). ‘요시찰인시찰업무조정규정’에 명시한 갑·을·병 중에서 갑은 간첩죄로 형을 선고받았던 자와 공소보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와 국가보안법, 반공법, 군형법 제13조 15조,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반 등의 정보사범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었다.

79) 『한겨레21』, 제816호, 2010. 6. 25. 한겨레는 경찰서 ‘요시찰인카드’ 5권을 입수해 보도하였는데 각 권은 요시찰 대상자 1명당 1권씩 책자 형태로 묶여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민청원(민주청년동맹조직원)으로 부역했

1994년까지 20년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경찰 증언에 따르면 공안기록은 폐기되지 않고 전국 각 지역 경찰서에 남아 있었다. 해당 경찰서는 당사자가 살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록은 ‘요시찰인카드’ 또는 ‘부역자 카드’로 작성되었고 이후 공안사범 관리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⁸⁰⁾

경찰의 사찰 못지않게 보안사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다. 1950년 특무대 시절부터 사상범에 대해 개입해온 보안사는 경찰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민간인을 사찰해온 정보기관이다.⁸¹⁾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는 보안사가 이 업무를 맡았지만 1961년 ‘요시찰인업무조정규정’이 제정되어 중앙정보부가 요시찰인 시찰업무를 기획조정·감독했다.⁸²⁾ 1980년 5·17 직전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는 전국 보안부대 수사과장회의를 소집,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동시에 검거할 ‘예비검속자’, 사찰대상자 명단을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⁸³⁾ 1990년대 들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윤석양(洋)의 폭로로 일부가 드러났다.⁸⁴⁾ 그는 일련번호가 매겨진 사찰대상자 개인 색인표 1,303명(과업무 보고서에는 1,323명)의 동향보고서를 공개했는데, 1998년 7월 대법원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위법한 행위로 확정판결했다.⁸⁵⁾

국정원 역시 민간인 사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961년 중앙정보부가 요시찰업무를 총괄한 이후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민을 끊임없이 사찰해 왔다. 2007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정치인과 언론·노동·학원에 대한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사찰을 확인했다.⁸⁶⁾ 국가기관이 행한 사찰은 사상적인 이유를

며 백미를 주민들에게 거둬 괴뢰군에게 제공해 적을 방조한 자라는 죄목(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 자료를 보면, ‘중요 동향’ 난에는 사망일로부터 한 달 정도 뒤 ‘사망삭제’라고 기록돼 있지만 해당 경찰서에서는 이를 폐기하지 않고 따로 관리했다. ○○○ 카드 끝에는 공안사범 전산기초자료서가 부착돼 있다.

80) 이 기록은 2007년 1월 국가기록원이 30년이 지난 정부기록물 공개에서 밝혀졌다. 경찰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참고. 경찰청, 앞 책, 51~86쪽. 시찰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분기별로 담당 경찰이 감시대상자의 외출관계와 불온연동 수집, 서신·우편물, 재산변동, 서클 형성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 업무에 점수를 부여해 직원들을 평가했으며, 요시찰인 1명을 탐지할 때마다 6천 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81)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고려서적 주식회사, 1978, 36쪽.

82) 경찰은 1963년 ‘요시찰인시찰업무조정시행세칙’(내치안예규 제144호, 1963. 7. 15)에 따라 요시찰업무를 계속 취급했다(한옥신, 앞 책, 244~245쪽). 군정보기관인 CIC(특무부대)의 수사권한이 법적으로 제한된 것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된 군법회의법(군사법원법)이었다. 군사법원법 제43조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헌병과 안기부 직원 외에 “법령에 의한 보안부대에 소속하는 장교, 준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수사권을 주었고 동법 제44조에 따라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 이적죄, 군사기밀누설,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만 수사하도록 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국가보안법적용사』, 역사비평사, 1997, 525쪽.

83) 1980년 이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입안계획과 각종 검거계획(청명, 비둘기 공작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7, 25~109쪽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3권, 2007, 463~614쪽.

84) 윤석양, 나에겐 아직도 가야 할 빛이 있다-윤석양의 서빙고 80일 체험기, 《월간 말》 1990년 11월, 78~93쪽.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해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사는 1960년 이후 30년간 조직 사건과 그 관련자들의 동향 추이 등을 한 눈에 파악하고 있었는데 통혁당과 인혁당, 무림·학림·민추위·서노련·구학련 등과 전노협, 전민련 등 각종 재야 노동단체까지 정기적으로 사찰했다.

85) 대법원 판결 1998. 7. 24. 선고 96다42789.

86)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국가정보원,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정치·사법편(IV), 언론·노동편(V), 학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이지만 그 내용은 시민을 감시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해 유사시 격리하려는 정권 차원의 불법행위였다. 시민에 대한 사찰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저항세력을 제거하면서 정권의 충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왔다.

4) 공안사범자료

국민을 유사시 “적”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은 경찰에서 전산화작업을 거쳐 데이터베이스로 운용하고 있는 공안사범자료다.⁸⁷⁾ 이 자료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부터 사상범, 부역자, 보도연맹원, 월북자 등 국방경비법 위반자와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자를 감시하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것이다.⁸⁸⁾ 이는 1950년대부터 축적되기 시작해 1980년 중반까지 다양한 명칭으로 통합·분리되면서 경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요시찰인이나 민간인 사찰의 1차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의 일상적인 감시는 ‘대공바인다’ 형식으로 정리되어 일선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보존되어 왔다.⁸⁹⁾ 경찰 문건을 살펴보면 사상범을 포함한 정치적 반대자,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그 대상이었는데 가족관계와 동향, 사상 특이점 등을 낱낱이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⁹⁰⁾

각 기관별로 진행해 오던 시민에 대한 사찰은 1980년 신군부 등장으로 더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이는 그동안 각 기관이 관리하던 자료를 통합해 전자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였는데, 경찰은 1977년부터 1979년 사이에 자체적으로 일부 전산화작업을 실시했다.⁹¹⁾ 1980년 신군부의 형식적인 연좌제 폐지 방침⁹²⁾에 따라 신원기록 일제정비 기간(1980. 9. 1 ~ 9. 30)에 이들 자료는 통합되었다.⁹³⁾ 신군부는 권력이 안정기에 접어든 1981년 이전까지 개별 기관에서 관리해오던 각종 자료를 통합하는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⁹⁴⁾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를 설치해 자료관리 조정과 개선에 관한 사항, 이에 따른 관계기관간의 공조 사항과 전

원·간첩편(VI), 2007.

87) 공안사범자료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서 인용·수정했고 근거자료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한성훈, 「사찰」국가의 인권침해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제100호, 433~436쪽.

88) 경찰이 관리하던 명부는 ‘요시인명부’, ‘6·25당시 처형자 및 동연고자명부’, ‘신원기록존안대상자연명부’, ‘대공기본대장(대공바인다)’,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사실조사서’, ‘신원기록편람’과 같은 문건으로 되어 있다.

89) 청도경찰서, 『대공바인다』, 1972. 이하 경찰 자료는 다음에서 인용함.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붙임1.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경찰 자료, 252~274쪽 ;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07』, 2010, 570~582쪽.

90) 인천중부경찰서, 『요시찰인명부』, 1960.

91) 진천경찰서, 『시찰업무전산화작업』, 1979.

92) 실제 연좌제는 폐지되지 않았고 각종 신원조회에서 유지되어 왔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 논란이 되었다. 경찰에서 주로 신원조회를 할 경우 ‘신원특이자’로 분류된 이들의 가족들이 겪은 정치사회적 불이익이 연좌제이다. ‘공안사범자료가 신원조회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연좌제 폐지 직후 논란과 이후 경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박원순, 「전쟁 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제9호, 1990, 193~194쪽.

93)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청도경찰서, 『신원기록편람』, 1980 ; 대전중부경찰서, 『신원기록편람』, 1981 ; 경주경찰서, 『신원기록편람』, 1982.

94) 대통령령 제45호(제정 1981. 2. 21, 시행 1981. 6. 1). 제정 당시 공안사범은 국방경비법과 반공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범죄, 해안경비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산처리대상 관리 활용에 부수되는 사항 등을 각 기관이 모여 협의하도록 했다.⁹⁵⁾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합동으로 구축해 놓은 이 자료는 범죄 조회기록을 제외한다면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자료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⁹⁶⁾ 이 작업은 1981년 6월부터 공안자료를 일제 정비해 전산자료서를 작성한 후 치안본부 전자계산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각 기관은 1982년 1월부터 각종 조회에 활용하기 시작해 공안사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수사 활동을 개시했다. 1981년 9월 4일 대검찰청에서도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시행지침’을 시달해 공안사범자료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안사범”은 “국가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가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공안사범의 정의를 개정된 이 조항은 이전 “별표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 보다 그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더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공안사범자료관리협회, 곧 정부가 임의로 범죄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인권침해 위협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조항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공안사범으로 지정하는 법률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자까지 공안사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사상범’, ‘좌익’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을 감시·격리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공안사범자료관리에 대한 위헌적 요소는 2008년 촛불집회시위 관련자 재판과정에서 불거져 그 일부가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중에 공안사범으로 관리하던 대상자 자료를 출력해 법원에 제출했다.⁹⁷⁾ 경찰에 의해 밝혀진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의 신원정보 항목을 보면 시찰사항, 현시찰유별, 요시편입일자, 요시유별이 나타나 있었다. 이는 관계기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자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었다.

2009년 ‘공안사범’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근거가 되는 훈령을 개정했으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았다.⁹⁸⁾ 첫째, 상위 법률에 관련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훈령이 제정된 것이다. 둘째, 부칙에 해당하는 죄로 판결이 난 경우 이를 해당자에게 공안사범으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 데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기록이 정부기관에 의해 무작위 전산자료 형태로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 없다. 셋째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공안사범의 범위를 명확한 기준 없

95)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장, 교정본부 보안과장, 국가정보원 6국 1처장, 대검찰청 공안1과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장, 보안국 보안1과장, 정보통신관리관실 정보통신2담당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정보과장, 국방부 검찰단 사무처장, 국군기무사령부 3처 1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6. 11).

96)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2조 1항. “관계기관”이라 함은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소추·형집행·사후관리의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군기무사,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국방부이다.

97) 『한겨레』, 2009. 10. 12.

98)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자기정보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제출한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2009. 12. 9).

이 임의로 확대해 놓음으로써 불필요한 정보수집과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

전쟁과 분단, 독재와 권위주의의 유산으로 남은 것이 공안사범자료다.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은 정권이 원할 때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체제에 비판적인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의도이다. 독재와 권위주의체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이와 같은 국가는 근본적으로 ‘공포’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다. 이 공포의 정치체제에서 정치성원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공격적인 집단적 정서를 담는 이념”⁹⁹⁾, 반공을 수용한다.

5. 국가보안법

국가권력의 지배에서 최종심급에 존재하는 것이 법이다.¹⁰⁰⁾ 법은 국가체계를 완결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서 정치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지배체제의 가치를 담보하고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규범으로 존재한다. 법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기능을 수행하는데, 통상 형법이 갖는 의미는 체제 내적 통제와 한 국가의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준법의식을 고양하는 의미를 가진다. 북한과 관련된 범죄를 규정해온 국방경비법과 반공법, 국가보안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적대적 인식을 제도적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이 법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처럼 아무리 보편적 원칙이라 하더라도 지배체제의 주관에 배치되는 것이라면 그 구성원을 체제에서 추방하는 것을 정당하게 해주는 규칙이 된다.

법은 지배체제의 가치 지향과 관련한 이해를 국민들에게 따르도록 규정하며, 법이 갖는 권력적 속성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기구를 통해 집행된다. 베버(Max Weber)는 국민들이 지배자에 복종하는 것, 즉 공동체 구성원 자격으로서 복종하는 것은 법이며 법체계는 행정적이거나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¹⁰¹⁾ 법의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법을 따르지 않는 피지배자에 대한 강제는 그 법을 준수하는 피지배자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 원리는 법을 집행하는 정치권력이 강제성과 정당성의 양면을 가지는데, 국가의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는 국민들이자 이들이 법을 어긴 사람을 법에 따라 강제되도록 승인하는데 있다. 사회적 질서를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개인과 사회를 결합시키는 규칙이 된다.¹⁰²⁾ 법의 시민, 법에 종속된 시민, 시민이 법에 종속

99) 조현연, 『국가공안기구와 인권침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차 별책』, 2004, 207쪽.

100) 이하 법의 사회학적 관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서 인용, 수정했다. 한성훈, 「전시 북한의 반동분자 처리: 군중심판과 두문」,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제93호, 2012, 116~117쪽.

101) 이종수 편저, 『막스 베버의 학문과 사상』, 한길사, 1981, 164~169쪽.

102) 한성훈, 「전시 북한의 반동분자 처리: 군중심판과 두문」, 앞 글, 117쪽. “법을 사회현상으로 파악하고 법의 사회 내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법사회학 전통이다. 사회적 현실과 법규범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법이 사회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적 실체로서의 법이다. 이것은 규범으로서 법이 아니라 사실로서의 법을 대상으로 법과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며, 법이 기초해 있는 사회적 사실과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생활 질서로서 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중요하게 여긴다.”

될 때 법은 시민위에 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주권자로서 시민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시민 개개인은 법에 순종해야 한다. 법이 권력으로서 개인에게 집행되는 원리는 법에 대한 시민의 동의에 있다. 결국 순종과 동의는 강제에 의해, 법의 힘에 의해 뒷받침된다.

한국역사에서 ‘반공’, ‘안보’, ‘간첩’, ‘빨갱이’와 같은 기표와 담론으로 야당이나 저항세력을 합법적으로 탄압하는 도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1953년 형법 제정에 앞서 1948년 12월 1일 제정·시행에 들어간 이 특별법은 출발 당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¹⁰³⁾ 이 법은 사상의 억압체제와 분단의 법제화, 인권침해의 내재화라는 측면에서 반공의식의 결정적인 매개체였다. 예나 지금이나 “반공은 이 나라의 최고의 이념이며 최종의 지향”인 셈이다.¹⁰⁴⁾ 이 법률의 지속적인 존치는 단순히 제정 당시의 ‘시대적 영향’을 넘어 ‘실질적 효과’를 갖고 구조화된다. 이는 범죄 구성요건의 확장과 불명확한 개념의 자의적 남용을 가져오고 중형주의적 형벌관과 ‘빨갱이’라는 낙인처럼 부정적 유산을 남긴다.¹⁰⁵⁾

이 법체제가 떠받치고 있는 반공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사상과 전혀 관계없는 영역에서 도전하는 반체제, 반정부 시민을 ‘좌익’이나 ‘간첩’으로 낙인찍는다. 기존질서에 대한 도전을 한꺼번에 역전시키는 지배체제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반공이고 이를 최종심급에서 보장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적용사는 그 자체로 국가가 국민을 정치공동체에서 내치는 역사라고 할 만하다.¹⁰⁶⁾ 이는 헌법의 인권존중 가치와 충돌을 일으킨다.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국민’으로 포함시켰지만 국가보안법은 사상범이나 반대세력’의 혐의를 받은 사람을 국가 외부의 존재로 간주해왔다.¹⁰⁷⁾ 국가보안법이 사상탄압법으로서 갖는 성격은 좌익세력의 구체적인 범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말살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제정 당시에는 그들이 주된 대상이었겠지만 실체는 반정부적 정치·사회단체가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어왔다.¹⁰⁸⁾

국가의 성격과도 관련된 위와 같은 체제에서 남한의 ‘국가이성’(raison d'état)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전략적 이해에 일치하는 강력한 반공주의적 자본주의사회 건설이었다.¹⁰⁹⁾ 한국 상황에서 국가는 남북한 간의 상호관계적 역동성(interface dynamic)이라는 조건하에 만들어졌다. 두 개의 국가가 긴장과 대결 관계에 있을 때 정치공동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한다. 나아가 남북한과 미국의 3자 관계에서

103) 오제도는 이 법의 입법정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가를 불법히 전복 파괴하려고 기획하는 여하한 주의사상운동을 불문하고 그 단속의 대상이 된다. 예지하면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자본가독재주의 등 운동은 물론이고 더구나 이복괴뢰집단인 인민공화국 지지추진운동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 국헌에 저촉되어 그 적용을 불면할 것이다.” 오제도, 『국가보안법실무제요』, 남광문화사, 1949, 26쪽.

104)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1: 국가보안법변천사(증보판)』, 역사비평사, 1997, 32~37; 47쪽.

105) 박원순,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사, 1996, 106쪽.

106)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국가보안법적용사』, 역사비평사, 1997.

107) 국가보안법 등 ‘폭력적 법’과 ‘폭력의 법제화 성격’에 대한 연구는 다음 참고. 김동춘, 앞 글, 344~356쪽.

108)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1: 국가보안법변천사(증보판)』, 앞 책, 95쪽.

109)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147쪽. ‘국가이성’은 다른 모든 사회적 요구와 이익에 대해 우월성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없이는 새롭게 창출된 정치적 실체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방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한국전쟁이 한국의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는 변수였다.

또 하나 중요한 의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미국에 반하는 정책, 미국에 비판적인 모든 것을 북한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냉전 논리에 있다.

이와 같은 정치체제 형성을 고려하면 우리는 외부의 압력이 내부의 응집을 강화할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반체제 운동과 같은 사회내부의 문제를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외화함으로써 내부 모순을 은폐하고 이것을 개혁하려는 세력의 입장을 분쇄하는데 국가보안법은 가장 효과적이다. 지배세력의 의도한 전략뿐만 아니라 반공의식을 통해 시민들의 사유체계에 들어선 자기 검열과 감시의 일상화는 국가보안법의 끈질긴 생명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을 적용시켜온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재판이나 사법살인은 국가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 통상적인 공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저지르게 된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고, ...국가에 의하여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실시된 사건에서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대량으로 저지르게 된 특수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이 소수의견은 “불법행위의 특수성”을 범죄 개념으로 정의한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위법행위를 특수한 범죄로 규정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적대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시 대량학살과 ‘용공분자’ 처리와 같은 임의 검속, 고문 간첩조작, 사법살인(정치재판), 민간인 사찰 등도 국가범죄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범죄는 “계획적”이며 “대량”으로 발생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된다.¹¹⁰⁾ 그러나 이것이 범죄의 필수요건은 아니며 그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해도 1차 범죄 이후 진실규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저지하는 제2, 제3의 행위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의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수사, 기소, 재판 관행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6. 추방당한 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누군가를 ‘종북’이라고 호명하는 순간, 이성과 철학이 합리적으로 발현될 여지는 거의 없다. 이는 갈등과 이해관계를 비폭력 상태에서 조정하는 민주주의 파괴와 호명된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름은 단순히 “그들”에 대한 비난과 위협, 협박일 뿐만 아니라 정치공동체의 다른 주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정치선동인 셈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언론 등에서 벌이고 있는 ‘종북’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이데올로기 공세일 뿐만 아니라, 의미와 가치로 이뤄진 현실의 감각이며 정권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마치 북한과 같은 절대악

110) 이 정의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1996. 12. 19)에서 반대의견으로 제출된 개념에서 따온 것이다. 국가범죄는 인권범죄나 국제법상의 범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 다양한 개념으로 쓰인다. 이재승, 앞 책, 17~24쪽.

으로 확산시키는 지배와 종속이 프레임이다. 이것은 지배가 제도와 전통,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강요된 사상과 신념으로 작동하는 것이자 ‘자발적인 동의를 강요’하는 정치·문화과정에 다름 아니다.¹¹¹⁾

근대국가의 공동체 구성원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정치공동체 성원을 규정하는 근대국가의 정치·사회적 과정은 주권형성과 국가권력의 지배와 독점을 둘러싼 노정이기도 하다. 이 공동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보편적으로 국가 건설 과정 초기에 발생하는 정치 현상이다. “그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규정은 특정한 집단으로 범주화된 사람들을 ‘타자’ 또는 ‘우리안의 적’, ‘이질적인 존재’로서 공동체 성원을 구별하는 과정이다. 공동체 성원이 일정한 범주를 가진 뒤에도 시간이 흐르면 사회세력 간에는 가치와 자원을 두고 지속적인 긴장이 발생한다. 이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공동체는 자신과 다르다고 여기는 시민을 공동체 성원으로부터 추방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근대국가의 주권형성과 구성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근대성’의 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의 다른 이름은 ‘피해대중’이었다. 조봉암은 이들을 해방후 압박과 수탈에 학대받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극우반공세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로 칭했다.¹¹²⁾ 국가와 희생자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공동체 성원으로서 자격과 권리의 주체 문제이다.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바로 “호모사케르(homo sacer)’처럼 시민의 자격을 박탈당한 채 법의 영역에서 추방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에 있다. 전쟁을 거치며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성역’에 갇힌 보도연맹원과 피학살자들은 “정초적() 폭력”의 “원초적 희생물”이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원죄’이자 법의 궁극적인 근원의 문제”였다.¹¹³⁾ 국가는 대한민국 형성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성역’에서 다시 불러내 이들에게 빼앗긴 권리를 되돌려주고 법공동체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합법적인 폭력의 정초는 근대국가 형성기 법의 지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는데, 중

111) ‘자발적 동의’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헤게모니를 “단순히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로 이뤄진 살아있는 체계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움직이기 어려운 것을 넘어선 현실 감각이며 내면화되어 남아있는 지배와 종속”이라고 분석했다. Williams, Raymond,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p. 108~115.

112) 서중석, 앞 책, 531~533쪽. ‘피해대중’, 이 용어는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후보가 내세운 두 가지 주요 구호인 “평화통일”과 “피해대중은 단결하라”는 슬로건에서 비롯되었다. 가장 폭넓게 이 용어를 본다면 피압박 민중이나 피압박 민족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113) 조용환, 역사의 희생자들과 법: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문제, 법학평론편집위원회, 《법학평론》 창간호, 서울대학교출판원, 2010. 9. 11쪽. 이 논문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거창사건과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통해 공소시효 배제를 검토하는데 유사사건의 대법원 관례와 유족들의 권리행사 시기, 사건 발생 이후의 국가탄압,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불이행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법 원칙과 이것이 갖는 국내법 의미, 특히 시간의 흐름과 소멸시효의 관계를 탁월하게 다룬 글이다.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인 2011년 6월 30일 대법원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국민을 보호할 국가 의무의 부담과 신의원칙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손해배상) [공2011하,1515]]. 대법원 판결이후 이와 유사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사건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이끌어 낸 이 논문은 한국 현대사의 전환을 가져온 기념비적인 글이다.

요한 것은 법과 폭력의 분리 가능성에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주권자는 법이 폭력으로 이행하고 폭력이 법으로 이행하는 경계, 폭력과 법 사이의 비식별 지점에 있다고 간과했다.¹¹⁴⁾ 그는 법과 폭력의 결합을 통해 이것들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 위험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데리다 역시 이와 동일하게 법은 그 기원과 목적, 그 정초와 보존에서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이든 재현적이든 폭력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¹¹⁵⁾

일반적으로 근대국가는 ‘법의 지배’를 사회구성원의 계약과 동의를 전제로 통치와 정당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 형식 속에서 법은 폭력행사를 정당화하며 폭력의 뒷받침을 전제로 하는 “폭력적 법’의 성격”을 갖는다.¹¹⁶⁾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은 다양한 폭력을 행사하고, 무엇보다도 법을 권력자의 의지대로 적용한다. 발리바르는 폭력에서 권력으로 그리고 권력에서 폭력으로 상호 전환하는 요소를 법과 안보, 교육이라고 제시했다.¹¹⁷⁾ 국가폭력은 법 질서의 다른 이름이자 국가교육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안보를 근원으로 구성되는 제도적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state)는 영토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진 대외적 주권으로서 제도화를 통해 조직화된 물리적 수단의 독점권을 행사하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공적 제도와 관료기구를 가지며 이데올로기 차원의 규범적인 질서, 즉 사회적 의식과 귀속의식이라는 감정과 정서를 강화하는 상징을 창출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는 정부(government)와 정치체제 또는 정권(regime)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안보·질서·복지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국가의 기능적 측면과 연관 지어서 일컫는다. 정권(정치체제)은 정부의 직위에 접근하는 경로와 형태, 그 과정에서 배제되고 허용되는 행위자들의 특성, 그리고 이러한 직위에 접근하는 데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전략을 규정하는 유형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¹¹⁸⁾

18세기 근대 계몽주의 출현 이후 보편화된 인권과 민주주의,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를 이끌었던 정치지도자와 정책, 인권탄압을 비판할 수 있다.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반정부가 반체제이거나 반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부에 대한 비판을 국가를 부정하는 것처럼 의제화해 공격하려는 시도는 한국의 국가 성격과 지향을 오히려 축소하는 자기모순적인 것이다.¹¹⁹⁾ 다시 말해 이는 앞서 제시한 보편적 가치를 내걸고 출발한 국가의 비전과 전망을 줄이고 시민의 주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기회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간첩조작과 의문사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등, 포괄적인 인권침해 사건은 민주정부 10년의 제도정치와 타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반체

114) 조르조 아감벤/박진우 옮김, 『호모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86쪽.

115) 자크 데리다 지음/진태원 옮김, 위 책, 108쪽.

116) 김동춘, 앞 글, 338~339쪽.

117) 에티엔 발리바르 지음/최원·서관모 옮김, 앞 책, 499쪽.

118)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144~145쪽.

119) 박명림,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이해: 제주4·3과 한국현대사』, 역사문제연구소 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439쪽.

제 성격을 띠지 않는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면이 조금씩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조작한 ‘간첩’, ‘빨갱이’, ‘용공분자’ 등은 북한이라는 상대를 정치 내부에 끌어들이어 “그들”을 “적”으로 둔갑시키는 지배전략이었다.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정치재판, 의문사건 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반공규율사회에 균열을 가져오고 도전하는 것으로서, 분단정체성(separate identity)을 극복하기 위한 급진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7. 맺음글: 분단정체성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분단인식을 고려하면, 보수적인 사회풍토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는 혁신세력은 지배체제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북한과의 어떤 커넥션,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혁명과 반혁명의 시대를 지나온 굴곡의 현대사에서 남북한 분단구조의 상대적 특성이 내재한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분단정체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다.¹²⁰⁾ 이런 의미에서 ‘종북’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생각해 볼 점을 몇 가지 제시해 보자.

첫째, 기표가 되는 말과 언어는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표상한다. ‘종북’이라는 용어는 이미 기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편에 대한 증오와 선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이 기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둘째, 국방부의 “국방정신교육원” 부활과 정훈교육, 경찰 등 다른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정치(정신)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국회의 기능 강화와 올해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중점으로 다룰 수 있도록 요청한다. 정치교육의 헌법 위반 가능성과 인권침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권력에 대한 시민의 주권성은 ‘민의 자기통치’(self-rule of the people)라고 하는 근대 민주적 원리의 이상을 지향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종북’이라는 하나의 논리로 다양한 논의를 일체화시킨다면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 개인의 갈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일한 논리는 결국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북한의 집단주의와 크게 다른 것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이 보편적인 민주주의 없이 사회주의를 지향한 지난 60여년은 분단상황의 과잉과 퇴행적 정치행태 속에서 배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7년 이후 지속적인 민주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 10년을 끝으로 한국의 냉전 자본주의, 반공자유주의 체제는 정치시민사회에서 더욱 공고해져가고 있다. 이 체제 내에서 서로 다른 이해 간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전장이 정치문화 투쟁이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반공주의 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제도만

120) 한성훈, 앞 책, 473~476쪽.

이 아니며 어떤 논리적·선형적 제약이 없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가장 알맞은 정치·경제·사상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지, 제도 그 자체는 아니다.

반공주의는 오직 공산주의에 관한 모든 것을 부정한다. 북한과 연관된 것은 근본적인 죄악으로 취급해온 이 논리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민주사회는 다양한 세력들의 각축장이고 이 공간에서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자발적 결사와 정치사회를 통해서 이를 실현한다. 이 정치과정을 국가는 입헌주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이 추구하는 사상의 주권은 제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공주의는 ‘전체주의’ 또는 ‘참주정’의 위협을 항상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근대국가에서 정치공동체 성원은 그 국가의 성격, 정치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질적 차이가 변해왔다. 시민의 권리는 공동체의 성원이 될 권리(membership)인데 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민주적 정치참여를 의미한다. 이 주체는 국가와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상의 주체이다. 국가권력과 개인의 긴장관계와 갈등, 이것이 사상논쟁이라 하더라도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재되어야 마땅하다. 주권의 제약과 이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결사의 공간이 협소해지기 시작하면 개인의 사회적 이해는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면 사회는 내적통합을 유지하고 그 정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집단주의로 변이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공안기구 권력강화와 중복담론, 그리고 안전담론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Ⅰ. 서론

‘중복’이라는 개념은 2001년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사이의 통합 논쟁 때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에 중복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경부터이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당원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중복 논쟁이 불거졌다. 조승수, 노회찬 전 의원, 심상정 의원(현 진보정의당) 등은 자주과 일부를 ‘중복’이라고 비판했고 이런 흐름은 진보신당 창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2012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출신 의원들이 재결합한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 사태가 터지면서부터, 보수언론들이 통합진보당 당권파를 중복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다시 중복 담론이 회자됐다. 본래 진보진영 내부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중복’이라는 언어는 이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등이 진보 정치세력 전반을 공격하는 ‘담론무기’로 확장되었다.

처음에 중복이란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금은 중복이라는 개념의 외연은 극단적으로 확장되어, 예를 들어 변희재는 “가장 극단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인간의 질이 낮은 사람’까지를 말할 수도 있다.”¹²¹⁾는 식으로 중복개념의 확장을 시도한다.

이 글은 국정원이나 경찰, 군 등 국가권력기관이 어떻게 중복 담론을 이용하여 공안 정국몰이에 나서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의 중복 담론은 과거 ‘빨갱이’로 대변되었던 공안정국의 연장선에 있지만, 현재의 중복 담론이 위치지워지는 맥락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것 같다. 무엇보다 현재의 중복 담론은 공안기구나 보수 정치세력에 의해서만 생산되고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으로 표상되는 대중들의 정서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차이가 있어 보인다.

Ⅱ. 국가권력기관의 중복 활용 - 양태들

1. 경찰 - 중복 감시부대

121) [단독]변희재 “넌시랭은 중복세력에 속하지 않아” 고발뉴스 2013.3.6.

○ 중복=안보위해세력=중복좌파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판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한미연합훈련 저지, 남북대화 재개 촉구, 반값등록금투쟁, 희망버스 투쟁, 해군기지건설반대 투쟁, 4대강 사업반대투쟁)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음. 앞선 주장을 하는 세력은 범죄자로 수사 대상자, 내사자로 지목해 일상적인 사찰과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최근 국방부 장관 소포, 어나너머스 등).

○ 특히 경찰은 안보위해세력들이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유언비어 배포, 교란을 위한 댓글달기)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경찰은 안보위해세력이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으로 △홈페이지 개설하고 사이버 투쟁을 전담하는 사이버팀 활동 강화 △기존 포털망이나 친북인터넷망 활용(친북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내려받은 후 국내 운동권 사이트에 선전자료 게재, 사이버테러 전개, 북과 쌍방향 정보 교신) △진보네트워크와 같이 아예 자체 인터넷포털망을 구축<6.15인터넷방송><민중의 소리>등 인터넷방송 운영 △온라인을 통한 의식화, 조직화 확대를 위해 국내 주요 포털망 내 대형카페 동호회원 게시판 장악 위해 ‘소울드레서’ 방식의 사이버 적색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함.

○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검거실적은 아래와 같음.

<표1: 안보위해세력 검거 현황> - [출처: 치안전망2012/2013]

| 연도 | | 07 | 08 | 09 | 10 | 11.11월 |
|------------|-----------------|--------|--------|--------|---------|---------|
| 계(구속) | | 39(12) | 40(11) | 70(15) | 151(21) | 132(11) |
| 국 가 보안법 | 간첩 | 1 | 2 | 2 | 1 | 2 |
| | 목적수행 반국가단체구성 | | | 1 | | 2 |
| | 이적단체구성 가 입 | 16 | 20 | 18 | 40 | 27 |
| | 찬양고무/선전선 동 | 19 | 11 | 44 | 82 | 89 |
| | 잠입 탈출 | | 3 | | 8 | 4 |
| | 편의제공 | | | | 3 | |
| | 회합통신 | 3 | 4 | 5 | 17 | 8 |

○ 특히 경찰은 인터넷 공간에서 북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간을 폐쇄하는 등 양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표2: 사이버 보안활동 실적> - [출처: 치안전망2012/2013]

| 연도별 | 사 범 처 리 | 친북사이트 | | 트 위 터 등 계정차 단 | 불 법 문 건 삭제 | 불 법 카 페 등 폐 쇄 |
|------|------------|-------|----|---------------------|---------------|---------------------|
| | | 발견 | 차단 | | | |
| 2005 | 2 | 8 | 4 | | 1,238 | 3 |
| 2006 | 3 | 12 | 6 | | 1,388 | 1 |

| | | | | | | |
|---------|----|----|----|-----|--------|-----|
| 2007 | 5 | 9 | 1 | | 1,434 | 3 |
| 2008 | 5 | 9 | | | 1,793 | 2 |
| 2009 | 32 | 10 | 6 | | 14,430 | 18 |
| 2010 | 82 | 16 | 16 | 33 | 80,449 | 85 |
| 2011.11 | 61 | 19 | 24 | 187 | 77,617 | 222 |

경찰이 최근 5년간 친북·중북으로 분류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한 국내 웹사이트 게시물이 19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국내 사이트에 친북·중북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총 297명을 사법처리했다. 15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실에 따르면 경찰청의 ‘친북·중북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권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북한이나 김정일 일가 등을 찬양하는 친북·중북 성향 국내 웹사이트 게시물은 총 18만 863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793건, 2009년 1만4430건, 2010년 8만449건, 2011년 7만9038건, 지난해 2012년은 1만2921건 등이었다. <조선일보> 2013-4-15

○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감시, 통제를 위해 경찰은 보안경찰의 영향력(인력이나 안보 역량 강화) 확대를 주장하고 있음. 특히 경찰은 사이버상에서 안보위해세력들이 활동하고 있기에 안보영역의 치안수용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보안경찰의 안보대응력 강화를 요구하여 최우선으로 인력정상화를 주장하고 있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1998년 4천명이던 보안경찰이 2008년 2월 2천명으로 감소했고, 2012년 현재 1천9백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찰은 보안경찰에 대한 인력축소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2. 국정원 - 여론전의 전위부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2012년 12월 11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달기가 폭로되면서 시작되었다. 대선 사흘 전인 12월 17일에 경찰은 부랴부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김씨 아이디어와 닉네임 40개를 발견했지만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은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지만, 이러한 수사결과가 얼마나 엉터리이며 조작된 것인지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상 정치관여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의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분명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있다.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새누리당과 보수 정치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은밀하고도 광범위하게 여론조작을 시도하였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국민들의 정치적 여론의 장에 직접 개입하여 여론조작을 자행한 것

으로 과거에 없던 초유의 사태이다. 몇몇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나 정치적 탄압을 시도했던 과거의 정치개입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번 사태는 과거 정보기관이 저지른 수많은 정치공작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유린 범죄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짧은 층 우군화 전략’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 진영의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낙인찍고, 2010년 경부터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통해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종래의 심리정보단을 2011년에 확대개편하여 심리정보국을 만들었다. 심리정보국은 마녀사냥식 종북프레임으로 무장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압하고 왜곡하기 위한 프로젝트 실행조직이다.

지난 연말 국정원 직원의 댓글달기가 세상에 폭로되었을 때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선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오늘의 유머’(오유)에 올라온 종북 성향 글과 IP분석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내 업무는 국정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북성향 사이트 감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북의 선동 및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하여 올린 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천안함 폭침, 4대강 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정간첩 및 종북 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회의 국정조사에 출석해서도 동일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국민을 상대로 한 댓글달기는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국정원법은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활동이라는 국정원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게다가 국정원이 직원을 동원하여 댓글달기로 대북심리전을 펼쳤다는 사이트는 ‘오늘의 유머’ 등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속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간이다. 결국 국정원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대북심리전을 펼쳤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들을 심리조작의 대상, 더 나아가서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섬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공작은 민주주의를 원천 부정하는 것이기에 지극히 위험하다. 또한 국정원이 심리공작의 대상으로 삼은 국민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 등 집권정치세력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의 글에 몰래 숨어 댓글을 다는 것이 ‘대북’심리전이라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시민을 종북세력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숨어있다. 우리 사회의 진보 진영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무조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매도하는 일을 국정원이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에 국정원은 상당히 치밀한 계획 하에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IP갈아타기, Smart Sn 등 VPN서비스를 통한 IP 세탁, 복수 아이디 활용 등의 수법을 교묘히 활용하였고,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이 집중적

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직원들 상호 간에도, 작전을 수행하듯이 철저한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한다. 주요 포스트 역할을 담당하는 일부 직원은 인터넷과 SNS에서 정치개입 글을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역할을 하였고, 다른 직원들은 이를 집중적으로 퍼나르는(포스팅하거나 리트윗)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제압문건,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은 이명박 정권에서 일상적인 업무였다.

국정원은 보수적 지배권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세력을 종북이라 규정짓고, 인터넷상에서 이들의 활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하였다. 이를 ‘대북심리전’이라고 미화하면서, 국내 정치개입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른바 대북심리전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넘어 시민사회의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 여론조작을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3. 국방부 - 종북교육부대

○ 국방부의 장병교육지침인 「종북세력 표준교안」은 소위 “종북세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종북세력 =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면서 북한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
- 국가정체성 부인
- 사회혼란을 통한 공권력 무력화 시도
- 배후에서 시위의 기획과 선동을 주도
- 북한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

○ 그러면서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설명되고 있음.

- 종북세력의 활동 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를 추구하기 때문
-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 추구 등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
- 북한에 밀입북하여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적행위를 하기 때문

○ 표준교안의 내용은 송나라 멸망, 남베트남 멸망 등의 외국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시각이 지극히 편협한 이분법적 냉전논리에 입각하고 있음.

- 사회주의 국가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사고
- 냉전시대의 낡은 이분법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외국 사례 설명

○ 사실의 왜곡도 보임.

- 6.25 전쟁기의 상황에 대하여 남로당의 사회혼란 조성, 무장폭동 야기 등이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면서 제주4.3사건, 거창.순창.함양의 민간인학살사건 등

을 북한과 결탁한 남로당 세력의 무장봉기로 규정하여 민간인 학살사건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음.

- 간첩단 사건으로 “왕재산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왕재산이라는 지하당 구축하고 인천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무장폭동을 획책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왕재산 사건의 재판에서 반국가단체구성죄는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중임. 표준교안은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것을 마치 사실인양 소개함으로써 왕재산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있음.

○ 종북교육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이데올로기 사상교육임. 남한과 북한의 정치체제를 이분법적 적대관계로 바라보고,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냉전시대의 세계관을 장병들에게 주입하고 있음.

○ 국방부가 냉전적 세계관이 입각하여 지극히 정치적 편향을 가진 사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대한민국 남성의 대부분은 20대 청년 시절에 군대를 다녀온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종북교육은 단지 군대내의 교육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에서 그 교육의 성격을 바라보아야 함.

○ 표준교안에 의하면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용어혼란전술과 사회혼란을 통한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의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그러한 주장이 북한의 대남전략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종북세력이라고 규정짓고 있음.

○ 이에 따라 표준교안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의 폐지, 연방제 통일 주장 = 종북세력 = 북한

⇒ 따라서 “종북세력은 군대의 적”

이라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음

○ 이는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국내 진보적 정치세력과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임.

-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1990년대 이래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음.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음.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다 민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종북교육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예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음.

-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의 의견도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

○ 종북교육의 내용은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인가 여부에 따라 종북세력, 즉 적으로 규정하는 냉전적 논리에 입각하고 있음. 이는 사상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헌법의 기본권보장의 정신을 훼손하고, 이분법적 적대논리에 따라 남한 사회에서 진보적 사상을

지향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결국 국민의 사상적 다양성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이는 심각한 헌법유린으로 귀결됨.

III. 맥락과 배경

1. 건재한 국가보안법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간첩(조작)사건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국가보안법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중복 이데올로기’이다. 국가보안법은 제7조를 중심으로 하여 담론적 통제기체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주된 작동 메카니즘은 중복담론에 기반한 담론통제의 영역에 존재한다.

1) 국가보안법 제7조의 활성화

이명박 정부에 들어 국가보안법 사건이 급증하였음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6건이 입건되었지만 2009년 57건, 2010년 97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에는 7월까지 41건이 입건되었다고 한다. 입건은 증가한 반면에, 기소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0년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97건 중 43건만이 기소되어 44%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3년간 입건되거나 기소된 국가보안법 사건의 내용을 보면, 제7조(찬양고무, 이적표현물등)를 적용한 사건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는 찬양고무죄 사건이 33%(15건/46건)였지만, 2009년에는 40%(23건/57건), 2010년에는 64%(62건/97건)으로 급증하더니, 2011년에는 7월까지 85%(35건/41건)의 사건이 제7조 사건이다.

제7조의 찬양 고무나 이적표현물죄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견이나 사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모든 구성요건이 그러하듯이, 제7조도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라는 법익에 비추어 보면, 전형적인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¹²²⁾에 따라 제7조는 1991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요건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¹²³⁾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에는 ‘명백성’의 요건만 반영되어

122) 헌재 1990.4.2. 89헌가113 결정.

123) 대법원 2008.4.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있을 뿐이며, ‘현존성’ 요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는 ‘명백한 위험성’이라는 요건 자체도 단순히 북한의 주장이나 활동에 동조하는 의견이나 표현이기만 하면 충족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백성 요건조차도 실제로는 남용을 제어하지 못한다.¹²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정책이나 선전에 동조하는 글을 쓰면 찬양고무죄가 되고, 그러한 내용의 문건을 만들거나 소지하고 있으면 이적표현물죄에 해당되어 경찰이나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이나 표현이 있으면 일단 제7조 위반으로 통제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다. 중복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위축, 그리고 수사권력의 남용은 이렇게 시작되며, 바로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2)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규제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상에 친북계시글을 게재하거나 퍼나른 행위가 문제된 경우였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찰은 사방사 사이트에 글을 올린 100여명의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있다. 거기에 게재된 글들이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 등 공안기관들은 글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물을 규제하고 수사한다.

수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찰은 사이버상의 표현물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찰과 통제의 권한도 행사하고 있다. 2010년에 경찰이 친북계시글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상의 해당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한 건수는 무려 8만449건이었다. 2011년 10월까지의 삭제요청 건수도 6만7269건에 이른다. 2008년에 1,793건의 삭제요청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사이버 사찰이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삭제요청을 거의 100% 받아들여 삭제명령을 한다.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청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사이트 운영자의 입장에서 정부기관의 삭제요청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삭제요청의 수용율은 99.4%(2010년 12월까지의 통계)에 이른다.

3) 효과 - 시민성의 말살, 민주주의의 파괴

위와 같은 메카니즘으로 전개되는 사이버사찰과 통제는 저장도탄압이라고 말할 수

124) 이호중,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편저, 「국가보안법 보고서 2011」, 2012.9., 64면.

도 있겠지만, 확실히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사회통제 수단으로 부활하는 맥락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요건은 국가보안법을 관통하는 요건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 반국가단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북한이 주장·표방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요건은 거의 자동적으로 충족된다는 식의 법담론이 공안당국과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 SNS 환경에서 - 더 나아가서 인터넷 환경에서 - 이와 같은 법담론으로 인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① 첫째는 위축효과의 문제이다. 위축효과란 합법적인 표현 내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통제에 순응하여 그러한 행위를 회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은 사실상 북한의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표현에 대해서는 ‘위법한 범죄행위’라고 추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일부 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예외에 속한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이나 표현이 있으면 일단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해 버리는 형태가 반복되어도 마땅히 제어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법원과 공안당국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¹²⁵⁾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사이버공간에서 북한 관련 글을 올리거나 북한의 주장을 소개하는 행위는 북한의 교시에 따른 행위가 되어 버린다.¹²⁶⁾

② 둘째, 위축효과는 더 나아가서 시민의 자기검열의 일상화한다. 이는 ‘표현하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의 위축효과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온라인과 SNS에 대한 국가권력의 사찰과 통제는 시민성에 관한 적극적인 이데올로기효과를 창출한다. 북한의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심지어 소개만 해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게 된다. 이것은 엄청난 교육효과를 발휘한다. 남북한 사이의 적대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편협한 시민성이 남한 사회의 의사소통 공간을 점령해 버린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임은 자명하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등장한 ‘안보 카페’는 이러한 현상을 잘 대변해 준다.

2. 중복이라는 담론의 상징성과 확산

125) 박정근씨 공소장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

126) 윤지혜, “국가보안법 63년 토론문”, 국가보안법 토론회(2011.12.7.) 자료집, 53면.

1) '종북' 담론의 부정적 상징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종북은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상징이 되었다.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를 넘어서서 종북은 보수정치권력에 대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비판을 싸잡아 배제하는 담론 언어로 구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종북'이라는 개념은 과거 한국 사회의 매카시즘 언어인 '좌파', '빨갱이', '친북' 등과 확실히 다른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역사성의 제거이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 내지 사회주의 운동은 멀리는 항일독립운동, 가까이는 독재정권에 대한 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역동적인 정치세력의 한 축을 구성하면서 발전해 왔다. 군사독재 시절 저항세력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강력하게 탄압하였을 때 그것은 민주화운동 내지 정치적 사상투쟁의 맥락을 잃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렇지만, 현재 횡행하고 있는 종북이데올로기는 진보적 정치운동에 대하여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따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표상하게 함으로써 진보적 사회운동의 역사성을 제거해 버린다. 둘째는 시민적 주체성의 제거이다. 종북은 사회주의 운동, 진보적 정치운동에 대하여 '북의 지령에 의해' 내지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 집단으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수동성의 이미지는 진보적 정체세력의 정치적 시민적 주체성을 부정하는 담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북의 지령에 따라 사회전복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집단"으로 표상하게 한다.

2) 남북관계의 특수성 → 종북담론의 인종주의적 확산

①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종북 매카시즘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와 그로 인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악용한 보수 정치 세력의 '종북의 악마화' 담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법을 악용한 공안 당국의 칼날)의 삼각 구도가 만들어 낸 것"¹²⁷⁾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종북 매카시즘은 이러한 북한에 대한 금기와 혐오 속에서 더욱 만들어진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며 폐쇄적인 나라인 북한은 극심한 기근까지 겪으며 소통 불가능한 이질적인 것이 되었다. '정상적인' 한국 사회와 섞일 수 없는 북한을 '비정상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적대시하고 격리하며 혐오하는 일은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자유로운 정보가 남북 정부에 의해 차단된 상태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여기에 보수 정권의 집권으로 민간 교류마저 중단된 상태는 이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런데 오늘날 종북담론은 냉전시대 남북간의 체제경쟁이나 정치세력의 담론투쟁의

127) 명숙, [인권오름] '종북 마녀사냥' 광풍,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2013.4.11.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1105424§ion=03

맥락에서 다소간 비껴나 있다는 느낌이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종북담론은 대중의 자발적 정서에 기반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양상은 여성, 이주민, 동성애자, 전라도사람 등에 대한 극심한 모욕과 폭력적 언사로 점철되어 있으며, 종북 이데올로기는 이런 측면에서 ‘인종주의적 배제의 담론’과 결합되어 확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북 이데올로기의 인종주의적 확산은 두가지 상반된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종북이라는 사상적 이유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증오의 기류를 통합해 버리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그룹들 간의 저항적 연대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는 종북이 아니야’라는 종북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연대의 동력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북담론이 다양한 집단을 공격한 언어로 확장되는 순간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대중적 파급력은 약화될 수 있다.

② 위와 같은 종북담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종북이데올로기의 원천이 반공주의에 있다는 점은 잃지 말아야 할 지점이다. 종북담론을 퍼뜨리는 보수세력의 입장에서도 반공주의의 희석이 정치적으로 유요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군에서의 종북교육은 철저하게 반공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 세대의 군장병들에게 종북교육은 역사인식과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진보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종북교육은 군대가 동원되어야 할 지경의 정치상황이 초래되는 순간 사사검증의 예비검속을 가능하게 하고, 진보적 정치진영을 ‘섬멸’의 대상으로 사정하게 만드는 준비작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3. 신자유주의 지배권력의 위기관리와 안전담론의 맥락에서

종북이데올로기는 이처럼 남북관계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과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작동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종북낙인찍기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정치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지배권력의 통치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금융화와 정보화, 자동화에 따른 자본축적체제의 변화는 노동의 유연화전략을 추구하였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만성적인 실업자가 양산되고 비정규직 제도에 의하여 노동의 대한 과잉착취가 일상화된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이 해체되고 공공영역이 민영화되면서 삶의 불안정성이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의 심화, 만성적인 고용 불안, 개인 간의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시스템 등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된다.¹²⁸⁾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시장의 구조적 폭력에 무기력

하게 노출된 나약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주변의 불안정성요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정치권력과 언론은 특정 집단을 시민사회의 적으로 표상하게 하는 정치수요를 창출해낸다. 이것은 오늘날 “안전”담론이 확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적’의 표상은 특정 집단을 겨냥하면서 사회적 정치환경에 따라 유동할 수도 있다. 서구사회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정치에 동원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종북은 ‘적’을 표상함으로써 사회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대중동원의 담론이다.

1) 실존으로부터 분리된 공포와 불안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2006년 『Liquid Fear 유동하는 공포』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의 강박적인 안전민감증은 불안과 공포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결합하여 새로운 욕망으로 변환된다고 분석한다.¹²⁹⁾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악행과 범죄를 실존적 불안의 원천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는데,¹³⁰⁾ 이것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의 일탈에 개인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반면에 개인의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국가나 공동체 차원의 복지정책이 급격히 축소 내지 쇠퇴한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진짜 실존적 불안의 원천은 따로 있지만, 그 원천을 해소할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개인 안전¹³¹⁾의 영역에서 통제력을 확보하는데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는 미칠 수 있다고 믿거나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된 대상에만 집중”¹³²⁾하게 된다. 테러범, 그리고 연쇄살인범이나 성폭력범죄자 등 흉악범죄자는 그 대표적인 표적이 된다. 사실 자본의 유동성은 이미 개별 국가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고, 냉정하게 말해서 국가는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규제가 없어진 시장과 부정적 세계화가 야기하는 시민들의 실존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안전은 일차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몫이 되었다. 바우만은 안전에 대한 현대사회의 집착은 우선적으로 -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 “악운”(fate)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경주된다는 의미라고 말한다.¹³³⁾ 그가 말하는 악운이란 ‘예측가능하고 회피가능한 적에게서 비롯되는 예측불가능하고 예방불가능한 불운’이다.¹³⁴⁾ 이에 따라 호신술, CCTV 등 개인의 안전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상품화되는 현상과 더불어,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정치권력의 가장 중요한 세일즈 품목

128) Wacquant, Loic, 류재화 옮김, 가난을 엄벌하다(참언론 시사인북, 2010), 188-191쪽.

129) 지그문트 바우만(함규진 옮김),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09, 214면 이하.

130) 지그문트 바우만(함규진 옮김), 앞의 책, 217면.

131) 바우만은 영어의 안전(safety)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안보(security)에서 개인적인 신체적, 물질적 안보를 특별히 집어낸 의미라고 말한다. 위의 책, 226면.

132)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233면.

133)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226면.

134)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219면.

이 되었다. “약화된 국가는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이상을 감당할 수 없다.”¹³⁵⁾ 과거와 같은 시민사회의 컨센서스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권력의 정치적 정당성은 개인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해소해 주는 완충장치인 복지정책이 쇠퇴하면서, 안전의 문제는 소아성욕자라든가 연쇄살인범, 거지와 부랑자, 불량식품판매자, 스토키, 테러리스트 등이 주는 위협으로 표적을 이동한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시스템은 사회구성원 중 가장 소외된 사회계층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시민사회의 연대와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개인의 안전에 매몰된 ‘형벌국가(penal state)’는 자신감과 신뢰의 정반대편에 있는 공포와 불확실성을 자본으로 하여 팽창한다는 것이 바우만의 진단이다. 바우만은 세계화로 인하여 야기된 공포와 불안을 재구성하여 지역적 안전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글로벌 특권집단과 거대 자본에게는 가장 효과적이고 잘못될 염려가 없는 전략이라고 강조한다.¹³⁶⁾ 그것은 실존적 불안의 진정한 원천에서 눈길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항하는 사회적 저항을 무력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³⁷⁾

2) 중복‘담론과 ‘안전’담론의 결합

① ‘중복담론’의 횡행 저편에서 ‘안전’이 또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안전라는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미래의 삶에 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제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안전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위험’은 영어의 danger와 risk를 포괄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말에서 danger와 risk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danger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뜻하는 반면에, risk는 예측가능한 위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본래 사회적인 차원에서 ‘안전’은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미래의 예기치 못한 삶의 추락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개념화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 내지 ‘안전에 관한 기본권’¹³⁸⁾은 국가로부터의 사회권의 보증을 요구하는 복지국가의 화두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안전’의 개념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사회권의 보장이 감축된 빈 공간을 메운 것이 바로 ‘형벌국가’인 것이다. 그렇지만 형벌국가가 보증하려는 안전은, 바우만의 설명처럼, 사람들의 대량실업,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에서 야기되는 실존적 불안의 원천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오늘날 화

135)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241면.

136)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258면.

137) Loïc Wacquant, Punishing the Poor - The Neoliberal Government of Social Insecurity, Duke University Press, 2009, 7면.

138) 이재일, 앞의 글, 186-187면 참조.

두가 되고 있는 안전은 그 원천이 되는 불안의 원인과 의미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안전은 과거나 지금이나 중요한 화두였지만, 안전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을 다루는 사회적 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전통적으로 danger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던 범죄현상이 risk의 범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념범주의 이동은 국가적 통제의 대상이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 ‘위험한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위험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내지 관리해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물론 이는 지난 세기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지표와 수단이 어느 정도 개발되고 축적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이버상의 광범위한 데이터수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¹³⁹⁾

이런 배경에서 위험한 인물’이라는 표적은 심리학 정신의학적 지표로서의 위험성이 아니라 정치담론의 지평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낙인된 위험성을 기초로 구성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테러의 위험은 이슬람 이민자들을 ‘위험한 인물’로 낙인찍기에 충분한 정치적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종북’ 이데올로기가 그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다.

② 이런 배경에서 시민의 저항적 표현과 주장, 행동의 분출을 통제하는 담론은 소위 ‘법질서 정책(law and order policy)’과 무관용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법질서 정책’이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불안정과 시민의 저항이 사회질서의 붕괴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법치’를 강조하는 정책을 일컫는다.¹⁴⁰⁾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이미 소위 ‘법질서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표방한 바 있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무렵, 검찰은 2008년 5월 27일 대검찰청公安부주재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집단행동 관련 유관기관협의회」에서 “명백한 불법·폭력집회에 대해서는 ① 무관용 ② 무폭력 ③ 무질서 추방의 3무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하면서, “폭력·불법 집회시위의 주동자 및 배후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의 반복 악순환 근절”의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¹⁴¹⁾ 여기에서 ‘법치’의 의미가 교묘하게 왜곡되고 있다. 법치주의란 본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기본권보장의무)를 근거로 하여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원리로 정립된 것임에도 오늘날 소위 법질서 이데올로기 하에서 법치는 공익을 위해 시민이 감수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형사사법 내지 국가권력은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의 자율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전

139) 쉐이버, 쿠키어 지음(이지연 옮김),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기북스, 2013, 273면 이하 참조.

140) 김한균, “법질서정치(Law and Order Politics)와 형사사법의 왜곡”, 민주법학 제37호, 2008.9, 314-316면.

141) 대검찰청, 「최근 불법집단행동 관련 유관기관협의회 개최」(2008.5.28.)

제로 하여 경제질서 내부 혹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불안정성의 요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형사사법은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자본과 시장질서에 대한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통제되어야 할 행위를 선별한다. 개인책임의 원리는 법질서 이데올로기와 결합함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사법통제권력이 행사되어야 할 지점과 범위, 그리고 범죄통제권력 행사의 담론적 기제를 특정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형사사법의 통제가 주로 하층의 노동자계급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그들은 지속적인 삶의 수준의 악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제도권의 의사소통체계에 접근할 기회마저도 차단당하기 일쑤이며, 법제도의 틀을 벗어난 저항이 그들의 유일한 무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⁴²⁾ 형사사법은 이렇게 해서 신자유주의 하의 자본과 국가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첨병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국가권력의 위험통제는 흔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비로 나타난다. “위험한 범죄자”와 “선량한 피해자”를 대비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비는 범죄문제 내지 법질서의 문제를 오로지 개인도덕적 차원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 사회적 소외의 문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성에 관한 왜곡된 관념 등 문화적 요인을 철저히 외면하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결국 이분법적 구도는 신자유주의 법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집단이나 세력을 ‘비정상성’의 범주로 ‘타자화’하면서 시민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며, 대다수 시민을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그와 같은 “위험의 피해자”로 등치시키는 담론전략이다.

중복이데올로기는 선량한 시민 보호의 담론과 결합함으로써 결국에는 “위험 통제” 내지 “위험 관리”의 정책을 정당화시킨다. 위험한 범죄자 내지 집단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하에 국가의 감시와 통제 권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된다.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는 이미 전자발찌, 신상공개, 치료감호제나 보호감호제 등 위험관리 정책이 새로운 형벌정책으로 등장하였고, 전통적인 형벌인 징역형이나 사형은 위험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성폭력범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④ 형사사법의 배제의 담론에서는 ‘비정상성’과 ‘위험’에 근거한 ‘낙인’이 강력한 사회적 통제기제로 등장한다. 언론을 통해 흉악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악마’나 ‘짐승’이니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단적인 예지만, 인터넷상에서 중복을 배제하는 담론의 작동모습도 이와 동일하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유행처럼 등장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주목해 보자. ‘사이코패스’라는 용어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지만, 그것은 현재 사회적 담론에서 ‘자신의 욕망

142) 박지현, “87년 후 20년간 사회통제 법제 - 시민적 자유에 관한 신자유주의의 역설”, 민주법학 제36호, 2008.3., 69면.

과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의식 없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¹⁴³⁾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은 “사회가 규정하는 규범적 행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기술-지식 체계를 동원하여 사회구성원과 사회 전체에 위험한 대상으로 규정한 결과”¹⁴⁴⁾이다. 비정상성의 낙인은 ‘재범의 위험성’ 내지 ‘교정의 불가능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측판단에서는—그 예측의 과학적 정확성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형사사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과장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 ‘도무지 치료와 교정도 되지 않는 위험한 인물’로 낙인찍고 그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배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구축된다.

푸코는 이미 1978년 <리베라시옹>에 기고한 글에서 위험의 낙인에 기초한 형사사법의 확장을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오늘날 형사사법은 점점 ‘위험한 인간’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을 하나의 중요한(필자 추가) 범주로 삼고 있는 것이다. ... 그 인간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일은 이제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위험성, 즉 사람이 여러 개인들에게 부여하는 이 암울한 특성이, 지금 범위반행위에 부가되려고 한다. 우리는 심리학적 위반행위, ‘성격범죄’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있어야 할 자가 아니다. 그렇기에 나는 너를 벌하는 것이다.”¹⁴⁵⁾

4. 공안기관의 ‘위험통제’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공안기구에 의하여 중복물이 담론이 조직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것은 “중복=맹목적인 북한추종세력”이라는 공식에서 더 나아가서 “중복=국가 위해세력”으로 규정짓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중복담론은 신자유주의 안전담론과 밀접하게 결합한다.

1)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작동하는 공안권력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와 기소활동은 일정한 정책적 목표, 그리고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다. 본래 수사와 기소제기는 고도의 목적지향적 활동이다. 특히 노동자의 파업, 집회시위 등 정치적 갈등에서 연유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수사할 것인지,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생산’해낸다.

형사사법체계에 내재한 ‘선별적 통제’의 메카니즘은 대체로 아래의 두가지 틀에서

143) 이에 관해서는, 신동준, “현대 사회의 ‘괴물’, 사이코패스 이해하기”, 현상과인식 제35권 1/2호(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1), 150-156쪽.

144) 신동준, “현대 사회의 ‘괴물’, 사이코패스 이해하기”, 165쪽.

145) Foucault M., “Attention: Danger”, *Libération* 1286호(1978), 507쪽.

작동해 왔다. 첫째, 지배적 정치세력(내지 계급)과 반대편의 정치세력(내지 계급) 간에 어떠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담론적 이해와 해석의 차이가 클수록 갈등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정치담론을 수용하고 그것을 공격적으로 법해석에 적용할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정치적 담론이 북한의 배후조종설까지 치달으면서¹⁴⁶⁾ 우리 사회에서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단적으로 양분되었던 현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촛불집회를 지배계급 내지 지배적 정치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촛불집회에 대한 과도하고 엄격한 처벌정책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갈등하는 정치적 담론 간의 상대적 권력관계에 따라 특정 행위가 범죄로 통제될 가능성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세력(예를 들어,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정치적 권력관계에서 그 격차가 커질수록 형사사법기관, 특히 검찰은 정치적 세력의 담론에 입각하여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정의”하고 통제하게 될 것이다. 진보적 정치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때에는 보수적인 정치담론이 검찰의 법담론 속에 전폭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역학관계 상 보수적인 정치담론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처벌정책을 구사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배제의 논리

하지만 오늘날 중복담론과 공안탄압은 더 이상 정체세력간의 역학관계의 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복이데올로기는 시민적 정치투쟁의 맥락을 제거해 버리는 담론과 결합되어 있다.

오늘날 형사사법기관이 즐겨 사용하는 배제기법은 ‘공공의 안전 내지 공익에 대한 피해’의 관념에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은 시민들의 발을 묶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한 범죄로 개념화된다.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1차 ‘언소주’ 사건에서 검찰은 네티즌들의 전화공세로 인하여 해당 기업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손해액까지 들먹이면서 강조한 바 있다. 사실 업무방해죄에서 경제적 손실은 구성요건요소가 아님에도 말이다. 또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건에서는 시청 앞과 광화문을 뒤엎은 집회참가자들로 인하여 도심교통이 마비되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PD수첩 사건이나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 무분별한 언론보도나 인터넷상의 표현행위가 국가 혹은 국가기관의 정책적 신뢰성의 상실을 야기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 ‘공익’이라는 개념의 해석코드로 등장하고 있다.

146)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담론에 대해서는, 채장수,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제1호, 2009, 129-148면 참조.

3) 위험통제정책의 (형)법이론적 정당화논리 - 적대형법

형법학계에서는 이른바 “적대형법(feindstrafrecht)”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적대형법이란 독일의 야콥스(Jakobs)가 제안한 개념으로, 그는 ‘시민과 적’의 구별을 통해 전통적인 형법은 범질서를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에게만 적용되고(시민형법), 테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는 사회의 ‘적’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위험의 효과적인 제거를 목표로 한 특수한 형법(적대형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⁴⁷⁾ 그에게 있어, “적”은 행위태도에서 단지 조심성없는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표출시키는 자(예 : 상습적인 위험성 있는 성폭력 범죄자), 직업적으로 범죄행위를 지속하거나 범죄조직과 연계된 행위를 통해(예: 마약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 지속적으로 범질서로부터 이탈하려는 성향을 지닌 자로 정의한다.¹⁴⁸⁾

적대형법의 이론에서 ‘적’은 시민이 아니다. 야콥스는 이들을 지칭할 때 “비인격체(Unperson)”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들은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통제되어야 할 대상, 즉 “위험원”일 뿐이다. 그리하여 범질서를 수용하고 승인하려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시민’들에게는 국가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¹⁴⁹⁾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범질서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탈하려는 경향을 지닌 ‘적’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국가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보장되지 않거나 그 보장의 수준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한다.¹⁵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시민성을 부정하는 적대형법의 논리는 전통적으로 형법에 적용되어 왔던 법치주의 원칙들을 허물어 버린다. 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시민 내지 시민사회를 상정하고, 시민의 안전, 즉 사회방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정당화한다.

적대형법의 가장 전형적인 발현은 미국과 유럽의 대테러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⁵¹⁾ 미국의 경우 시급한 국내외 테러차단 요구에 부응하고, 테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내지 비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법원칙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USA PATRIOT Act를 제정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16개 조항에 한함)으로

147) Jakobs, Kriminalisierung im Vorfeld einer Rechtsgutsverletzung, ZStW 1985, 751면 이하 ; ders., Das Selbstverständnis der Strafrechtswissenschaft vor den Herausforderungen der Gegenwart, in: Eser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vor der Jahrtausendwende, 2000, 47면 이하 ; ders., Staatliche Strafe: Bedeutung und Zweck, 2004, 45면 이하 ; ders., Bürgerstrafrecht und Feindstrafrecht, HRRS 2004, 88면 이하.

148) Jakobs, HRRS 2004, 92면.

149) 소위 자유권에 해당하는 인권의 영역을 말한다. 주거의 불가침, 통신비밀의 자유, 정보적 자기결정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50) Jakobs, HRRS 2004, 93-94면.

151) 이하의 입법례는, 최성진, “현대 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이원화 경향”,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2010, 292-294면.

운영하였고, 최근 미국 하원은 그 주요 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은 자국의 북아일랜드 문제와 국제테러 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협약의 수사 및 처벌, 테러자금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테러에 관한 기본법으로 2000년 7월에 대테러법(Terrorism Act 2000)을 제정하였고 이후 9.11테러가 발생하자 기존의 대테러법 보다 테러범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과 테러범에 대한 출입국 통제, 자산동결 등 수사권의 강화를 내용을 담은 반테러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을 2001년 12월에 제정하였다. 그러나 반테러법의 일부 조항이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법원의 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럽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05년 5월 테러방지법(Prevention Terrorism Act 2005)을 다시 제정하였고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테러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일반적인 형사범으로는 테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시 보다 강화된 대테러법(Terrorism Act 2006)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법안은 크게 테러사건 수사권의 강화, 영장주의 예외인정, 출입국 등 보안업무 강화, 테러자금 감시 강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5. 공안통치의 강화로서 종북 매카시즘

1)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열풍

1950년대 초반 미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매카시즘은 매카시(Joseph Raymond McCarthy) 상원의원의 개인적인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사회에서 1930년대 대공황과 뉴딜정책을 거치면서 성장해 온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 진영에 대한 자본과 보수주의 세력의 위기감의 표출이자 대반격이었다. 미국 사회주의 진영은 2차 대전 당시에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반파시즘연대의 틀 속에서 미국의 전쟁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계기로 하여 대중운동으로서의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당시 소련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권과의 치열한 패권경쟁 국면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자본가들과 보수세력은 “자본주의를 더 안전한 것으로 만들고 미 제국에 대한 지지라는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죄과를 약화시키고 고립시켜야”¹⁵²⁾ 했다.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자본축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좌파세력에 대한 통제는 필연적인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 민주당의 트루먼 정부는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한 지 10일 만에 대통령령 9835호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내에 침투한 불순분자, 즉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 시작한다.¹⁵³⁾ 모든 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정부기관, 학교 등에서 충성서약이 일상적이고 의무적인 일이 되었다. 의회는 2차 대전

152) 하워드 진(유강진 옮김), 미국 민중사 2, 도서출판 이후, 2013, 132-133면.

153) 하워드 진(유강진 옮김), 미국 민중사 2, 133면.

전에 파시스트들을 조사하기 위해 특위로 설치하였던 하원반미활동위원회(HUAC, 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를 상임위원회로 격상시킨 후 공산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일들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갔다.

당시 트루먼 정부의 좌파색출정책에 대하여 더글러스 밀러와 메이런 노왁은 『The Fifties』(1950년대)라는 책에서 아래와 같이 논평한 바 있다 : “1947년 3월에 시작되어 1952년 12월까지 이어진 트루먼의 보안 프로그램으로 약 660만 명이 조사를 받았다. 약 500명이 ‘충성이 의심스럽다’는 모호한 이유로 해고됐지만 단 한 건의 간첩행위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이 재판관이나 배심원도 없이, 비밀증거와 비밀스러운 정보제공자의 증언에 의존했다. 정부전복의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광범위하게 수행된 빨갱이 사냥은 정부에 스파이들이 침투해 있다는 관념에 대중적인 믿음을 갖게 했다. 보수적 두려움에 가득 찬 반응이 이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다. 미국인들은 기존질서의 절대적인 안정과 보존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¹⁵⁴⁾

이런 분위기에서 위스콘신주 상원의원인 매카시가 등장하였다. “여기 내 손에 205명의 공산당원의 명단이 있습니다.....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이 국무장관에게 알려졌음에도 계속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국무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명단 말입니다.” 1950년 2월 매카시 의원이 웨스트버지니아 주 휠링에서 공화당여성클럽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서류 몇장을 치켜들면서 외친 말이다.¹⁵⁵⁾ 휠링에서 매카시가 언급한 205명은 국무부의 직무평가 결과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했던 284명 중 해고를 면하고 국무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 사람이었다.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사유가 그들이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매카시는 이들이 대통령령에 의한 조사와 평가에서 추천을 받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공산주의자였을 것이라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284명 중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205명은 공산주의자라고 왜곡 선동한 것이었다.

마침내 1950년 가을, 미 의회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다. 이는 그동안 스미스법이라고 일컬어진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전전과 전쟁 중에는 독일스파이와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전후에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국내의 공산주의자를 처벌해 왔던 것을 더욱 강화한 법이었다. 맥카렌법(McCarran Act)으로도 불리는 국가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은 공산주의 단체의 의무등록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이 단체의 회원들은 우편물과 글에 반드시 공산주의자임을 밝히도록 하였고 연방정부나 방위산업체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고 외국여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이 법은 이 단체에 속한 외국인이나 영주권자에 대한 강제추방,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에는 법원의 영장 없이 공산주의자들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었다.¹⁵⁶⁾

154) 하워드 진(유강진 옮김), 미국 민중사 2, 133면에서 재인용.

155) 하워드 진(유강진 옮김), 미국 민중사 2, 135-136면.

156) 정종권, “12월 2일 노을, 매카시즘을 돌아본다”, <http://blog.naver.com/jjkpssp/10153647868>.

2) '예외상태의 일상화' - 비사법적 권력통제의 강화

아감벤의 '예외상태'에 관한 논의를 참조해 보자. 예외상태란 일상적인 통치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질서를 유보하고 그 위기상황을 종식시킬 때까지 기존의 법질서를 뛰어넘는 특수한 권력이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지만, 아감벤에 따르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이탈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질서를 떠받치는 은폐된 근간이다.¹⁵⁷⁾ 예외상태란 오히려 일상의 법질서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힘이며 이렇게 은폐된 예외상태가 전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기존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이다. 아감벤은 이 때 입법기관의 권력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이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분명하게 드러나며, 나치 이후에는 “항구적인 비상상태의 자발적 창출”이 현대 국가의 본질적인 실천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⁵⁸⁾

정정훈은 아감벤의 논의에 기초하여 “심층에서 작동하는 부르주아 통치의 은폐된 원리가 현실 속에서 노골화하여 현실을 지배하는 권력의 작동원리가 된 통치체제를 공안체제”라고 부른다.¹⁵⁹⁾ 그에 의하면 공안체제란 “부르주아의 사회적 지배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경우 그 질서를 방어하기 위해 폭력적 국가기구를 통치의 기본수단으로 삼아 그 질서를 보장하는 통치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의 정치적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과 자본이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은 증오의 정서를 활용하는 파시즘 전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것이 중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복담론은 사회주의 내지 진보적 정치운동에 대한 배제를 목표로 한 '배제의 구별짓기'이며 파시즘이다.

IV. 대응의 방향

1. 군 중복교육의 폐지

1) 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된다. 군대는 국민에 봉사하는 “국민의 군대”여야 함을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57) 아감벤(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22-24면.

158) 아감벤, 위의 책, 24면.

159) 정정훈, “민주주의와 공안통치 :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과 맑스의 민주주의론”, 부커진R3 : 맑스를 읽자, 그린비, 2010, 98면.

국방부의 중복교육 표준교안에 의하면, 사상적 이유로 일부 국민을 중복세력이라고 규정짓고 이를 군대의 적이라고 함으로써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있다.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군대가 정치적 집권세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등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헌법원칙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첫째, 정치적 집권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영향 및 개입의 배제, 둘째,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국방부, 군지휘부는 외적 정치적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 셋째, 군 장병 개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특히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부의 중복교육 표준교안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중복교육은 지극히 편향된 정치사상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바, 이는 국방부 및 군지휘부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군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군대를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은 군 장병의 기본적 인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대를 창설하고 유지하는 국가가 국민주권원칙 및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군대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이 군 장병 개개인이 향유하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복교육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여 편향된 사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군 장병의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다.

2) 사상·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상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내적 형성의 자유, 외부적 표명을 강제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고 실현할 자유를 포괄하고 있는데, 중복교육은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폐지라든가 주한미군철수 등의 의견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의견의 형성과 표명은 사상·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중복교육 표준교안에 의하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우리 사회의 진보정치세력을 중복세력이라 규정하고 군대의 적이라 간주하고 있다. 이는 진보 정치세력과 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에 해당한다.. 국가가 군대를 이데올로기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적”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군대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를 저버리고 우리 사회 진

체에 대하여 사상적 편향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둘째, 중복교육은 군 장병의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군대의 특성상 철저한 상명하복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실시되는 중복교육은 결국 군 장병들이 다양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교환, 소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군장병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군 장병들이 군대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사상과 신념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효과로 귀결될 것이다(위축효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셋째, 표준교안이 중복세력을 공공연하게 군대의 적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을 보면, 군은 중복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군 장병의 기본적 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는 군대 내에서 소위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장병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사찰하는 사상통제시스템을 당연시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군 생활 중에 군 장병들에 대하여 사상의 아웃팅(Outing)을 유도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말할 수 있다.

2.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론

1) 국가보안법은 남한 사회에서 전형적인 정치형법으로 작용해 왔다.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폐지론은 2004년을 정점으로 현재는 상당히 위축된 형국이다. 종래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형법상 내란죄나 간첩죄 등 형법상 처벌규정만으로도 국가의 안전·존립을 보호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 등이 주된 근거가 되어 왔다.¹⁶⁰⁾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의 심각한 문제는 표현과 주장의 내용에 대한 통제에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공안기관이 중복척결을 내세워 시민사회의 민주적 공론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데올로기적 기초이다. 이를 제어하기 위한 헌법의 원칙으로 종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이 거론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문제의 소재는 법문의 다의성과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에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구체적인 위협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생기

160) 형사법학계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자세한 논거는 허일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위성”,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004, 237면 이하 ; 한인섭, “국가보안법 폐지론”,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04, 123면 이하 참조.

게 되어 있는 점이며...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위협’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협성”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이란 어떤 표현이 실질적 해악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고 그 위협이 현존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 보자면, ‘실질적 해악’이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 내지 위협을 의미한다. ‘명백성’은 표현과 해악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위협의 ‘현존성’ 요건은 사민들 사이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토론에 맡기기에는 그 해악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본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다. 정치적 주장·의견 등의 표현이 규제대상이 되려면 그 표현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라는 보호법익에 대하여 해악을 끼칠 위협이 명백해야 하고 또 그러한 위협이 급박하게 존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단기준으로 내세운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협성”에는 ‘명백성’의 요건만 반영되어 있을 뿐이며, ‘현존성’ 요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법원 판례는 ‘명백한 위협성’이라는 요건 자체도 단순히 북한의 주장이나 활동에 동조하는 의견이나 표현이거만 하면 충족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백성 요건조차도 실제로는 소멸되어 버린 형국이다.

2) 국가보안법 폐지논쟁이 한창이었던 2003-4년 무렵, ‘광화문에서 김일성·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행위’의 처벌필요성을 두고 설왕설래한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표현이 바람직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표현을 형사처벌로서 금지하고 규제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러한 표현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표현이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악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주장이나 의견은 그것을 실천하는 외적 행동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해악’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가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발언이나 주장은 그 자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야기할 위협성을 가지지 않는다.¹⁶¹⁾ 만약 그러한 주장이 남한사회에서 폭력혁명이라는 외부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그 이론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주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악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대중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한 주장이 과연 옳은지는 민주주

161) 김종서, “국가보안법 폐지론 - 제7조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1, 175면.

의적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가 ‘선군정치’ 등을 주장하고 말하는 것 자체로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로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미성숙상태인 것도 아니며, 오히려 민주주의적 토론을 통해 그러한 주장에 대한 평가와 객관화된 인식이 가능해진다.¹⁶²⁾

반면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악의 위험이 ‘현존할 때’에 한하여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서 말하는 위험의 ‘현존성’ 요건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표현이 헌법적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행동’으로 연결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때에만 충족된다. 그러한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체제전복적 행동이며 그러한 체제전복적 행동과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험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표현행위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행동과는 전혀 무관한 ‘표현’ 그 자체이다.

‘주장 내지 옹호의견’의 표현이 아니라 ‘선동’이라면 어떠한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찬양·고무 외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Yates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폭력적 전복의 ‘성취를 위한 행동’, ‘행동 규칙이나 원칙’으로서의 폭력을 겨냥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장에 의하여 그리고 ‘선동적 언어’를 채용함으로써, 어떤 집단에게 장래의 폭력적 행동의 준비를 주입하거나 즉각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것은, 그 집단이 충분한 규모와 응집력을 갖추고 있고 충분히 행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른 상황들이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경우에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주장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폭력혁명을 이끌어내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표출되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행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종류의 선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¹⁶³⁾

1969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Brandenburg v. Ohio 판결도 폭력행위의 선동을 처벌하기 위해 불법적 행동이 의도되고 그 발생이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intent to incite imminent lawless action)’고 판시한 바 있다.¹⁶⁴⁾ 선동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급박하고 실질적인 해악, 둘째, 불법적 행동이 야기될 가능성, 셋째, 불법적 행동을 야기할 의도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표현이 설사 체제전복을 촉구하는 ‘선동’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이나 주장 내용 자체로 금지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선동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선동적 ‘표현’과 폭력적 체제전복‘활동’의 직접적이고 시간적으로 근접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선동적 표현을 접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 선동에서 말하는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요컨대, 아무리 체제전복적 내용의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그 표현

162) 한인섭, 앞의 글 참조.

163) Yates v. United States, 354 U.S. 298 (1957).

164) 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1969).

의 내용이나 성격이 아니라 그 표현행위가 야기하는 ‘위험(danger)의 급박성 내지 현존성’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하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에 대한 ‘급박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선동’뿐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i) 표현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지향하고 있을 것, 그리고 ii) 그러한 표현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외부적 실천행위와 ‘급박한 위험’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한에서만 합헌적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요건이라면 이미 형법상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든가 아니면 최소한 내란의 선전선동행위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곧 제7조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셈이다.

3. 공안기구의 개혁

1) 국정원의 개혁

국정원이 중복세력 척결을 이유로 하여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이 국외정보 외에 국내보안정보의 수집권한과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건의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은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이자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갖고 있어 보안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다른 행정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국회의 통제는 거의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처럼 과도한 정보수집 및 수사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국회 등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기관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내보안정보와 국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정보기관이 각기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다. 정보기관의 과도한 권력집중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권력남용을 낳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의 후퇴로 나타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터득한 때문이다. 2차 대전 후 서독이 동서독의 냉전 와중에서도 위와 같은 정보기관의 권력분산과 견제를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하였음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 우리에게도 당장 시급한 국정원개혁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국정원의 업무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경찰의 개혁

사실 경찰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공안기관 중 하나이다. 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은 검찰과 더불어 수사권을 행사한다.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만, 경찰은 초동수사의 대부분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게다가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하여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갖게 되어 경찰의 수사권이 부분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얼마나 편향되게 사용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수사권의 분리 내지 조정이 거론되어 왔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선공약의 하나로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검경수사권조정을 추진할 의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보면,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하겠다는 식의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는 검찰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검찰보다 더더욱 정치권력의 영향에 취약하다. 검찰이건, 경찰이건 간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은 공정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으로써 수사권의 정치적 남용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개혁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검찰 잡는다고 경찰의 권한을 키워주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공안기관 개혁의 요체는 권력의 분산, 그리고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확보에 있다.

이 사건 수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경찰의 수사권 외에 경비 등 치안권력의 남용문제도 함께 개혁의 도마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 동안 경찰의 권한남용 내지 인권침해의 문제는 주로 집회시위관리나 대규모 파업현장의 공권력투입 등에서 문제되어 왔음을 상기해 보자. 단적인 예로, 쌍용자동차 파업 동안에 경찰이 단전단수 및 음식물과 의약품의 반입차단, 최루액 투하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조치를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이러한 공권력남용은 쌍용자동차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촛불집회에 대한 과도한 탄압, 용산참사사건, 반값등록금집회 등에서 우리는 시민을 향한 경찰의 폭력을 적나라하게 목격하였다. 이명박 정부 5년만 놓고 보아도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남용의 문제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경찰은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파업이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공권력남용은 그 자체로 심각한 개혁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원 직원 수사는 경찰의 수사권 역시 정치적 영향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경찰에 대한 “총체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치안정보의 수집, 경비업무 등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으로 인해 경찰이 시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음을 냉정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경찰 개혁의 방향은 경찰의 치안경비권한과 수사권한을 적절히 분리하여 경찰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그 경찰의 권한이 정치권력의 영향력 아래 왜곡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민주주의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일 만드는 것이다. 경찰권력을 통제하는 주체는 분명 “시민”이어야 한다. 경찰개혁의 방향은 아래의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과 치안 경비 등 위협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이 상호 분리되어 있다. 수사경찰은 사법기관의 일종으로 그 권한과 직무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일반경찰은 주로 위협예방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별도의 경찰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 축은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하여 경찰을 지방분권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과 직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질화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당연하게도 범죄수사 및 치안 등 기본적인 경찰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체계화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경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가경찰과 대등한 지위의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경찰조직을 분권화하는 경우에 국가중앙조직으로서 경찰은 테러범죄, 조직범죄, 기타 광역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경찰권력의 분산이 개혁의 시작이라면 개혁의 궁극적인 지점은 공안권력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전부인 현재의 상황은 민주경찰을 담보하지 못한다. 경찰청에는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모델이 논의될 수 있다. 하나의 예이지만, 영국 경찰의 경우 시민참여형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위원회에서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에 대한 임명·해임권을 행사한다.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 자유주의적 개혁의 한계에 관한 고민

우리 사회의 중복담론, 그리고 적대형법의 이론이라든가 안전담론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성의 분할’이며, ‘배제의 논법’이다.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한 사상통제법제, 그리고 경찰,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막강한 행정통제권력이 이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여기에 보수 진영의 왜곡된 애국주의가 결합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적’으로 간주되는 위험한 사람 내지 세력의 풍상

이 만들어지고, 이들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는 전통적인 법치국가적 보장에서 점점 더 열외가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권력기관이 주도하는 “위험관리”의 담론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영역을 식민지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형법은 국가의 총체적인 감시권력 및 위험통제권력의 확장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 편입되어 있으며, “위험한 사람 내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격리의 정책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메카니즘에서 국가권력의 위험통제정책은 전통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면서 점점 더 행정통제의 영역, 특히 경찰법 영역의 권한을 확장시키게 된다. 국정원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라든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 등은 이러한 행정권력적 통제의 강화방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위험세력’을 효과적으로 색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을 물리쳐야만 하는 경쟁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신자유주의 사회의 기업가적 주체인 개인들이다. 늘 자신이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에 시민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신뢰와 공감의 토대는 허물어져 버렸다. 대중들의 시선에서 중복세력은 - 흉악범죄자, 거지, 부랑자 등과 마찬가지로 - 자기경영에서 실패한 낙오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야기하는 법질서외의 도전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표상될 뿐이다. 그들은 나의 동료가 아니며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타자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안기구의 권력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공간기구 개혁이 필수적인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개혁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정원과 경찰의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국정원의 위법한 정치개입, 그리고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따가운 질타를 보내는 시민의 시선은 이제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그래서 남용을 일삼는 권력을 제어하는 출발점은 권력의 분산이다. 그 다음, 공안권력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권력의 분산과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이 명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건만 우리는 아직 그 기초를 닦지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인권의 담론은 충분히 정교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다. 국가의 통제권력의 강화로 인하여 침해되는 인권의 가치를 자유주의적 언어인 ‘피해’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중복담론에 대항한 인권의 담론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국가의 감시 및 통제권력의 확대를 통해 결국에는 “위험한 인물 내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시민사회의 신뢰와 유대를 파괴하고 복종과 강제의 권력을 일상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중복담론의 극복으로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파시즘으로 치닫는 권력적 통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저항이다. 인권운동 진영의
대항담론은 무엇인가?

애국주의와 종북공세, '기득권연합의 영구적 우위'의 어떤 전조

정정훈(수유너머N)

1. 어떤 애국주의를 몰어야 할 것인가?

주지하듯이 보수주의, 그 중에서도 정치적 보수주의는 애국주의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것이 민족이라는 상상적 혈연공동체에 대한 동일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건 전통으로부터 이어져온 문화와 법률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건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인간조직을 하나의 공동체로 파악하려 한다. 이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보다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을 뜻하는 것이며 비록 그 내부적으로 위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계조차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내세운다. 그런 의미에서 종종 회자되곤 하는 '건강한 보수주의'는 공동체로서 국가의 공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많은 논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보수주의라고 보는 것이 어렵다. 그들에게 국가란 공동체가 아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장이며 국가기구란 자원을 보다 손쉽게 획득하고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몇 해 전 유행했던 나꼼수 식의 어법을 빌려 쓰자면 이 나라의 보수세력에게 국가란 '수익모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념적 보수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적 이익 추구에 눈이 먼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수구세력도 어찌되었건 항상 자신들의 가치지향이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내세웠다. 그것이 '북진통일'이건, '성장'이건, '안보'건, '경쟁력'이건 그들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모토는 국가를 발전시키고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발전과 강화는 곧 '국익'의 증진을 의미한다. 국가의 권력을 잡은 세력은 안보와 경제를 국익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국가기구의 근본적 기능을 국익추구로 환원시킨다. 이때 애국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성장의 가치의 내면화하고 이에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렇게 제시된 애국이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적 세력들 사이의 적대를 은폐하고 보수세력이 내세우는 국가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진 세력들을 억압하기 위한 단순한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것이다. 사적 이익의 추구에서 기득권세력의 성공이 곧 경제성장을 의미하고 이 세력이 획득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곧 안보를 뜻 할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한국의 보수세력, 즉 사익추구블록 내지는 기득권연합이 내세우는 애국주의란 별다른 분석이 필요 없는 낮간지러운 선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설립이후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이어지는 보수세력의 애국주의가 터하고 있는 기본 바탕일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의 성격은 일관되게 이어져 온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성격은 변화해왔고 그 성격이 변화해 온 만큼 사적이익의 추구를 위한 조건 역시 변해왔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보수세력이 선동하는 애국주의의 문제를 짚어봐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보수진영의 애국주의담론은 기본적으로 위기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갖는다. 보수세력의 이익추구가 직접적으로 난관에 처했거나 그들이 구축한 질서가 저항의 가능성을 강하게 배태하게 될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중을 통합하고 위기를 봉합하기 위한 해계모니적 전술의 차원에서 애국주의가 차용되는 것이다. 이때 보수세력의 위기는 언제나 국가의 위기로 포장되고 국가의 위기는 곧 ‘국민’의 위기와 등가적인 것이 되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멘털리티로 제시되는 것이 애국주의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애국주의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적이익추구세력이 당면한 위기구조란 어떤 것인가? 즉 한국 사회의 성격 변동으로 인해 득권연합이 놓이게 된 사적이익추구의 조건에 어떤 변화가 생겼으며 그 변동과 변화는 보수세력에게 어떤 위기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현재 선동되고 있는 애국주의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2. 현 지배체제의 위기구조

지배세력의 위기란 그들이 장악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상태나 이익추구의 회로가 붕괴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당면한 위기, 즉 현실적 위기의 개념 역시 포함하지만 현재적 국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배세력의 권력유지와 이익추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잠복된 갈등구조나 적대관계가 손쉽게 분출될 수 있는 체제의 상대적 취약성이라는 위기구조이다. 전자의 위기, 즉 당면한 위기를 이러한 위기를 ‘현실적 위기’(actual crisis)라고 부를 수 있다면, 후자의 위기, 즉 지배체제에 배태된 구조적 위기 내지는 위기구조는 ‘잠재적 위기’(virtual crisis)라고 명명할 수 있을 듯 하다.

지배세력이 당면하게 되는 현실적 위기는 특정한 정세적 계기에 의해 체제에 내장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잠재적 위기로부터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잠재적 위기는 체제를 규정하는 특성 안에 이미 배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배세력은 잠재적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또 그 위기가 현실화되었을 때 이 위기를 ‘봉합’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 애국주의는 이러한 위기의 예방과 봉합이라는 차원에서 작동하는 전략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현재적인 지배체제의 잠재적 위기, 즉 체제에 배태된 위기구조란 어떤 것일까? 한때 한국사회과학계에서 유행했던 87년 체제, 97년 체제, 2013년 체제와 같은 ‘체

체론'은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좋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논자에 따라 현재의 체제를 87년 체제의 지속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97년 체제라고 규정한다.¹⁶⁵⁾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정치권력의 작동방식과 관련된 87년 체제와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련된 97년 체제가 착종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87년 체제가 전혀 작동하는 것은 아니나 더 이상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국면이라고 파악하는 입장이다.

87년 체제를 제도정치적 관점에서 규정하자면 독재세력의 상대적 우위 하에서 독재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형성된 정치권력의 작동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보자면 87년 체제는 독재체제를 전복한 대중의 힘에 대한 제도정치권의 반응으로서 형성된 것이다. 민주화의 실질적 동력이었던 대중의 반체제적 힘을 '정치적 재현'을 통하여 특정한 체제 경계 내로 흡수하고 필요에 따라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이 체제의 핵심이다. 즉 대중의 반체제적 힘에 바탕하여 성립하였으나 그 대중의 힘¹⁶⁶⁾을 대의정치제도를 통하여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87년 체제의 중핵이라는 것이다.¹⁶⁷⁾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기득권연합, 즉 사익추구블록에게 야당으로 표상되는 정치권의 민주화세력은 '주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사익추구블록의 기득권의 확장과 유지에 가장 위협이 되는 '주적'은 반체제적 경향성을 가진 대중이었다. 87년 체제의 위기구조는 바로 그 체제가 반체제적 대중의 힘과 그 투쟁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형성된다. 87년 체제가 대중의 힘에 기초하여 형성된 만큼 이 힘을 과거 독재체제와 같이 폭력으로 억압만 할 수 없고 어떤 식으로는 체제의 경계 내에서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대중의 힘을 통제해야 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합법적 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이 등장했으며, 개혁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가버넌스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대중의 힘은 언제든지 기득권 연합의 사익추구회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남아있게 된다.

97년 체제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등장한 사회경제적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적, 정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IMF의 구조조정플랜이 가동되면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화가 본격화되었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급격화된 신자유주의화는 이후 비정규직의 양산, 대량의 정리해고, 실업의 만연을 유발하였고 결국 소위 양극화라고 불리는 경제적

165) 조희연의 경우는 현 체제는 08년체제라고 봐야한다고 제안한다. 87년체제나 97년체제나 혹은 08년체제나 의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복잡한 논쟁이 오간 사안이지만 이 글은 체제론 논쟁에 대한 개입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에 일단 현 체제의 규정방식에 대한 나의 입장만을 간단히 밝히고 현 체제의 성격과 위기구조에 대한 논의를 바로 진행하고자 한다.

166) 여기서 대중에 관하여 깊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대중의 힘이 반체제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이 곧 대중이 그 자체로 반체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중은 조건에 따라 반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급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다. 또 동시대에 반동적 경향의 대중과 전복적 경향의 대중이 동시에 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대중이라는 집합적 행위자는 단일한 성격의 주체가 아니다. 오히려 개체로서의 주체성을 초과하는 집단정념의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67) 87년체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토론은 다음 나의 글을 참조해주면 좋겠다. 정정훈, 「87년체제와 새로운 권력의 테크놀로지: 시민사회와 사법-기계」, 부커진R 1호 『소수성의 정치학』, 그린비, 2007.

불평등의 심화로 귀결되었다.

적어도 발전주의체제 하에서는 소위 ‘파이의 논리’에 대한 암묵적 동의, 즉 경제가 보다 성장하게 된다면 그 과실을 국가공동체의 성원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일정하게 존재했다. 물론 강고한 기득권 세력이 성장의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대중의 조직된 힘을 통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그 성장의 과실을 획득할 수 있다는, 즉 보다 나은 삶에 도달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경로에 대한 믿음을 또한 수반한 것이기도 했다. 이는 어찌되었건 개발독재시대와 민주화 과정을 통과해오면서 한국사회의 대중에게 체험적으로 학습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발전주의가 종료되고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삶의 기본 틀이 되면서 대중들은 더 이상 국가의 경제성장, 즉 GNP나 GDP의 성장과 자기 삶의 경제적 안정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 또한 체험적으로 학습하게 되었다. 더 이상 보다 나은 삶에 도달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경로에 대한 믿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에게 삶의 물질 토대, 즉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어떤 확실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당연히 대중들의 정서 또한 불안정한 것으로 몰고 간다. 소위 무한 경쟁의 게임에서 패배한 자들은 절망이, 아직은 그 게임에 참여중인 자들도 언제 패배하여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기본적인 정서가 되어가는 것이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지적하듯이 오늘의 경제적 물은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¹⁶⁸⁾. 그러한 현실은 절망과 불안을 더욱 깊게 만들고 또한 잠재된 분노를 수반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축적구조는 이렇게 내몰리는 자들의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나드는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희생자들, 실질적 실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과 같이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배제된 자들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동의 정도가 약할 수에 없다. 이는 지배세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에 동의하지 않는 잠정적 불만 세력을 뜻하며 이런 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래서 배제된 자들은, 아직 이들이 직접적인 저항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배세력에게는 항존하는 직접적 위협 요인이다.

97년 체제와 더불어 급격하게 재편된 한국 경제의 작동방식은 기존의 기득권연합에게는 오히려 더욱 좋은 사익추구의 기회구조를 제공했다. 불평등한 조건 하에서 벌어지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이익추구게임. 그런 면에서 이들에게 신자유주의는 사익추구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게임에서 패배한 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항상적으로 잠정적인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배세력에게는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와 같은 현 한국사회체제의 성격에 배태된 잠재적 위기가 자신들의 사익추구의 기회구조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세력에게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는 국면인 것으로 보인다. 97년 체제, 즉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로 인해 다수의 대중들은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거나 일상화된 삶의 위기로 인한 극도의 불안에 감내하고 있다. 이

168)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옮김,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2008

명박 정권 중반기 이후로는 불평등과 불안 그리고 절망을 강요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변화요구가 대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아직 87년 체제라는 정치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정치권은 쉽사리 무시하거나 억압할 수만은 없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87년 체제는 대중의 반란적 힘에 그 근간을 두고 형성된 체제이다. 그리고 대중의 힘을 자유민주주의 혹은 시장중심적 자본주의의 경계 안으로 흡수하고 그 경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을 본령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체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세력은 대중의 힘이 체제의 한계 내에서 표출되고 작동되도록 그 힘이 흐를 수 있는 경로를 상대적으로 보장해야 주어야 했다. 운동이 제도화되었고 소위 민주정부 하에서는 가버넌스의 파트너를 담당하기도 했다. 조직된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중은 자신들의 힘을 정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 체제의 경계 내에서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가령 여중생 촛불집회, 노무현 대통령만들기, 파병반대촛불, 탄핵규탄촛불, 한미FTA반대운동, 광우병촛불집회, 희망버스 등 조직운동과 때로는 결합하면서 때로는 독자적으로 대중의 힘은 87년체제의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축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 힘은 97년 체제의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야 하는 대중들은 변화를 요구하였고 이는 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라는 담론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 요구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는 그 이전의 총, 대선과 달리 보수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지도 못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집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 의혹은 기득권세력을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 위기에 당면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한국사회의 기득권연합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은 국가권력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분노와 신자유주의체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일 것이다.¹⁶⁹⁾ 그리고 이를 막아내는 것이 기득권연합을 정치적으로 대의하는 보수정치집단, 새누리당의 핵심적 임무일 것이다.)

3. 애국과 종북, 그리고 불안정성

현재 보수정권이 연일 강조하는 애국담론은 바로 이러한 잠재적 위기와 현실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등장했다고 봐야할 듯하다. 물론 이때의 애국은 그저 나라 사랑하자는 윤리교과서의 레토릭이 아니다. 그런 나라사랑은 라캉식으로 말하자면 ‘텅빈 기표’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기표가 고정되는 좌표이다. 즉 애국이 말해지는 맥락, 애국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필요성으로 제시된 일련의 상황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69) 발리바르는 혁명은 착취의 모순과 이데올로기의 반역이 결합 할때 발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주어진 역사적 정세 속에서 착취의 모순과 이데올로기적 반역이 **해후할 때**, 그것이 혁명인 것이다(승리하든 못하든 간에).” 에티엔 발리바르, 윤소영 역, 비동시대성,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진화』, 이론, 1993, 187쪽.

‘우리’가 애국정신, 혹은 애국적 태도를 함양해야 하는 것은 지금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익추구블록은 자신들의 위기를 ‘우리 모두의 위기’, 즉 ‘국가의 위기’로 치환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곧 국가의 위기라고 선전한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으니 이런 저런 사소한 문제로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일단 애국으로 대동단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의 원인을 보수정권은 일종의 안보위기로 제시한다. 천안함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은행전산망이 다운 되도 북한의 소행이고, 방송국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북한의 소행이다. 국정원이 대선정국에서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통하여 야당후보를 비난하고 여당후보를 칭송한 불법적 공작행위를 한 것도 북한때문이었다고 한다.

더불어 단지 휴전선 이북에 존재하는 적성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인 대한민국 내부에도 자발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그 지령에 종속된 세력들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또 다른 적, 내부의 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밖으로는 북한이, 안으로는 종북세력이 국가를 안보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고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세력들이 단결하여 대한민국의 현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국가의 위기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상상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위기를 조성한 구체적인 원인을 지시함으로써 공포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대중의 열정을 그 원인으로 제시된 ‘적’에게 증오의 형태로 투사하게 만들려는 논리이다. 그 적들을 척결하거나 무력화하면 국가의 위기는 종식되고 우리는 모두 안전해질 것이라는 논리가 현재 보수정권이 선동하는 애국주의의 핵심이다. 그래서 애국담론이란 국가의 위기를 조성한 적들, 즉 북한과 종북세력을 척결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자는 ‘안전담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서두에서도 지적했듯이 보수세력의 이와 같은 애국주의 논리는 매우 단조롭고 또 건국 이래 항상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진부한 것이다. 다만 기득권세력의 애국담론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위기의 성격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애국주의가 일정하게 통용되는 양상은 과거와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이전과는 달리 애국주의의 신호가 ‘위’로부터만 발신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도 발신되기 시작하고 아래에서 그 신호를 적극적으로 수신하며 그 신호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버이연합이나 애국주의연대와 같은 조직된 극우단체들, 보수기독교중심의 보수적 대중동원체제의 구축, 그리고 일간베스트로 대표되는 젊은층의 극우적 인터넷 액티비즘이 성립되어 있고, 여기에 조갑제, 지만원, 변희재 등 극우적 데마고그들이 결합하면서 ‘민간 애국주의’ 내지는 ‘민간 극우’가 형성되어 일정한 세를 형성하고 있는 국면이다.

민간 애국주의, 즉 민간 극우의 등장은 현재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지배하는 전 세계에서 등장하는 현상이다. 바우만의 지적대로 신자유주의로 인해 삶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면에서 국가가 더 이상 대중의 삶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한 고통의 원인제공자를 찾아서 자신들의 분노를 집중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서구에서는 그 대상이 경제이주자나 난민과 같은 비서구의 타자들이다.¹⁷⁰⁾

발리바르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자신의 불안, 공포, 좌절, 절망을 타자에 대한 증오를 통해 상상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대중의 정서적 동학은 또한 상상하기 쉬운 동일성에 대한 집착으로도 표현된다. 종족, 종교, 민족, 국민 등이 바로 그러한 동일성들이다.¹⁷¹⁾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구축되는 상상적 동일성에 대한 집착과 상상된 적으로서 타자에 대한 증오는 상호구성적인 관계인 것이다.

단일한 동일성에 대한 집착은 오늘날 대중들이 경험하는 삶의 불안정성을 오롯이 파편화된 개인으로서 감당해야만 하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그 불안정성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차원-전지구적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지만 그러한 구조적 힘이 결과하는 삶의 파괴가능성에는 단자적 개인의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단자적 개인들은 자신만의 역량으로는 그 구조적 힘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 여기서 개인들이 그와 같은 구조적 힘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개인들을 손쉽게 묶어줄 수 있는 동일성이 바로 ‘국민’이라는 상상하기 쉬운 동일성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대중의 욕망이 전도된 형태로 표현되는 방식이다. 자신의 역량부족을 절감하는 개인이 자신이 소속된(혹은 소속되어 있다고 믿는) 국가가 보다 강해진다면 자기 삶의 불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강한 국가에 대한 지향이 민간의 애국주의로 표출되며 이는 국가의 강화를 방해하고 그 국가를 위협하는 적에 대한 증오로 나타난다.

북한과 중북세력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보수정치세력의 애국주의 선동이 불안정한 삶의 조건에 의해 촉발되는 안정성에 대한 강렬한 희구에 기반을 둔 민간 애국주의와 결합되고 있는 양상이 현재적 애국주의의 독특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4. 안전중심주의와 대중들의 공포

전지구화된 신자유주의체제의 중요한 정치적 결과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과 정치활동을 통해 쟁취된 인민의 권리들, 즉 인권과 시민적 권리가 제한되고 중지되거나 박탈되는 현상이 빈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¹⁷²⁾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는 정치권력을 재전제정화()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의 논자들 역시 이와 같은 국가권력의 통치방식을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친기업적 경찰국가’, ‘법질서정치’ 등으로 개

170)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171) 에티엔 발리바르, 서관모, 최원 역, 『보편적인 것들』, 『대중들의 공포』, 도서출판b, 2007

172)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민의 권리박탈의 관계 및 신자유주의적 통치방식으로 국가권력의 전제적 성격, 그리고 그 한국적 양상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정정훈, 「헤게모니에서 시큐리티로 - 신자유주의 통치체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부커진R4호 『휘말림의 정치학』, 그린비, 2012.

념화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짚어내고 있다.¹⁷³⁾ 발리바르는 이러한 경향을 국가의 ‘안전중심적 일탈’¹⁷⁴⁾이라고 규정하며, 바우만은 ‘형사 사법’, ‘형벌’ 또는 ‘범죄 통제’ 국가로의 전환¹⁷⁵⁾이라고 파악한다. 스튜어트 홀의 경우는 영국에서 대처정권에 의한 신자유주의 정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사회는 위기를 거치면서 ‘다소 장기간의’ 폐쇄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터널이 끝나 는 곳에 빛이 보이긴 하지만 그리 많이는 아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아주 멀리 있다. 그동안 국가는 사회를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고 편협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빠르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도청하고, 마음대로 조사하고, 침투하고 공략하고, 고발하 거나 혐의 없이도 구속하고, 혐의만으로도 체포하며, 으르고 위협할 권리를 획득했으며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상속받았다. 자의적 권력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중단되었다. 이 시대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위기는 진짜이다. 우리는 ‘법과 질서’중심의 사회의 내부에 들어와 있다.¹⁷⁶⁾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 체제는 수많은 대중들을 생산과 분배의 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그 구조적 특질로 하고 있다. 이 경제체제는 다수의 인구를 포섭할 수 있는 의지도, 그럴 수 있는 역량도 없는 체제이다. 그러나 이렇게 배제된 다수의 인구는 지배체제에 대한 잠정적 불만세력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즉 지배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잠재적 위기의 담지자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현실적 위기의 인자로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이 정치권력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통치방식이 다시 전제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 즉 인권과 시민적 권리를 축소, 중지, 유예, 박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저항의 예방과 무력화를 위한 제도적 억압이 중요한 통치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과 억제가 단지 제도적 수준에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억압과 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박탈의 과정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권력에 대한 대중의 상상과 믿음에 대해 권력은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바우만은 이러한 국가권력의 정당화 기제의 핵심에 ‘안전담론’이 놓여있다고 파악한다. 삶의 안정성 확보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오늘날 “국가 권위를 대안적인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순종적인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현재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의 형태로 모색되는 것”¹⁷⁷⁾이다.

바우만은 이같은 정당화 구조를 가진 국가를 “개인안전국가”라고 부른다. 개인안전국

173) 김제균,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 경성대사회과학연구원 편, 『마르크스주의 연구』 2007년 제4권 제2호; 이계수, 오동석,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 비판과 대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38호, 2008 ; 김한균,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37호, 2008.

174)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역, 「“..... ‘안전’과 압제에 대한 저항”」,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40쪽.

175) 지그문트 바우만, 같은 책, 127쪽.

176) 스튜어트 홀, 임영호 역,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한나래, 2008, 87~88쪽.

177) 지그문트 바우만, 한상석 역, 『모두스 비벤디』, 후마니타스, 2010, 29쪽. 강조는 인용자.

가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로부터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실업자와 빈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자원을 박탈당한 자들이 지목되며 그 국가는 이들이 개인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공포를 조장한다. 타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단지 낮은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자들이며 두려운 자들이 되는 것이다. 국가는 이 같은 이들이 가하는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적 권리와 인권은 유보되거나 중지하려 하며 공포에 빠진 대중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 보자면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중단을 승인 혹은 지지하는 것이 하나의 ‘애국적 태도’가 된다. 각 개인의 안전이 지금 괴물과 같은 위험 인물들, 비정상인들¹⁷⁸⁾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고 그러한 괴물들로부터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인권이니 민주적 절차니 하는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 있다. 인권의 가치와 민주적 절차를 일일이 지키는 것은 개인적 안전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그런 괴물이 국가의 안보자체를 위협하는 중복분자들일 때에는 인권과 민주적 절차 따위는 얼마든지 유보해도 좋다는 것이다. 중복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러므로써 우리 개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괴물이요 비정상인이며 위험한 인물들이다. 이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중심적 일탈을 승인하고 지지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애국인 것이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현재의 애국주의와 중복공세은 정확히 대중들의 공포, 즉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와 그로 인해 부상하는 안전중심주의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국가는 대중의 삶의 상대적 안정성을 해체하는 중심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자로 상정된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복을 척결해야한다는 애국주의와 중복혐오는 중복으로 몰린 자들의 인권이나 시민적 권리는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의 권리도 얼마든지 제한하고 유보해도 좋다는 안전중심적 멘탈리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국, 중복, 안전의 삼위일체의 토대가 되는 대중들의 공포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그것은 대중들이 느끼는 공포가 아니라 대중들에 대하여 권력이 느끼는 공포이기도 하다.¹⁷⁹⁾ 우리의 맥락에서 보자면 지배세력, 즉 기득권연합이 대중들에 대해 느끼는 공포란 민주화운동을 통해 들어난 대중들의 반체제적 힘이다. 군부독재체제를 무너뜨렸던 그 힘, 87년체제를 통해서 겨우 체제의 한계 내로 포섭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178) 여기서 언급하는 괴물, 위험한 인물, 비정상인 등과 같은 일탈적 타자의 형상과 권력기술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미셸 푸코, 박정자 역, 『비정상인들』, 동문선, 2001.

179) ‘대중들의 공포’의 이와 같이 양의적으로 포착하는 관점은 스피노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스피노자는 『정치론』 7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은 타키투스의 문장을 인용한다. “대중들은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 (김호경의 『정치론』(갈무리, 2008)에서 이 문장을 “그들이 위협당할 때, 포도들의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번역하여 원문 “Terrere, nisi pavent.”의 뉘앙스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는 발리바르의 번역을 따른다. 발리바르는 이러한 스피노자의 관점을 ‘대중들의 공포’의 양의성을 통해 논의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역, 『스피노자, 반오웰 : 대중들의 공포』, 『스피노자와 정치』, 이제이북스, 2005.

러나 여전히 결국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기득권체제에 균열을 낼 수도 있었던 세력을 다시 집권하게 만들었던 그 힘, 어렵게 되찾은 기득권정권을 초반부터 촛불집회로 무력화시키고 민영화를 저지했던 그 힘, 기득권정권의 연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힘, 그리고 지금 다시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구의 불법적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촛불과 함께 타오르고 있는 그 힘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다.

대중의 이와 같은 힘이 대중을 공포로 몰아넣는 체제에 대한 분노와 접속되는 것에 대한 공포야말로 안전중심주의-안전담론과 안전장치들의 조합-를 구축하고 종북공세와 애국주의선동을 강화해야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안전중심주의의 강화와 확산을 통하여 대중의 불만이 반체제적 힘으로 전화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사익추구조건을 보다 안정화시키려는 것이 현 시기 기득권연합의 중핵적인 정치적 전략인 것이다.

5. 기득권연합의 꿈, 기득권연합의 영속적 우위

나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득권연합이 87년체제의 잔재를 걷어내고 97년체제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부합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체제는 한국의 기득권연합의 사익추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 저항행동을 최대한 억압하는 것을 기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87년체제의 민주적 계기, 즉 대중의 힘을 확실하게 무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체제의 경계 내부에서, 즉 체제 자체를 위협하지 않는 합법적 수준에서도 대중의 힘이 표출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힘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추구된다.

이는 제도 정치적 차원에서는 새누리당 세력의 준영구적 집권을 위한 환경의 구축을 뜻한다.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준 경험이 있는 새누리당 세력으로서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자신들의 집권을 영속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려 했던 것 같다. 치안기구의 강화와 언론장악, 시민사회에 대한 고사전략, 사회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 등이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MB정권은 무능력과 파렴치성으로 인하여 이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는 곧 19대선에서 새누리당 세력(당시는 한나라당)의 집권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세력의 무능력과 무기력과 더불어 정권과 기득권세력의 총력 투입으로 어렵게 2012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새누리당 세력으로서 영구적 집권을 위한 환경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듯 보인다.

그러나 대중적 수준에서 새누리당 세력에 대한 반대 경향도 상당한 수준이고 사익추구블록의 폭력과 배제에 대한 저항운동도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 상황이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세력은 불안한 승리를 거두었고 이어 각종 악재들이 이어지면서 현실적 위기국면에 처해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반대적 입장을 가진 대중적 경향은 사익추구블록과 그들의 정치적 대표자인 새누리당의 새로운 체제

구축 프로젝트의 강력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상태는 기득권연합의 힘이 대중의 민주적 힘을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안한 우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불안한 우위를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우위로 전환하고 그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 가운데서 우리의 토론주체인 종북공세, 애국주의, 안전담론의 의미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의미연관망은 결국 대중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불안을 고취시키며 그 공포와 불안의 요인을 다른 곳으로 투사하려는 시도와 결부되어 있다. 즉 대중들의 삶이 위태롭고 힘겨운 것은, 그래서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기득권연합이 지배 때문이 아니라 위험한 인물들과 세력들-범죄자, 우범인물들, 북한, 종북좌파 등 때문이다-이라고 치환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된 사회운동을 범죄를 엄단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국가의 시도에 반대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으로 낙인찍임으로써 지배질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조직된 사회운동과 결합되는 것, 그리하여 그 결합이 강력한 저항세력으로 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가 현재의 애국주의 선동과 종북담론, 그리고 안전중심주의에 삼위일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현재 성공적으로 관철되고 있지만은 않는 것 같지만... 아직 싸움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패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낳을 것 같다.

[발제IV]

중북 프레임의 원인과 진보 진영의 극복 방안

이도흠(한양대 교수·민교협)

1. 머리말

87년 민주화가 되고 그 주체들 가운데 자유주의자들이 10년 간 정권을 잡으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오늘 중북 논란이 모든 진보적 의제와 실천을 실종시키고 있다. 그것은 유령처럼 모든 대중의 머리와 가슴에 보이지 않게 다가와 그를 보수의 줌비로 만든다. 그것은 마취제처럼 대중의 머리로 스멀스멀 스며들어 그의 이성과 의식을 마비시킨다. 그것은 괴물처럼 정의와 평등, 평화, 공존과 연대 등 인류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주장과 메시지, 담론과 실천을 집어삼켜 버리고 있다.

중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진보적 의제와 정책, 담론, 실천은 늘 장애를 만날 것이다. 중북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진보의 집권은 요원하다. 중북 프레임을 해체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일 또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진보적 관점에서 이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모색한다.

2. 냉전의 잔재+6.25의 기억투쟁 실패→평화협정+평화체제

○ 원인: 냉전의 잔재+6.25의 기억투쟁 실패

진보진영은 시민이 200만 명 이상이나 억울하게 죽은 대중의 6.25의 기억투쟁에서 실패하였다. 전쟁의 원인,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 전쟁에서 정부와 미군에 의해 벌어진 학살, 전쟁이 이후 남북한과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보수적 관점의 기억투쟁이 성공하였고, 진보 진영은 실패하였다. 민간인 학살이 대부분 남한의 군인과 미군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자신에게 불리한 구체적 사실을 은폐한 것도 있지만, 진보 진영이 이에 적절하게 담론 투쟁을 하지 못하였다. '반미=용공'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주변적인 것을 비판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대신, 보수층은 6.25에 관한 담론투쟁을 독점하면서 모든 진보적 담론을 용공이나 이적 행위로 매도하고 주변화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과 주변국은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이를 통해 보수적이고 권위적

인 지배질서를 강화하였다. 이 적대적 공존 체제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수시로 국지전을 단행할 정도로 대립하였고, 이 대립은 북미, 북일, 미중의 대립으로 확대되면서 동아시아가 평화공동체로 가는 동력을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포스트정전체제’는 동아시아에 ‘평화의 선순환구조’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갈등 확산의 악순환구조’를 낳았다.¹⁸⁰⁾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서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채 맞서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중국 패권확보, 핵 선제 타격, 세계 전략, 군산복합체의 추동 등의 사유로 북침이나 북폭을 감행할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명분 아래 권위적 통제 체제를 다지면서 군사력 강화와 핵시위 능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의 핵과 군사 위협을 강조하며 군비를 확장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대다수 진보적 의제를 ‘빨갱이’나 ‘종북()’으로 매도하면서 진보·노동진영을 억압하고 있다. 일본은 이 위협을 빌미로 우익의 집권을 공고히 하고 자위대와 군사력을 강화하고 평화헌법의 수정 담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다시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 동맹하여 중국을 포위하고 동맹국 보호를 내세우며 동아시아의 육지와 바다에서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이들 나라에 첨단 군사 장비체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재차 중국과 북한에 위협을 고조한다. 이런 냉전의 잔재에 바탕을 둔 상호 대결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는 남북은 물론, 미중, 북미, 북일 간의 적대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 점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21세기인 오늘까지도 지역협력체를 결성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가 냉전 및 적대적 공존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대결이다. 지금 남한과 북한은 한국전 이래 최악의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북한은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명분으로 핵무기 투하가 가능한 B-2 폭격기와 F-22전폭기를 동원해 강경하게 맞대응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유지하며 북한과 협상을 기피하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책을 방관하였다. 남한은 87년 체제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으나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동시성’이 상존하였다. 이 비동시성의 바탕 위에서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남북문제를 거의 냉전 체제 수준으로 퇴행시켰다. 이명박 정권은 전 정권의 햇볕정책을 북한 퍼주기라 비판하며 대북강경책만이 안보를 보장한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이 와중에 연평도 해전이 일어나고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민주주의 또한 위기를 맞았다. 이러는 사이에 북한은, 김근식이 잘 논파한 대로, 미국에게서 안보를 보장받고 한국에게서 경제지원을 받는 대외전략을 수정하고, 안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병행하다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선택적 병행’ 전략으로 전환하였다.¹⁸¹⁾ 핵전

180) 조희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정전 60주년이 그 전환점 되어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특별세미나: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불교생명윤리협회, 2013년 5월 24일, pp.7-8.

181)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9권 1호, 2013년 봄호, 193-224.

략 또한 수세적 차원의 ‘자위적’ 핵억지력(defensive deterrence)을 넘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공세적’ 핵보유 국가(offensive nuclear power)의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협상에 치중하고 안 되면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핵확산을 우선 최대화하고 핵보유 능력을 극대화한 연후에 협상 여부를 선택하겠다는 매우 공세적인 대미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¹⁸²⁾

○ 대안: 평화협정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6.25에 대한 기억투쟁을 전개하고, 국가보안법 등 냉전의 잔재를 일소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동아시아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다. 이제 남북한에 드리운 전면전 및 핵전쟁의 그림자를 제거하고 남북한과 동아시아 각국이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및 지역협력체를 구축해야 함은 너무도 자명한 진리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동아시아 정권과 시민사회가 패권적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이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여야 하며, 시민사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이를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인 동아시아”라는 프레임 속에서 화쟁()을 시키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¹⁸³⁾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간 보수층은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대북강경책만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가장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한 정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남과 북이 충돌하였고 한반도 위기는 일촉즉발의 전면전 직전 상태까지 고조되었으며, 북한은 남한에 기대지 않고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오히려 남한은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질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역설적이지만, 가장 강경책을 구사한 정권으로부터 강경책이 남북평화의 대안이 아님을 병사들의 목숨과 맞바꾸고 경제위축을 겪으며 값비싸게 학습한 것이다.

강경책에서 햇볕정책으로 재전환하여 남과 북의 시민이 서로 교류를 하고 경제 협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혜적인 태도를 버림은 물론, 모든 갑을관계, 다시 말해 양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력관계 또한 일소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양쪽의 시민이 서로 눈부처-주체가 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¹⁸⁴⁾

182) “3차 핵실험은 중국의 적극 만류와 오바마 2가 행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가 강경대응의 일환으로 강행한 것이다. 과거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미국을 압박하고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한 위기조성용으로 선택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협상과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지도 않고 선제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고 이는 곧 과거의 ‘협상을 통한 확산’에서 ‘확산을 통한 협상’으로 전략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상 [김근식, 김정은 체제의 대외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질서: 평화의 출구전략],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특별세미나: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불교생명윤리협회, 2013년 5월 24일, p.33.]을 참고함.

183) 이종석,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축과 한반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특별세미나: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불교생명윤리협회, 2013년 5월 24일, pp.12~13.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함.

184) 눈부처-주체는 타자와 무한한 연관 속에서 차이와 가유(假有)로서 주체를 형성하는 자다. 그는 주체로서 모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핵심 현안인 핵문제에서도 눈부처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남한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시점에서 보면, 인민의 상당수가 굶주리는 상황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침략을 억지하면서 북한 주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무조건 없애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월등한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며, 경제에 투여할 비용을 군사력과 무기 증진에 소모하여 가뜩 위기에 있는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것이자 북한 주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철기의 지적대로,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핵을 맞바꾸는 것밖에 없다. 북한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딜레마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없애달라는 것이다.¹⁸⁵⁾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기도 하다.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적 장치라면,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조적 장치이다. 구체적으로는 ①남북관계 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 위한 기반 마련, ②북한의 체제보장을 통한 안보딜레마 해결, ③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확보, ④관련국가들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수교·북일수교를 통한 교차승인의 완성, ⑤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추진, ⑥국제적 평화보장체제로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제들은 서로 독립된 것들이 아니라 상호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되어야 한다.¹⁸⁶⁾

3. 반공이데올로기 강요와 대중의 레드컴플렉스의 내면화→대항이데올로기와 담론 투쟁

○ 원인: 반공이데올로기+ 대중의 레드컴플렉스 내면화

- 군사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부조리를 은폐하고 대중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채택하여 이를 강요하였으며, 분단모순이 계급모순과 마주치면서 대중은 레드컴플렉스를 내면화하고 국가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지배이데올로기로

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소극적 자유를 추구함은 물론, 부조리한 세계에 저항하여 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개조하는 행위를 통해 자기를 실현하는 적극적 자유 또한 구현한다. 하지만, 눈부처-주체는 이에 머물지 않고 동일성의 사유를 뛰어넘어 내 안의 타자, 타자 안의 내 모습을 동시에 보는 자이면서 타자 속에서 불성()을 발견하여 그를 부처로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도 부처가 되려는 자다.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기적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타자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실천을 하면서 진정한 자기를 완성한다. 자기 소외와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고 자기의 혁명과 사회 혁명을 종합한다. 이 순간에 느끼는 희열이 바로 대자적 자유이자 아우름의 '신명'이다.

185) 이철기, 「평화협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쟁점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특별세미나: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불교생명윤리협회, 2013년 5월 24일, p.20.

186) 같은 글, p.18.

정당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상황에서 ‘진보=빨갱이’로 쉽게 매도되면서 정당성이나 국민을 자발적으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상실하였다.

○ 대안:

-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대항이데올로기의 담론 투쟁
- 해방 이후 남북한 역사 및 문학, 철학 공동 교과서 편찬 및 활용
-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한 비판 교육
- 사회주의와 맑시즘에 대한 대중 교육.

4. 냉전·보수 카르텔의 공고함→냉전 잔재의 해소+동아시아 평화 체제 구축

○ 원인

- 친일, 친미, 친독재에 바탕을 둔 기득권층, 대형교회, 보수언론, 군산복합체와 자본, 관변학자로 이루어진 냉전 카르텔의 독점

-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 메커니즘, 일제 식민지 잔재에 미국식 교육이 혼합된 보수적인 교육 체제, 지역주의에 종속된 선거 시스템 등이 진보적 담론 생산을 막고 보수적 담론의 확대재생산을 주도하였다.

- 남한과 북한, 남한과 일본, 남한과 미국의 적대적 공존
- 미국의 제3세계 및 대 한반도, 동아시아 전략
-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

○ 대안

- 진보 정당의 단일화와 집권

- 근대국가를 초월한 동아시아 시민의 연대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축함.

첫째, 왕후이가 지적한 대로, 아시아의 협력은 패권과 독점, 일국 지배에 반대하는 폭넓은 사회운동의 일부이어야 하고, 그 전제는 아시아 사회의 비판적 국제주의여야 한다.¹⁸⁷⁾ 구체적으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WSF)과 같은 조직인 동아시아 사회포럼(East Asia Social Forum)을 구성한다. 반세계화와 반신자유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동아시아의 서발턴, 시민단체와 지식인이 매년 대회를 열어 동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를 해체하는 실천 활동과 대안에 대하여 의논하고 실천의 방향을 결정하며 국제연대를 모색한다.

둘째로, 동아시아 시민이 연대하여 자유로운 개인의 합리적인 성찰과 화쟁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 공공영역(Öffentlichkeit)을 증대한다. 이는 왕후이()가 제안한 하버마스 식의 공공영역에 동양적 공공성(公共性)을 종합한 것이다. 서양에서 교회권력에 맞서서 시민사회(civilis societas)가 등장하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18세기에 ‘계몽의 기획’

187) 왕후이(),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이옥연 옮김(서울: 창작과비평사, 2003), p. 243.

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시민 사회 사이에 공공영역이 형성되었다.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 가운데 의사소통적 이성을 갖춘 공중(public)들이 집단을 이루고, 이들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을 공동의 장으로 끌고 와서 공공의 쟁점으로 바꾸어 토론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반면에, 동아시아는 전통의 공동체가 국가로 통합되고 유교에 바탕을 둔 관료체제가 작동되면서 사익(私益)을 억제하고 공익(公益)을 추구하자는 대의가 정치영역만이 아니라 생활세계까지 지배하면서 일찍부터 서양과 다른 공공성을 추구하였으나 자유로운 개인의 합리적인 성찰과 민주적 토론은 부족하였다. 공권력의 공(公)에 대한 동아시아인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감투를 중시하고 관료를 존중하기에 국가의 일을 사적인 일에 앞세워 먼저 수행한다. 하지만,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이에 균열을 내며 저항하였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인에게 공(公)은 공익(公益)만이 아니라 공정(公正)과 공평(公平)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각 마을 단위로 지배층이 침탈할 수 없는 민중들의 영역인 두레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인민주권을 확보하였으며, 마을의 공터인 마당을 중심으로 공론을 형성하고 필요할 경우 노동력과 생산도구, 생활도구 등을 호혜의 원리에 입각하여 서로 빌려주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다가 양반 지배층이나 관(官)이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생각하면 이에 집단으로 저항하였다. 조선시대의 수많은 민란과 일제 시대의 의병운동도 두레를 기반으로 조직되었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을 주체로 하여 두레 공동체를 결성하고 여기서 공정(公正), 공평(公平), 공공(公共)으로서 공공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동아시아의 근대를 ‘차이와 다종(多種)의 근대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자본주의만 하더라도 똑같은 양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며 다종의 자본주의(varieties of capitalism)가 있다. 영국, 미국 등의 자본주의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자본주의(liberal Capitalism)라면, 독일과 일본은 비자유주의 자본주의(non-liberal Capitalism) 체제이다.¹⁸⁸⁾ 다종의 자본주의가 있는 것처럼, 서양의 근대성이라는 개념과 범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거나 서양의 근대성을 수용한 이후에도 서양의 제도적 형식이나 구조로 수렴되지 않는 ‘서양 외부의 근대성(modernities of outside the West)’이 있다.¹⁸⁹⁾ 근대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똑같이, 같은 방향과 과정으로, 같은 힘의 크기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근대, 근대성은 근대 프로젝트의 방향에 따라, 근대성의 토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근대를 기획하고 실천한 주체들의 성향과 이들 사이의 권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제 차이의 관점에서 각 나라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토대, 문화, 전통, 제도 등과 아울러 총체적으로 연구하되, 헤게모니와 담론이 투쟁하는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조사와 해석을 병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과 현대, 내부와 외부, 동양과 서양, 진보와 보수가 서로 섞이기도 하고

188) Kozo Yamamura and Wolfgang Streeck(eds.), *The End of Diversity? Prospects for German and Japanese Capitalism*(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189) Volker H. Schmidt, “Multiple Modernities or Varieties of Modernity?”, *Current Sociology*, Vol. 54, No. 1, 77-97 (2006), pp.81-82.

이데올로기 투쟁과 헤게모니 투쟁, 인정 투쟁과 기억 투쟁을 벌이기 때문이다.¹⁹⁰⁾ 이는 서양의 근대와 다른 근대를 동아시아에서 찾아야 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패러다임과 방법론으로 동아시아 근대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로, 와다 하루끼 등에 의해 이미 제안된 것으로 두만강 경제특구,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을 확립하고 러시아와 동아시아를 횡단하는 철도와 국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동아시아 사이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한다.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매개는 호혜적 교환 체제를 생활세계에서부터 국가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활성화하는 것이다. 환대하는 손님이나 타자에 대한 배려는 윤리적 목표일 수는 있어도 현실성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개인간이든, 집단간이든, 국가간이든, 관계의 핵심은 소유와 교환의 역학관계다. 소유와 교환 가운데 무엇을 더 지향하느냐에 따라 손님과 이민족은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일 수도 있고 반가움과 환대의 대상일 수도 있다. 소유를 더 지향하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지만, 교환을 더 지향하면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진다. 경제적이든 비경제적인 영역이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동아시아에서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 다양한 종류의 교환이 오고갈 수 있도록 교환체제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그 전제 조건은 물질적으로는 부등가 교환이라 할지라도 무형의 가치를 환산하여 호혜적인 등가교환으로 간주하여 주는 것이다.¹⁹¹⁾

이처럼 화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동아시아 시민들이 눈부처 주체가 되어 교류와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동아시아사회포럼(East Asia Social Forum)을 조직하고, 정부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도 글로벌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의 안보협력체, 경제협력체, 문화협력체, 환경협력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상품에서 지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동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강화하는 평화의 선순환체제를 구축하고, 어느 정도 조건이 성숙하면 동아시아 시민의회, 공동 정부, 공동 사법부와 군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¹⁹²⁾

5. 노동자의 BG화→연대정신회복과 노동 참여 민주제

○ 원인

- 90년대 증권붐과 부동산 투기 붐,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상당수 노동자가 ‘자본가형 노동자(capitalist worker)’, 혹은 ‘중산층적 프롤레타리아(bourgeois proletariat)’로 전환, ‘하얀 탈을 쓴 흑인’처럼 구체적 현실은 노동자이지만,

190) 상세한 논의는 이도흠, 근대성 논의에서 패러다임과 방법론의 혁신 문제, 『국어국문학』, 153집, 국어국문학회, 2009년 12월 30일을 참고하기 바람.

191)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일방적 퍼주기라 생각하면 남한의 보수적인 국민은 반대한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안보 강화와 평화 보장, 통일비 절감,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의 이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면 교환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192) 동아시아 시민의회는 국가나 지역에 관계없이 직능대표제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의회의 정원을 10,000명으로 한다면, 노동자가 동아시아 가운데 60%라면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10,000명 중 6,000명을 노동자로 선출하는 것이다.

정치경제적 성향은 자본가나 중산층이 되어 버렸다.

- 노동자 중 상당수가 부르조아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게임, 대중가요 등 노동자가 향유하는 대중문화가 탈계급적이고 탈정치적인 것 일색이어서 민노총 소속 노동자처럼 계급의식과 주체가 확고한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노동자가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대안

- 48%, 1470만 표+반신자유주의 99%의 저항을 바탕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확고히 함.

- 노동 배제의 대의제 민주제에서 노동자 참여 민주제로

- 대의제 민주제의 개혁하여 정치적 재현의 위기의 극복, 독일식 비례대표제, 양원제 의회 개혁, 하원은 10000명 규모의 직능대표제로 하여 노동자가 50% 이상을 점유하게 함.

- 물 없이 물고기 없다. 무엇보다 지역, 뿌리 중심의 진보 운동.

- 노동자 연대 정신 회복 필요함.

- 합법적 투쟁으로 노조조직률 제고(2010년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9.7%)

- 민노총의 재건(정파주의 극복과 비정규직 연대)

- sub-culture로서 노동자 문화 건설과 향유

6.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진보의 재구성

○ 원인: 신자유주의 모순 심화와 과잉욕망+경쟁의 내면화+노조의 파괴와 진보의 괴멸

- 86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불안 속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월급을 받으며 겨우 삶을 연명하고 있다. 사측은 회계조작까지 불사하며 극단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해고하고 이에 항의하면 국가폭력과 용역폭력이 난무함. 720만 자영업자들의 절반인 57.6%가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만 키우고 있고, 이도 여의치 않아 다단계판매로 나선 415만 명 가운데 3/4이 단 돈 1원도 벌지 못하였다. 번듯한 직장의 정규직 노동자라 할지라도 전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감당하면서도 치솟는 물가와 교육비 부담으로 정도만 다를 뿐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임. 가계부채는 2,000조 원에 달하여 국가 디폴트 상태인 그리스와 스페인보다 나쁜 상황임. '하우스푸어'에서 '에듀푸어'에 이르기까지 99%의 국민이 생존에 허덕이고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절망과 좌절, 분노를 자살이나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분출하고 있음.

- 이런 야만에 당사자인 노동자가 맞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임시고용, 파트타임제 등을 확대하고 독자계약제로 전환하여 노조를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

었다. 게다가 연봉제 등으로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기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노동자의 연대는 급속히 붕괴되었다. 노조가 힘을 잃자 초국적기업은 해고를 무기로 임금을 무자비하게 삭감하고 노동자 복지를 속속 폐지하였다.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하고 기업의 흡수 및 합병(M&A)을 자유자재로 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의 철폐와 복지의 축소를 요구하였다. 대한민국은 여기에 더하여 용역과 경찰을 동원하여 저항하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것으로 모자라 손배가압류, 구상권과 같은 경제적, 사법적 압박을 강제하여 노조를 거의 와해하였다.

- 그럼에도 이 체제가 별로 저항과 도전을 받지 않는 것은 이 체제의 최대의 피해자인 대중마저 화폐증식의 욕망, 곧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욕망을 추구하고 경쟁을 내면화하였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심화하자 사회구성은 가운데가 불룩한 열기구형 사회에서 가운데가 거의 사라진 모래시계형 사회로 이전하였다. 여기에 복지책은 거의 사라지고 사회적 안전망은 해체되었다. 상위의 기득권만 제하고는 모두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사회윤리와 도덕, 공동체의 미덕은 차츰 사라지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그들은 주변에서 기업이 도산하고 동료들이 퇴출당하는 것을 겪으면서 노동자의 조직보다 기업 경쟁력을 더 중시하게 되었고, 고용 안정성과 기업 경쟁력을 동일시하게 된다. 노조는 노동운동에 의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을 통해 자기들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경향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은 능력주의와 경쟁제일주의를 시나브로 수용하게 된다. 특히, 이는 구조조정을 겪은 사업장이나 개인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 대안

중국의 좌파 자유주의자나 한국의 자본주의 4.0이나 윤리적 자본주의의 지지자들은 시장의 균형과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자본주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 대한 환상의 소산이다.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이 잘 통찰한 대로, 거대 이윤의 원천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의 작동을 억제하는 독점이다.¹⁹³⁾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정한 시장이란 불가능한 유토피아이며, 권력의 시장화와 시장의 권력화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현상이다.¹⁹⁴⁾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가장 핵심 원인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면서 이윤율이 저하한 데 있다. 세계의 헤게모니가 이태리→스페인→네덜란드→영국→미국으로 이동한 핵심 요인 또한 이자율이다. 이자율이 최저를 기록하게 되면 반등이 있더라도 대체로 헤게모니가 종식되고 새로운 헤게모니가 등장한다.¹⁹⁵⁾

193)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19세기 패러다임의 한계』(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pp. 264-283.

194) 汪暉·柯凱軍, 「關於現代性問題答問」, 李世濤 主編, 『知識分子立場-自由主義之爭與中國思想界的分化』(時代文藝出版社, 2000), p.134. 백승욱, 「신자유주의와 중국 지식인의 길찾기」 『역사비평』 55호, 역사비평사, 2001년 5월. p.286. 재인용.

195) 박희, 앞의 글, p.34.

일본 민주당이 실패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듯, 제3의 길은 성장과 복지 모두를 손에 쥌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놓쳐 버렸으며, GDP대비 무려 200%에 달하는 정부부채(882조엔)만 남긴 채 신자유주의의 아류로 전락하여 버렸다.

이런 사례와 논증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토대를 중심으로 하되, 그 개혁은 급진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모순의 희생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노동자 등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연대 조직을 결성하여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 자체를 해체하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철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연대체를 중심으로 민노총을 새롭게 건설하고, 이 연대체와 민노총을 중심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통합진보당과 자유주의 세력과 야합한 정의당 외부에 새로운 진보 정당을 건설한 후 통진당과 정의당의 좌파를 흡수한다.

새로운 진보 정당이 '제도정치와 비제도 정치의 변증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새로운 진보 정당이 사회운동적 정당, 비제도적 투쟁정당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되 대중정치와 지역정치에서 축적한 역량에 기반을 두고 제도정치, 의회정치로의 진출도 적극 추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 실현을 당의 최종 목표로 삼되 신자유주의 반대를 자본주의의 극복과 결합시킬 구체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강정책을 마련한다. 계급 문제와 민족 문제, 생태문제의 중층결정을 하여 적녹보 연대를 추구한다. 이를 전국적 연계망으로 하여 지역에서부터 풀뿌리 조직을 활성화하고 이를 당이 수렴하는 구조를 형성한다.¹⁹⁶⁾

다음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그 바깥에서 해체하는, 지역에 근거를 두면서도 세계화를 지향하는, 협의를 통한 주민 자치를 실현한 지역공동체를 동아시아 곳곳에 건설하고 이의 지혜와 실천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연대체를 만드는 것이다. 필자는 '눈부처 지역공동체'를 제안한다. 이 공동체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노동을 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고 모든 생산수단과 도구를 공동의 소유로 하되, 생산의 60%는 필요에 따른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하고 나머지 20%는 재투자자를 하며, 20%는 개인의 능력별로 인센티브를 준다. 몬드라곤처럼 노동이 자본을 통제하며 구성원간 노동의 목적과 방법에서부터 분할 비율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개인은 눈부처-주체로서 자연과 공존하고 타자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소욕지족()의 삶을 산다.¹⁹⁷⁾

넷째로, 반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담론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필자가 한진중공업 사태나 쌍용자동차 사태 때 언론기고, 논문 등을 통하여 주장한 대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철폐 주장이 좌파적 발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매년 기업이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의 단지 1.5%만 투자하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¹⁹⁸⁾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허구에 불과하며 분수효과(fountain effect)

196) 김세균, 「한국진보정치의 회생을 위한 제언」, 『사상이 필요하다』(서울: 글항아리, 2013), pp.223-224.
197)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도흠,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안으로서 화쟁의 사회경제학」, 『불교학연구』 33호, 한국불교학연구회, 2012년 12월.]를 참고하기 바람.

가 타당하다. 성장과 복지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다. 이는 미국 부시정권의 사례로 증명이 되었으며, 이명박 정권에서도 매년 20조 원의 부자감세를 하고 30조 원을 투자하여 4대강 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공황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세계 경제학자들은 “부유층의 세금 및 저소득층에 복지 및 지원 증가→ 소비증가 → 생산증가 → 경기부양”을 야기하는 분수효과가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로, 미국에 맞서서 동아시아의 금융과 신용의 자립을 꾀하는 것이다. IMF 맞서서 동아시아 개발은행,¹⁹⁹⁾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무디스 코퍼레이션(Moody's Corporation)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한다. 동아시아 각국이 공동으로 투자지분을 할당하면 된다.

7. 서민들의 여당과 국가의 동일시+애국주의→민중의 집+담론 투쟁

○ 원인

- 서민들은 단순히 의식의 각성이 덜 되었다기보다 여당과 국가를 동일시하고 애국주의에서 여당을 선택하고 중복의 논리를 국가로, 중복비판을 애국적 실천과 동일시함.

○ 대안

- 민중의 집
- 담론 투쟁

8. 마무리하며

“노조가 무력한 그 지점에서 시민이 연대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희망버스처럼, 시민이 연대하여 탐욕의 극단으로 달리는 신자유주의를 해체해야 한다. 이제 자본의 야만, 자본과 국가의 유착, 양자가 모의한 폭력, 1%의 부패와 수탈을 견제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들을 되살려 제도화하여야 한다. 세계 차원에서는 토빈세를 제정하고, 브레튼 우즈 기관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각국이 중앙은행을 스스로 감독해야 하며, 개도국의 외채를 조건 없이 탕감해야 한다. 각국 정부에 대한 국제채권자들의 압박에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전세계 사회운동과 시민사회가 광범하게 결집해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UN처럼 국가가 아니라 세계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국제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저항과 연대의 세계화’가 없이는 ‘빈곤의 세계화’를 막을 수 없다.

그럼, 이 상황에서 진보·노동진영은 어떻게 길을 낼 것인가.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

198) 2011년의 조사의 경우 한국의 30대 기업에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해 30대 기업이 올린 당기순이익 49조 7천억 원의 1.5%인 7천 9백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시사저널〉, 2012년 10월 31일.]

199) 동북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와다 하루끼교수()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이원덕 옮김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4), p.259에서 제시한 바 있다.

지만, 길은 늘 막다른 곳에서 열린다. 파괴는 창조다. 절망의 극단에까지 나아가서 뺏속까지 성찰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지금이라도 정파주의, 관료화, 이기주의, 구태의연함을 말끔히 씻어내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굳건히 연대한다. 금융과 토지, 공장을 포함한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화, 노동이 진정한 자기실현인 사회, 노동이 자본을 통제하는 세상을 향한 굳건한 목표 아래 모든 정파와 갈등을 녹여내야 한다. 노조 간부들의 관료화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 활발한 소통을 하며, 정당이든 조합이든 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의 민주주의를 확보한다. 집단 이기주의를 일소하고 끈끈한 동지애와 굳건한 투쟁의지를 갖고서 민주 노조 깃발 아래 연대한다. 김혜진 정책위원장의 제안대로, 한 사업장의 투쟁이 그 사업장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싸우자. 단순히 노동약법을 개선하는 방어적 자세에서 노동배제를 심화하고 노동자의 죽음과 장기사업투쟁을 야기하는 노동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싸움을 하자.

머리는 가슴을 이기지 못하고, 가슴은 발을 이기지 못한다. 희망은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노동자들, 집회와 희망버스에 참여하는 시민,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99%로부터 꽃필 것이다. 통진당 사태는 NL 중심의 진보 운동의 종언을 의미한다. 진보정의당은 자유주의자와 단절하지 않는 한, 진보의 대열에 설 수 없다. 쌍용차에서, 현대자동차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보신당, 사노위, 노동전선 등을 아울러 통진당과 진보정의당을 제외한 진정한 진보좌파정당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혁신을 통해 다시 구성된 민노총이 결합해야 한다. 이제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로 전선을 명확히 하고 노동을 중심에 놓고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하되, 탈핵 등 생태와 복지, 사회정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결합하자. 노동과 환경, 소수자, 소위 적녹보 동맹을 맺자. 환경은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 없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함을 수용하고, 여성과 소수자 또한 가부장적 폭력과 배제가 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받아들이자. 그 전제 아래서 환경운동과 소수자 운동과 연대하자.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되, 용산참사, 강정마을, 4대강에서 싸우던 이들과 함께 하자. 멀리 보고, 지역에서부터 풀뿌리 운동을 하고 또 이를 통하여 조직을 확대하자. 한국인의 강한 공동체 지향성을 꼬문에 결합하고, 신명이 나는 싸움을 하자.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투쟁과 함께 노동현안을 사회적 쟁점으로 삼는 담론 투쟁을 하자. 그리하여 노동배제의 이 사회를 끝장내고 진정으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자. 어두울수록 별은 밝게 빛나고 길은 멀리 열려 있다.”²⁰⁰⁾

200) 이도흠, “민주통합당의 패인, 진보의 지표와 재구성”, <프레시안> 2013년 1월 10일.

[토론문] 공안기구의 중복담론 활용에 대하여

박주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중복담론의 의미

“중복담론”은 법질서나 기본권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담론체계나 권력운용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비상상황”을 만들어 내거나 정당화하는 담론의 일종이다.

따라서 “중복담론”이 어떻게 발생하고 활용되는지를 보려면 “비상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거나 활용되는지를 보면 된다.

2. 권력에 의한 활용

권력은 자신을 한계 지우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싶어 한다. 이러한 모습은 크게 지배를 강화할 때(전쟁 수행 시기 등 국민을 동원해야 할 때) 혹은 지배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워터게이트 사건 등 권력붕괴의 시기) 표면으로 나타난다.

현대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족쇄는 법과 기본권이다.

이러한 족쇄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비상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비상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하여는 이성과 논리보다 감성과 이기심이 먼저 동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적”의 존재와 그 위험을 강조하는 것이다.

<장면1>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던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할 지시했다. 당시 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던 인물 가운데 맥커드는 전 CIA 요원이라 세상이 발각 뒤집혔다. 이렇게 되자 닉슨 대통령은 '국가 안보 비상 사태'라고 주장하며 FBI의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CIA에게 중단토록 지시했다.

3. 시민사회에 의한 호출? 혹은 권력과 시민사회의 조응?

반면에 시민사회가 공포심이나 이기심으로 이성적 사고가 마비된 상태에서 강력하게 비상상황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원초적인 공포나 적개심 혹은 이기심이 그 매개가 된다.

<장면2> 1941년 12월7일 진주만 공습이 있었다. 워싱턴에 이미 이를 예측한 보고가 들어왔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당한 진주만 공습은 미국을 패닉 상태로 빠뜨렸다. ‘니세이’(미국 이민 2세대 일본인들을 일컫는 말)들은 진주만 공습을 그들이 그 후 3년 동안 겪은 수난의 시작으로 본다.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미국 내의 반(反)일본 감정이 극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듬해 봄 격리되기 시작할 때까지 니세이들은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도 살 수 없었을 만큼 철저하게 따돌렸다. 주유소와 상점마다 ‘일본인 출입금지(Japs are not wanted)’라는 글자가 써어 있었다. ‘잡스(Japs)’란 ‘칭크’ ‘조센징’ ‘깜둥이’ 같은 말들처럼 일본인을 격하시켜 부르는 말이다. 그것 말고도 일본인들은 ‘미친개들(Mad dogs)’, ‘황색 쓰레기(Yellow vermin)’ 등으로 불렸으며, 외국 여행도 전면 금지됐다. 신문들도 법석을 떨었다. 진주만 공습 바로 다음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캘리포니아를 ‘위험지역’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현재 수천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다. 그중 일부는 좋은 미국 시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중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 일본의 중요한 무기 역할을 하는 배반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이 1941년 12월8일부터 이듬해 2월23일까지 특집으로 다룬 일본 관련 기사의 제목만 봐도 당시 재미 일본인들이 겪었을 위기감을 실감하게 된다. 즉 ‘잡스들의 배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불빛이 보인다’, ‘베이 시티에서 카메라 들고 있는 잡스 검거’ ‘일본인들의 토마토밭, 토마토 꼭지가 우리 해군기지를 겨누고 있다’, ‘잡스, 오는 4월 미국 공격 준비’ 등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토마토밭까지 의심하고 그들을 스파이로 모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영향력 있는 우익 칼럼니스트였던 웨스트브룩 페글러는 신문 기고를 통해 ‘이열치열 작전’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미 일본인들을 격리 수용한 뒤 이들 중 100명씩을 골라 총살하는 것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감정적인 애국주의, 이른바 징고이즘이 힘을 더해갔다. ‘민간인 격리 명령서’를 받은 재미 일본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겨를도 없이 부랴부랴 짐을 싸야 했다. 우선 정해진 집결장소에 모였다 거기에서 다시 그룹으로 나뉘어 각 수용소로 이동됐는데, 이때 소지할 수 있게 한 물건은 침구류, 화장실 용품, 의류, 은그릇류와 귀중품들로 제한됐다. 그나마 ‘가져온 물건 모두 캠프로 함께 운송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 가구나 자동차, 침대 같이 덩치가 큰 물건들은 정부 보관소에 맡겨졌으며, 분실이나 훼손의 책임은 전적으로 소유자가 진다는 조건도 붙어 있었다. 격리 방침이 정해진 지 4개월 만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일본인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일본계 혈통을 가진 이들 가운데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은 유일한 부류는 미국인 백인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FBI로부터 수사를 받은 뒤에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FBI는 수사관들이 가가호호 돌며 이들에게 ‘미국에 충성을 맹세하는가?’ ‘미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는가?’ ‘누군가로부터 미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따위의 질문을 던진 뒤 만족한 답을 들어야 ‘면제권’을 줬다. 이렇게 해서 ‘특혜’를 받은 여성들을 빼고도 12만명에 이르는 수용소 인원 중 3분의 2 가량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었다는 사실은 훗날 미국이 이 사건을 ‘최악의 실수’라고 인정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니세이’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2차 대전 중 역시 미국의 적대국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서 일본인들만 격리한 것을 두고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주장이 나올 법도 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라고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앵글로색슨계 이민자들 외에는 환영받지 못했다. 이민자들은 늘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에 종사했고, 저임금과 비인도적 처사에 시달렸다. 기독교자들이 수시로 바뀌대는 법령에 따라 일자리를 잃거나, 징역을 살거나, 미국에서 쫓겨나곤 했다. 아시아계 이민으로 가장 먼저 미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골드러시’를 좇아 온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철도 건설에 동원됐다. 그 후 이들의 노동력으로 철도가 웬만큼 건설되자 1882년, 중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금지되는 법령이 공포됐다. 1868년 하와이로 첫 이민을 간 일본인들이 미국 본토에 들어가기 시작한 1880년대에 이미 미국에는 중국인들을 상징으로 하는 아시아인 차별 분위기(Anti-Orientalism)가 팽배해 있었다. 같은 업무라 해도 백인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가 컸고, 백인 우월주의는 차츰 세를 더했다. 백인 거주 지역에 아시아인들이 이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대단히 노골적이어서, ‘잡스, 그냥 지나가라. 이곳은 백인 거주지역이다’라든가, ‘잡스 진 입 금지. 우리는 잡스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슬로건들이 할리우드 지역 주택가에 뽀뽀 붙어 있었다. 한 백인 여인이 슬로건을 가리키며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은 당시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 형편에도 일본인들은 점차 세를 불려 2차대전이 발발할 당시까지 인구가 12만7000명까지 늘어났다.

4. 비정상적 “비상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최근에는 모든 것에 다 안보가 붙는 상황이 되고 있다. 비상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적이 사라진 지금 오히려 모든 것이 적이 되었고, 나 이외에는 모두 다 적이라고 생각하고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비상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법과 기본권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기존의 합의들은 시도때도 없이 무력화되고 있고, 국가기관들은 자신들이 비상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권한과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 대해 통제를 하려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

<장면3-1>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자체 보유 무인공격기 대수를 30%가량 대폭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CIA는 현재 약 30~35대로 추산되는 자체 무인기에 10대를 추가하는 계획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존 브레넌 백악관 테러담당 선임보좌관이 이끌고 CIA·국방부·국무부 등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팀이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작년 12월)

<장면3-2>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드론(무인기) 작전 통제권을 국방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놓고 미 정치권에 격론이 일고 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그간 무인기 프로그램을 CIA와 국방부로 이원화해 운영해 왔으나, 이 중 CIA의 작전은 지나치게 비밀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무인기의 오폭 사고로 민간이 희생되면서 외국의 강한 비난을 사고 있는데다 최근 미 대통령이 국내에서도 드론 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입장 표명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더욱이 CIA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내용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의원들의 불만이 커졌다. (올해 3월)

법치와 기본권을 둘러싼 새로운 아니 늘상 있어 왔던 싸움이 새로운 형태로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 싸움에서 권력의 요구에 대해 법치와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이겨왔던 역사가 반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공안기구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 마련
- 기본권을 강조하는 담론구조가 형성
- 평화담론, 평화권 그리고 남북간 또는 동북아 내의 평화체제

[토론문] 반차별운동과 종북 : 반차별감수성이 종북계이와 만나면!

훈창(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1. 들어가며

종북의 광풍이 한차례 휩쓸고 간 지점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금 상황에 대한 공동의 인식 마련과 운동 간의 연결을 통한 대응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에 대한 가능성을 마련하길 바란다.

반차별운동이 기존의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거리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다. 이는 반차별운동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에 사상적·정치적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만, 반공과 국가보안법을 차별로 접근할 경우 가진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북담론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과는 다른 결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가에 의해 특정한 정치세력이나, 국가와 자본에 맞서는 집단 탄압의 형태였다면 종북담론은 애국주의, 안전담론에 기반을 두어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차별운동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에 대한 저항만이 아닌 사회와 자본이 지배하는 권력과 질서에 대한 운동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2. 종북담론에 대한 문제제기

종북담론이 반공이데올로기가 가진 성격과 전혀 다르다 볼 수 없다. 한반도는 해방이후 반공과 국가주의가 지배한 역사가 존재하며, 북문제는 여전히 50대 이상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박근혜 정권 또한 이를 이용하여 취임이후 6개월간 남북문제를 끊임없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며 자신의 안정된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하지만 종북담론을 기존의 것으로만 이해할 순 없다. 한성훈의 발제문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이미 기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선동일 뿐이다”고 이야기 하듯 종북은 정치적 의미나 담론의 언어가 아닌 증오·선동과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종북담론이 소환하는 집단 또한 달라지고 있다. ‘종북계이’ ‘종북페미’ ‘이주노동자’로 소환되는 집단은 기존의 반공이데올로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집단이다. 또한 시민사회 그룹, 전라도사람에 대한 소환은 과거 반공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맞물리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정훈의 발제에서 애국주의와 종북공세를 함께 이야기한 점에서 우리는 종북담론의 실체를 봐야 한다. 또한 지배체계가 가지는 위기구조에서 이들이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는 내부의 적, 특정한 집단을 만들어 내고 소환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대중들의 삶은 극심한 불안에 휩싸인다. 이때 체제는 대중의 불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소환한다. 여기서 소환된 누군가는 차별의 가장 약한 고리에 위치한 집단이다. 여기서 한국사회가 가진 독특한 형태가 등장한다. 종북은 차별의 가장 약한 고리에 위치한 집단을 낙인찍으며 등장하며 기존의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집단으로 호명된다.

이와 같이 지배체제는 대중들의 불만의 원인을 타자에 돌리게 한다. 유럽의 극심한 인종주의, 아프리카의 동성애혐오, 일본의 재일조선인과 중국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지금의 종북담론과 다르지 않다. 종북담론은 결국 현실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의 원인을 타자에게 투여하며 발생한 것이며 전통적인 탄압의 대상에서부터 기존의 질서와 다른 이들을 지속적으로 타자화 시키며 강화된다.

3. 운동이 종북담론과 맞서기 위해

반차별운동은 남성, 이성애, 국민,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권력구조를 균열내고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와의 싸움을 통해 모든 사람의 평등을 주장해 왔다.

또한 반차별운동은 사회에서 배제되어지는 사람을 끊임없이 호출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의 성격을 만들어야한다 주장해 왔다. 차별과 불평등의 폭력에서 흩어지는 사람들, 배제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을 들려줌과 동시에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를 자신의 서사를 통해 이야기 할 수 있는 힘을 만든다. 그리고 그 서사가 연결되며 사람들의 힘은 연대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연대를 만드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아닌 자신의 서사를 통한 연대는 지금의 체제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다.

또한 종북담론이 노리는 타자에 대한 배제가 우리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을 위협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단지 정치적으로 진보집단에 대한 탄압만으로 해석할 경우 종북담론의 진면모를 노칠 수 있다.

타자에 대한 배제는 차별을 정당화한다. 차별의 정당화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불평등이 합리화 되는 사회이며 특정한 집단은 우리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위치한 사람이다. 종북담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은 신자유주의에서 노동자를 분리와 분열하며 만들어낸 착취구조와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운동이 종북담론과 맞서기 위해서는 종북담론 속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을 직

면하며 시작해야 한다. 똑똑 억누르고 감추려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중복담론에 대응한다면 그 힘이 가는 방향은 불평등과 차별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하며 또 다른 분리와 분열의 힘을 만나 좌초되기 쉽다.

덧붙여 중복담론과 맞서 싸우는 힘이 하나의 담론, 하나의 뭉쳐진 힘으로 이야기 되지 않아야 한다. 단일한 담론과 힘은 특정한 담론과 집단에서 위계를 만들고, 대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배제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위계 지어진 운동에서 보편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소수자들을 운동의 변방으로 몰아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할 운동이 정작 낮은 곳의 목소리를 지웠던 경험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거대담론에서 시작하여 소수자에 대한 배제를 스스로 자임했던 운동의 역사와 반성 없는 현재가 운동의 연대를 가로막는 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반차별과 평등에 대한 고민 없는 운동은 분리와 분열을 통한 지배전략에 대응 할 수 없다. 지금 중복담론에 대응하기에 앞서 운동사회는 다시 반차별을 고민해야 한다.

[토론문] 중복담론과 국가보안법

이광철(민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1. 국가보안법 폐지의 조건

-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첫째, 남북관계의 개선 내지 호전²⁰¹⁾을 통한 국민여론의 국가보안법 폐지여론 고조, 둘째, 집권세력의 민주주의관과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 밖에 없음.

- 민주주의 친화적 집권세력의 존재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조건이고, 남북관계의 개선 내지 호전을 통한 국민여론의 국가보안법 폐지여론 고조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주주의 친화적 집권세력의 존재라는 필요조건과 남북관계의 개선 내지 호전을 통한 국민여론의 국가보안법 폐지여론 고조라는 충분조건이 결합에서만 가능한 과제임.

-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는 경로는 ①국회를 통한 폐지법안 통과, ②헌재와 법원의 위헌선언을 통한 무력화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 대단히 보수적인 헌재와 대법원의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②헌재와 법원의 위헌선언을 통한 무력화는 기대하기 난망하고,

- 국회의 경우 민주주의 친화적인 정치세력이 다수당이 되고, 국민여론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하여 긍정적일 때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을 것인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갈등과 대결국면이 형성되는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의 동력이 생길 수 없을 것임.

2. 악마적 중복프레임의 결합의 문제

가. 중복프레임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상관관계

-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의 동시 충족의 어려움 외에 악마적 중복 프레임까지 더해진 것이 결정적 원인임.

- 중복프레임은 그 자체로 북한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가로막아 북한

201) 현 분단체제가 미국의 개입에 의하여 비롯되었고, 나아가 한국전쟁이 미국이 주도한 U.N군과 중국의 대결적 구도가 되었고, 이러한 전쟁의 구도에 따라 분단체제가 더욱 공고화되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및 호조도 결국은 분단체제의 해소 내지 와해속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봄. 그러나 이 논의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상대적으로 거대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의 폐기를 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남과 북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국민여론의 국가보안법 폐지여론 고조를 국가보안법 폐지의 충분조건으로 보고자 함

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부정세력을 양산하여 자동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자체를 중복 프레임에 빠뜨리는 악결과를 초래함.

- 나아가 중복프레임은 앞서 언급한 국가보안법 폐지의 두 가지 경로 중 현재와 법원의 국가보안법 해석을 더욱 보수화하도록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국회를 통한 폐지 법안 통과에 관하여도 보수적인 정부여당은 물론 자유주의적 야당세력의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아예 상정의 업무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 아울러 지난 국정원의 대선개입공작에서 보듯이 중복프레임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 친화적인 정치세력으로의 정권교체마저도 중복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는바,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주권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거를 통한 통치자의 선택권을 부인하는 쿠데타적 사태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중복프레임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마저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중복프레임에 의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고장은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결정적인 난관을 초래하는 것임.

- 이로써 국가보안법은 중복프레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중복프레임이 국가보안법을 강화시켜주는 악순환적인적인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바, 따라서 중복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곧 중복프레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투쟁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됨.

나. 진보진영 내에서의 중복프레임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²⁰²⁾

1) 중복개념의 사용의 시발

- 중복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01. 11. 30. 민주노동당 황광우 등이 민주노동당 기관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회당 동지들에게 드리는 7가지 질문'이라는 글 등을 싣고 "조선노동당은 사회당의 적이나"고 공격적 질문을 한데서 비롯되었음.

- 이에 12. 11. 사회당 신석준 대변인은 같은 날자 당 기관지에 실린 `민주노동당 황광우 중앙연수원장에게 드리는 단 한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사회당은 모든 종류의 테러나 전쟁에 반대하며 "남한의 노동계급을 이끌고 북한에 쳐들어가 조선노동당을 물리치는 일이 국가간 전쟁의 범주에 속한다"고 반박하는 한편, "조선노동당의 사회관이 관철되는 통일에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황 원장은 조선노동당 주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체제가 전 한반도화하는 통일에 찬성하는가"라고 공박함²⁰³⁾.

202) 중복개념의 시발에 관하여 이호중 교수님의 발제문 서두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바, 토론자의 논지전개의 차원에서 중복개념의 시발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함

203)한겨레 2001. 12. 12.자 기사문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1/12/003000000200112121445713.html>

검색일 2013. 8. 25.

- 이후 반조선노동당 논쟁에 참여했던 사회당의 원용수 등은 12. 21. 이후 '민주노동당'에서 통합 제안에 반대,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중북세력'과는 당을 할 수 없다"고 중북주의 노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²⁰⁴)면서 '중북'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됨.

2) 개념의 본격적인 유포

- '중북' 개념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전파된 것은 2006년 일심회 사건과 그로 인한 민주노동당의 분열이 결정적 계기임.

- 2006년 일심회 사건에 민주노동당의 일부 당 간부들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민노당 내 민중 민주(PD) 계열은 사건과 관련된 당직자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이에 PD계열 조승수는 민노당 내 다수파인 민족 해방(NL) 계열을 '중북주의'로 규정²⁰⁵)한 뒤 2008년 2월에 우선적으로 탈당했고, 이어 노회찬, 심상정도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함.

- 이후 19대 총선이 끝난 뒤인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은 '중북'이라는 말은 조용필 만큼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는바, 검찰은 통합진보당 내부의 패권의 문제를 패권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치환시켜버린 결정적 주범이라 할 것임.

- 이 한 장의 사진²⁰⁶)은 중북의 이미지에 패권, 반민주주의, 폭력 등의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임.

- 이를 계기로 자유총연맹,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등 보수 시민단체들은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의원들을 "중북 주사파 의원"으로 지칭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심지어 2012. 7.에는 국무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들이 "중북좌파 의원 때문"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일도 있었음²⁰⁷).

204) 연합뉴스, 2001.12.21.자 기사 " " 세력과 黨 같이 안해" "(이충원 기자 작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121514>

검색일 2013. 8. 25.

205)한겨레 2008. 1. 1.자 [왜냐면] 진보의 재구성 필요하다(조승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261602.html> 검색일 2013. 8. 25.

이 글에서 조승수는 이렇게 썼다. "대선 참패에 이어 민주노동당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위로 가든 신당으로 가든 위기의 근원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또 실패할 것임이 명백하다. 민주노동당 위기의 핵심은 두 가지다. 또 다른 하나는 **중북주의**와 이에 바탕을 둔 패권주의가 당내 다수파로 되었다는 점이다. 2004년을 지나면서 다수파가 된 이들은 다수파가 되기까지 당비 대납과 집단 주소 이전, 심지어 부모·친척·미성년자까지 입당시켜 지역위원회를 장악하고 지금은 중앙위원회와 대의원까지 주요 의결기구를 장악하고 있다. 북핵 실험에 대해 자위권 운운하고, 300명에 이르는 당간부들의 중요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조선노동당에 보고했다.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북한에 대한 관계와 태도-에 의구심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아가 득표에서 월등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후보를 제쳐 놓고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여 대선후보로 만들었다. 자신들의 노선과 가깝다는 이유로, 혹은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중요 공약으로 선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206) 사진출처 노컷뉴스 2012. 6. 2.자 기사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59242> 검색일 2013. 8. 25.

207) 2012. 7. 24.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총리실 실무자가 론스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가당찮게 '중북좌파 의원 때문에 안 준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의는 20분 만에 정회했다가 임종룡 총리실장



▶ 지난 달 12일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일명 '머리끄덩이녀'로 불렸던 20대 여성 (중앙일보 제공)

3) 분석

- 이상에서 본바를 정리하면 중복프레임과 국가보안법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기존의 빨갱이, 용공, 친북 개념이 정권 내지 지배세력의 필요에 의한 낙인찍기의 수단이었다면 중복개념은 진보진영 내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었다는 점임.

- 둘째, 기존의 빨갱이, 용공, 친북 개념은 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색깔공세이자 낙인이었고 따라서 진보진영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대응하였고, 국민들도 이에 지지를 보냈으나, 중복 개념은 진보진영 내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이 타방에 대하여 '북한을 추종하면서 패권을 추구한다'는 매우 부정적인 낙인을 찍은 것으로 대중들이 중복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거의 빨갱이, 용공, 친북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됨.

- 셋째, 기존의 빨갱이, 용공, 친북개념이 국민들에 의하여 진보세력과 같은 개념으로 은연중 인식되었으나, 중복개념은 국민들로부터 반민주세력, 패권세력,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외면받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음.

- 넷째, 이에 따라 이른바 중복세력이라고 낙인찍혀진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증해주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중복세력은 기존의 진보진영으로부터도 배척받고 있고, 이들이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이니 이들을 비롯한 국가안보 위해세력에게 국가보안법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그것임.

-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현재 북한에 대한 입장을 거칠게 분류하여 맹목적 반복, 이성

이 "진상조사 후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속개됐다. 경향신문 2012. 7. 24.자 홍리실 <"중복좌파 의원 불러" 자료제출 거부... 정무위 한때 정회 제하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242145545&code=910402 검색일 2013. 8.

25. 이 기사에 따르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부 자료 제출 거부가 잇따랐다.

적 반복, 이성적 친북, 맹목적 친북 네가지로 나누어보았을때 맹목적 친북으로 대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점도 특히 중복개념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긍정시켜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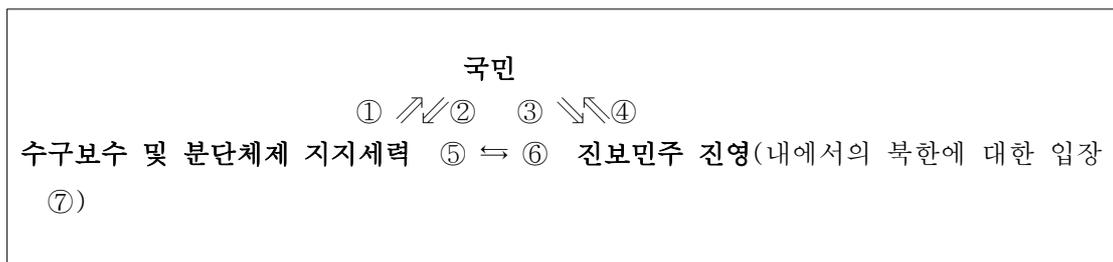
-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직접적으로는 2004년 대대적인 폐지투쟁의 좌절 이후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것이지만, 토론자의 피상적인 관찰에 의하면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진보진영 내부의 관심도 질적인 저하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생각됨.

3. 중복프레임을 탈피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 -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중심으로²⁰⁸⁾

가. 상황의 정리

- 중복프레임이 악마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함.
 - 그러나 중복프레임에 관하여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접근만으로 악마적 중복프레임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 의문임.

- 중복담론 및 국가보안법 폐지담론은 거칠게 비유하자면 국민들을 가운데 놓고 수구보수 및 분단체제 지지세력, 이에 맞서는 진보민주²⁰⁹⁾ 진영이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국면이고 앞서 본대로 결국은 민주주의 친화적인 정권을 세우고, 이속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핵심일 것인데, 중복담론 및 국가보안법 폐지담론이 ‘수구보수 및 분단체제 지지세력’에 대하여서만 중복프레임을 버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하여 과연 국민들이 이에 전적으로 호응해 줄 수 있는지는 의문임.



- 그간의 중복담론 및 국가보안법 폐지담론에서 대체적인 논지들은 ⑤의 지점에서 수구보수 및 분단체제 지지세력의 중복프레임 및 국가보안법의 문제점만을 타격하는 것이 주종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논지의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중복담론 및 국가보안법

208) 아래의 제언은 토론자의 주관적이고 피상적인 생각을 파편적으로 정리한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 양해를 구함

209) 앞서의 진보진영이라는 개념과 달리 ‘진보민주진영’이라고 좀 더 포괄적인 용어를 쓴 것은 국가보안법 문제가 단지 진보세력만의 의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일반원리들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진영 안에 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도 합세되어 있다는 점 때문임

폐지담론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노정한 것이라고 생각됨.

- 즉 진보민주 진영내에서의 북한에 대한 입장(⑦)에 대하여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중복담론 및 국가보안법 폐지담론의 공백을 야기한 것임.

- 그리하여 이에 대한 ‘수구보수 및 분단체제 지지세력’의 반박(비이성적인 비난을 포함하여 ⑥지점)은 별론, ④의 지점에서 그간의 중복담론 및 국가보안법 폐지담론은 스스로 설득력을 약화시켰고 동시에 ③의 지점에서 국민들의 진보민주진영에 대한 의구심을 모두 다 해소하여 주었는지는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바로 이 지점을 수구보수 및 분단체제 지지세력은 계속하여 국민들에게 자극하고 선동하는 것임(①지점).

나. 제언 - 북한에 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자!

- 중복담론의 핵심은 북한 그 자체가 아니라 남한의 진보(민주)진영이 북한(좀 더 정확하게는 북한의 삼대세습,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 이른바 북한의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자세에 있다고 봄.

- 그런데 진보진영 일각의 경우 북한에 대하여 의도적이든 아니든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세력이 진보(민주)진영안에 있는 것이 진보진영의 단결을 방해하고(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국민들의 진보진영에 대한 일정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고, 이 속에서 국가보안법 또한 국민들 속에서 일정부분 용인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려움.

- 북한이 대화와 협력, 나아가 평화통일의 상대이며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배격한다는 데 진보민주진영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나 과연 진보진영 일각이 중복개념의 창안자의 견해 즉, “조선노동당의 사회관이 관철되는 통일”을 바라는 것인지(사회당의 신석준)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점이 중복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일정부분 받아들여지는 아킬레스건의 핵심적인 대목이라고 생각됨.

- 나아가 이러한 아킬레스건이 다시 중복프레임을 강화하고, 국가보안법이 무수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의하여 필요성을 긍정받고 있는 요인이 아닐까 함.

- 그러나 진보진영 일각은 여전히 북한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그 사유로 국가보안법을 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

- 현행법상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의하고 옹호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고무, 찬양, 선전, 동조에 해당하고 아울러 현재 공안당국이 6.15정신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논의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선동 및 국가변란으로 보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감수하여야 할 부담스러운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현재의 북한 이야기의 금기시가 반드시 국가보안법의 존재 때문만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 한편, 북한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감수하여야 하는 문제임에 분명하므로 북한(좀 더 정확하게는 북한의 삼대세습,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 이른바 북한의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기 위하여서라도 국가보안

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진보운동의 강화/발전에도 필수적인 운동이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복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이 양자를 (매우 어려운 일에겠으나) 구분하여야 할 것임.

- 한편으로 작년 통합진보당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관하여는 중복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의 통합과 혁신의 관점에서든 문제의 시발과 사건이 왜곡되게 된 경위 등 그 전말에 관하여 가감없이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4. 결론

- 토론자의 논지를 단순명제식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복프레임의 극복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하여 내용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중복프레임의 극복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 둘째, 국가보안법의 합법적 폐지는 국민들의 지지속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주류적 인적 구성원의 역사성 및 계급성에 비추어, 또한 우리 법원 및 헌재 구성의 관료적, 폐쇄적 성격에 비추어 해석을 통한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는 불가능하다.

-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담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역사성, 성격, 기능에 대한 계속적 폭로를 통하여 ‘수구보수 및 분단체제 지지세력’을 공격하고(앞선 도표의 ⑤의 지점),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활동은 당연하게 계속되어야 한다.

- 넷째, 그러나 이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진보진영내에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기탄없는 토론이 있어야 하고(앞선 도표의 ⑦의 지점), 이것이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어야 한다(앞선 도표의 ④의 지점).

[토론문] '중북 메카시즘'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실천과 연대-통일/평화운동의 실천과제

이대훈

1. 문제의 진단

국가기구의 영향: 보수정권의 연속집권으로 안보와 사법관련 국가기구가 더욱 억압기 구화하고, 이를 통해 중북 메카시즘이 강화된다. 여기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판단은 타 당하다. 그러나 국가기구의 역할을 주요 원인으로 제한하는 시각은 '중북 메카시즘'의 사회적 자발성과 장기성을 보지 못하는 불충분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론구조의 영향: 현재의 언론구조는 합리적 토론에 매우 불리하다. 독립, 대안 언론 매체의 합리적 토론은 널리 전파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중북' 프레임에 대한 대항 담론과 프레임이 전파될 통로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일베' 현상에 대한 통합적 대응 (중북매도, 저질성, 여성비하-폭력, 인종주의, 약자혐오, 배타성, 배설문화 등에 대한)을 현재 언론구조에서 잘 기획해내기 힘들다.

경제구조의 영향: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 재편이 사회적 통합성의 해체와 극단주의 의 대두, 국가안보기구의 안보통제 확대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념구조의 영향: 한국 사회는 좌우를 떠나 남성-군사주의 문화와 서열 의식이 강고 한 사회인데, 이에 바탕한 위계적 권위적 지식구조가 작동한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이 이러한 이념구조에 힘입어 큰 위력을 떨친다. 이 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진보운동의 실패 측면: 언급하기 민감한 사안이지만 현재 진보운동은 진보적 이념과 문화에 반하는 행동이나 발언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별로 없다. 진보정 치나 운동 내부의 폭력도 그렇고, 북한과 미국에 대한 비합리적, 극단적 발언과 주장도 잘 조절되지 못한다.

하나의 예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는데, 초기에 대체로 3가지 입장이 도출되었는데 그중에서 북한에 아무런 심각한 인권문제가 없다, 또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문제는 미국과 한국에서 기원한다는 주장 등은 (통상적인 인권의 원리에서는 성립불 가능한 주장이었지만) 이후 북한인권이라는 의제를 둘러싼 진보운동의 주도권이 아예 형성될 수도 없게끔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시간이 지나도 적절

한 해명이나 수정 없이, 즉 조절되지 않고 덮어지는데, 이는 곧 진보운동이 북한 인권 의제를 주도하는데 실패했고 실패해도 지장이 없으며 그에 안주한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이는 하나의 예이지만, 북핵에 대한 판단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반복되었기 때문에, 종북매도이념의 상승 과정에서 진보운동을 대중적 담론투쟁의 영역에서 결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또 이 논란에 자주 동원되었다고 보여지는 ‘모 아니면 도’의 기계적인 이분법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

2. 통일운동의 낡은 프레임의 개혁

- ‘통일’이라는 접근에 대한 대중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통일’의 사회적 의미가 고정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통일’이라는 접근은 그 내용과 표현 및 형식에서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 최근 ‘통일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의 합리적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통일’ ‘단결’ 담론 호소력의 약화와 아동·청소년의 관심사가 다양화하는 현실과의 괴리. 통일 담론이 다양화되고 서로 경쟁적으로 되면서 ‘통일’ 담론 자체가 논쟁화 되어온 추세 (흡수통일, 안보주의 통일, 관용과 화해 접근, 평화공존 등). 남한인이 북한인가를 넘어서서 가부장제, 남성주의,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권위주의, 반생태주의, 종교적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 비판 의식의 성장. 기존의 통일담론이 보여준 인권, 젠더평등, 생태, 평화체제, 지속가능성, 지구화 등 타 의제와의 취약한 연관성. 민족동일성, 민족주의 담론의 호소력 약화와 낙후화, 보편적 가치로 볼 때 그 내재적 보수성, 등

- 특히 ‘민족’에 기반한 ‘통일 프레임’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민족’이라는 면에서 사회구성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서 탈민족화, 다민족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족통일의 당연한 지향으로 구성된 ‘통일’ 담론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존재 자체가 허구라는 점이 점차 대중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또 국제적 국내적 조건의 변화는 민족단일성의 담론을 취약하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는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재결합이 갖는 설득력을 약화시켰다. 동시에 민주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공격적 폭력적 서열적 군사적 경쟁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남북협력과 같은 연대주의 담론을 확산시키기 어려운 문화가 존재한다. 통일과 북한에 관한 담론에서 젠더, 평화, 지속가능성, 대안적 안보 등 연관된 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면, 이 담론은 빠르게 ‘전통적’ 또는 민족담론 내의 협소한 담론으로 고정되기 쉬울 것이다.

- 다양성 담론의 도전: 또한 통일은 언어의 의미상 하나로 되는 것을 여럿으로 존재

하는 것보다 우월한 가치로 전제해왔다. 그러나 형식적 자유, 시장질서와 안보국가내에서의 자유라는 제한적 자유도의 증가 등 현실적 조건의 변화는 여럿으로 나뉘어 있음의 장점, 즉 다양성의 장점을 더 강조하는 방향성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이 경향성은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다양성 원리는 ‘따로 또 함께’와 같은 단순한 훈계적 구호로 수용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언어, 접근을 요구한다.

3. 평화 담론/실천의 특성과 한계

- ‘평화’ 담론은 대중적 친화력이 높다. 언어가 쉽고 친근하고 수용과 확산, 그리고 일상 대중운동(시민교육 등)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폭력 현실과 같은 일상의 문제와 사회적 폭력 및 체제 갈등을 연결시킬 수 있어서 통합적 사고와 의제 설정에 도움이 된다. 평화 담론과 접근은 한국의 보수주의와 극단주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폭력적 공격적 배제적 담론에 대해 은근하고도 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동시에 평화 담론은, 안보체제, 가부장제, 남성주의, 근육형 현실주의, 권위주의, 생태, 종교적 정치 등에 대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진보성을 갖고 있다. 즉 인권, 젠더 평등, 생태, 지역안보 체제, 지속가능성, 지구화 등 타 의제와의 연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진보적 지향, 국제적 관점, 보편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제간 연관성은 의제별 집단 간의 연대와 협력, 확산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평화·통일 운동의 확대, 다양화, 고양을 가능케 한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남북한 및 국제적 통일/협력 비전이 대중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태한다. 또한 민족동일성이나 민족주의 담론에 기초한 통일에 대해 대안으로서 평화적이고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는 공동체로서의 통일을 제시할 수 있다.

- 일상과 체제의 연관성에는 공격적 폭력적 서열적 군사적 경쟁문화와 대비되는 평화문화라는 강점을 갖는데 이 역시 평화적 통일에 핵심적인 문화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평화 담론에는 통일 담론과 달리 참신하고 참여적이면서 젠더적, 민주적, 창조적, 수평적 페다고지가 대중적 만나는 방법론으로서 상당히 개발되어 있다.

- 물론 남북한 문제를 평화 담론으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현실적 제약도 따른다. 우선 체제, 젠더, 지속가능성, 지구화, 대안적 안보론을 연결시키는 통합의제형 인식공동체가 취약하다. 또 평화 담론은 개인적 가치, 정서, 감수성 차원에 머물고 구조적 폭력과 작은 연관성만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4. '중복 매카시즘'과 다양한 차별 이념의 결합

'중복' 매카시즘의 사회적 이념운동이 여성비하, 인종주의, 특정한 신체적 혐오 등 다양한 차별과 결합하려는 현상에서 어떤 것을 읽어낼 것인가?

우선 비주류의 대중적, 한국적 파시즘화를 일정하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는 국가안보 기구와 왜곡된 언론구조의 작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양극화/과잉경쟁화된 경제사회구조에서 자생성도 상당히 갖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대중적인 파시즘 운동은 중복매도 하나의 프레임만으로는 성취되기 힘들어서, 스스로도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양한 약자배제, 차별이념과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종의 자가당착이자 필연의 측면이 동시에 있다. 필연의 측면은 중복매도 하나의 이념적 접근이 제약이 있다는 것과 사회적 통합성 해체와 연관된 배설 문화의 형성으로 이해된다. 즉 체계적 이념이 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일탈적' 이념과의 비체계적, 배설적 결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복매도이념과 다른 차별 이념의 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쁜 경로로는 대중적 파시즘의 강화이고 좋은 경로로는 극우이념의 자기파탄이 될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이 일정하게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비하, 인종주의, 동성애혐오, 국수주의, 안보주의, 군사주의, 근본주의의 결합을 21세기 한국적 파시즘, 또는 안보주의 국가형 파시즘의 증후로 보고 이에 대한 대안문화적(이념적)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통합적 반차별운동이 중복매도 운동의 대안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차별의 폭력성, 그리고 결합된 차별의 극단적 폭력성을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대중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반차별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면에서, 진보적 사회운동이 권력에 의한 차별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조적 차별, 문화적 차별과 적극적인 싸움을 벌여야 높은 수준의 통합적 반차별운동을 성취할 것이고 또 중복매도와 같은 극단주의 이념운동에 대해 높은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배설문화에 대한 대응: 일베 현상과 같은 대중적 파시즘의 초기 형태의 경우, 상당 부분 이념운동 이전의 배설 문화현상의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물론 쉽게 정당화되어서는 안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어마어마한 경제사회구조적 폭력과 금지중심의 문화적 폭

압을 엄두에 둔다면, 주로 청년 청소년층의 배설문화에는 옹고그림의 접근보다 조금 더 따뜻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서열문화의 폭력을 엄두에 둔다면 한국 사회의 비주류 청소년층은 살아남은 것 자체가 대단해 보이는, 사회경제구조와 문화적 폭력의 최하층에 처한 카스트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념투쟁 보다는 포용적 회복적 문화운동이 더 적절할 것이다.

5. '종북 매카시즘'에 대한 대응과 평화운동의 과제

'종북 매카시즘'은 커다란 하나의 전조일 수 있다. 그 근거는 여러 각도에서 제기될 수 있다. 국가안보기구에서 '종북' 프레임을 상당기간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경제적 위기감이 상존하면서 국가의 이념적 위기관리를 계속 정당화한다. 상당한 수준의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이 존재하여 '종북' 선전의 적극적 청취자 겸 사회적 언론으로 존재한다. 사회 양극화로 지속적인 사회적 희생양 찾기가 지속될 토양이 제공된다.

'종북'에 대항하는 담론과 언어의 형성이 필요하다. 방향은 국가안보기구의 탈법과 폭력, 그리고 대중적 파시즘의 대두에 대한 문제제기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파시즘'을 파시즘 비판의 언어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국가폭력' 또는 '악법의 폭력'과 같은 제도적 악 담론을 통한 접근은 사회적 파시즘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더 친숙한, '천황과 카미카제를 연상시키는 공격적 광기'와 같이, '국가폭력에 편승하는 광기의 문화와 이념'에 관한 대중적 성격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진보적 사회운동의 역할: 아래 평화운동의 과제도 과제이지만, 결국 조직화된 종북매도 프레임은 진보세력을 겨냥한 것이다. 진보운동이 새로운 파시즘 기구 및 운동과 뚜렷히 대별되고 그 대안으로서의 운동 문화와 담론을 갖추면, 종북매도가 힘을 잃을 것이다. 담론과 문화에서 압도적인 우월성을 가짐으로서 종북매도의 저질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상 수준에서의 반차별 반폭력 운동을 권력에 대한 반차별 반폭력 운동과 적극 결합하고, 또 이를 위해 인권론, 여성주의, 생태주의, 국제주의, 평등문화 등 넓은 의미의 진보적 이념과 의제를 사회운동적 실천과 조직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특히 새로운 시민교육운동으로서 반차별교육, 평화교육, 젠더교육을 대중교육 운동으로 항상 전개하는 모습, 이를 바탕으로 반차별-평화문화운동으로서의 진보운동이라는 이미지 수립 등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 그 중에서도 '평화'운동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대중적 파시즘에 대한 평화운동: 평화운동의 주류는 외교안보통일 문제 등 국가수준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이 구조-권력적 접근과 일상-권력적 접근을 적극 결합시켜야 한다. 표현은 새로 개발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약자층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폭력

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중적 폭력과 파시즘에 대한 평화운동을 전개하면 참신할 뿐만 아니라 기존 평화의제와의 결합이 쉽고 고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담론적 접근

의제 설정: 종북매도 이념을 표현의 자유나 국가기구 개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에서 국가의 폭력과 일상의 폭력을 연계시키는 기제는 군사주의, 안보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신체차별주의, 남성주의, 위계서열, 나이서열, 빈부차별, 노동배격, 이분법적 사유, 무사유 등 광대역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 남성이주노동자 또는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같이 작은 하나의 폭력적 사건에도 이러한 기제의 상당수가 긴밀하게 개입된다고 생각한다. 국가폭력-일상폭력에 대한 평화운동의 선구적 종합적 의제설정은 매 사건을 종합적이 폭력구조의 그물망 속에서 해석하고 설명함으로써, 일상을 계속 정치화하는 길이 가장 좋을 것이다.

군의 확장, 안보섹터 개혁: 안보섹터 개혁 의제와 방법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 안에서 매우 정교하게 발전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면, 표현의 자유 접근을 넘어서서, 폭력적인 한국 안보국가기구에 대해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군의 확장’을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고 싶다. 이를 기반으로 포스트민주화 반군부 투쟁을 새로이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군의 확장’은 군비확장, 군비 낭비, 부정부패, 의회통제 무력화, 민간통제 무력화, 국익 무력화, 민간사설 군 외곽기구 확대와 운영, 민간교육과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장악 시도, 확장된 군사훈련, 지방기구에 대한 군의 통제와 영향, 군의 이념기구화, 군의 반민주 반인권노선, 허위 정보로 국민 기만, 군의 이익집단화 등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통상적인 이해와 달리 군이 의회와 경제, 사회와 문화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높이고 확장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주의의 사회화는 평화운동이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파시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평화국가론과 반대중파시즘운동의 국제화: (구두 발제)